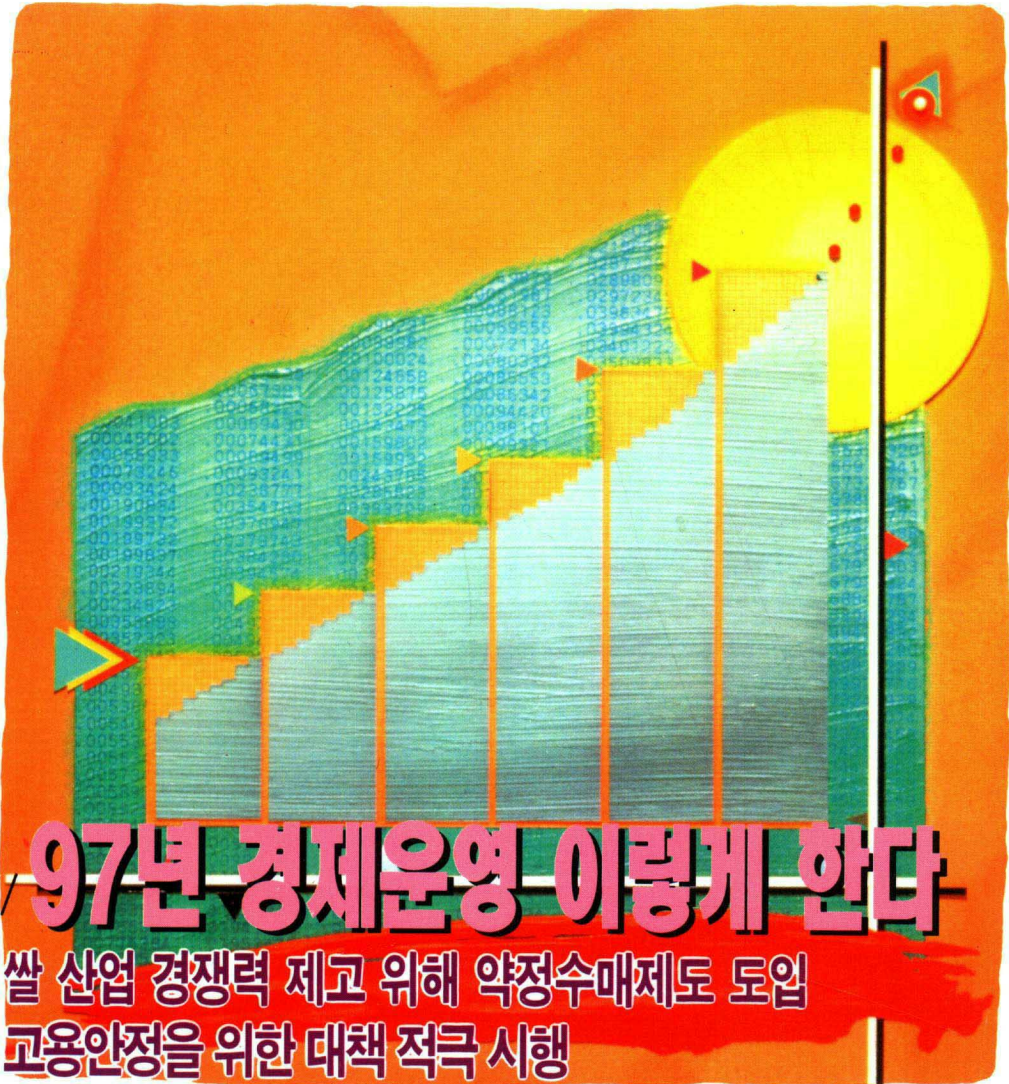


나라경제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특집 / 97년 경제운영 이렇게 한다

경제정책해설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약정수매제도 도입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적극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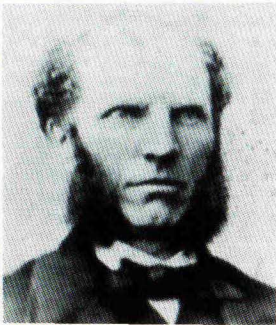
이달의 초점 그린벨트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97.2

1997년 2월 1일 발행 · 제8권제2호 · 1990년 11월 1일 등 록 · 라-4859호 발행처/국민경제교육연구소(35-270 서울특별시 강남구도곡동 96-1 12 전화(02)561-1400 · 월간 | ISSN 1227-8033 2

마지막 고전경제학자

존 엘리엇 케언즈 (1823~1875)



존 엘리엇 케언즈(John Elliot Cairnes)는 1823년 아일랜드의 카슬벨링햄에서 부유한 양조장집 아들로 태어났다.

19세가 되던 1842년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하여 문학을 공부하였고, 1848년 학사학위를 받은 뒤 공부를 계속하여 1854년 늦게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무렵 그는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경제학자들과 교분을 갖게 되었다.

1856년에는 모교인 트리니티 대학의 정치경제학 웨이틀리 석좌 교수에 임명되었으며, 1857년에는 경제학 분야에서 그의 첫번째 저술인 「정치경제학의 성격과 논리적 방법(The Character and Logical Method of political Economy)」을 간행하였다. 1859년에는 다시 골웨이에 있는 퀸스 대학의 교수직에 임명되었으나 주로 代講을 통하여 교수직을 수행하였다.

1862년에는 미국의 노예문제를 다룬 「노예의 힘(The Slave Power)」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당시 남북전쟁중이었던 미국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1865년 런던으로 이주한 케언즈는 1866년부터 런던 대학의 정치경제학 교수로서 강단에 서면서 1873년과 1874년에는 「정치경제학 논고」와 「새로이 구명된 정치경제학에서의 주요 원리」를 간행하여 영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경제학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케언즈는 관절염이 악화되면서 런던 대학의 교수직에서 물러난 뒤 긴 와병 끝에 1875년 런던에서 사망하였다.

케언즈는 우선 경제학을 하나의 분명한 독립된 과학으로서 설정하고 이의 중립성을 강조하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경제학의 공식명칭인 ‘정치경제학’이라는 단어가 명시하는 것처럼 경제학을 정치학의 부수학문으로 간주하여 정치문제를 연구하거나 이에 응용되는 부차적 기능만 가진 학문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케언즈는 경제학을 독자적 중립과학으로서 다른 학문에서와 같이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귀납적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켰다. 따라서 경제학에서 설정되는 모든 이론은 假說로서 출발하여, 가설이 귀납적으로 그 有意성이 검증될 때에만 이론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경제학에서의 논리적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當爲性보다는 ‘어떻게 될 추세가 있을 것’이라는 蓋然성에 더 큰 중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방법론적인 자세는 경제학이 과학으로서 갖는 객관성과 중립성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 분석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역사학과의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구체적으로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金の 평가절하의 불가피성, 그리고 미국 남북 노예제도의 사회적 귀결 등과 같은 문제들을 정치적·사회적 측면의 고려 없이 경제이론적 분석의 결과로서 제시한 데에서 잘 알 수 있다.

케언즈는 한계학파의 출현으로 고전학파의 절대적 기초가 흔들리던 당시 학문적 환경 속에서도 고고하게 리카도와 밀에 의하여 전통이 계승되고 있었던 고전학파의 이론적 체계를 끝까지 고수하였다. 즉 생산비 학설에 있어서 이미 존 스튜어트 밀마저도 포기한 貨金基金設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非競爭 集


團’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비경쟁 집단’의 개념은 특히 노동시장에 있어서 노동의 질이나 수준이 집단 사이에 있어서 서로 다르므로 단순한 총체적 노동공급이나 수요가 임금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비경쟁 집단의 존재는 생산비에 입각한 가치설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修正的인 요건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학파의 가치이론에 있어서 생산비설이 제대로 주효하기 위해서는 비경쟁 집단의 존재를 고려한 상호수요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을 막론하고 생산요소의 공급에 있어서 비경쟁적인 장벽이 존재하는 경우 고전학파가 생각하는 생산비설에 입각한 가치결정이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케언즈는 근본적으로 한계학파의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의 주관적 가치학설과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비경쟁 집단의 개념도입과 상호수요이론의 적용으로 결과적으로는 제번스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고전학파의 이론이 현실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되면서 한계효용학파라든지 또는 역사학파와 같은 새로운 사고체계의 등장을 초래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끝까지 고전학파의 사고체계를 벗어나지 않고 이를 지켜나가려고 하였다. 고전학파 최후의 파수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유주의자로서의 그의 노예제도에 관한 냉철한 견해는 남북전쟁 당시 북군에게 커다란 원군이 되었다. 

존 엘리엇 케언즈는
그때까지 정치학의 부수학문으로 간주되던
경제학을 독립적·중립적 과학으로
자리매김하고 경제학에서 설정되는
모든 이론은 假說로서 출발하여
귀납적으로 그 有意성이 증명될 때에만
이론으로서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한계학파의 출현으로 그 입지가
크게 좁아진 고전학파의 이론적 체계를
끝까지 고수한 마지막 고전경제학자였다.

나라경제

역사 속의 경제사상가 50

마지막 고전경제학자 - 존 엘리엇 케언즈 / 윤석범 · 연세대 교수 2

권두칼럼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정근모 · 前 과학기술처장관 6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한국의 미래를 해양개발에 건다 / 박운영 · 연합통신 기자 10

특집 97년 경제운영 이렇게 한다

새해 경제운영 방향 / 남상덕 · 재정경제원 16

농정개혁을 내실 있게 마무리 / 소만호 · 농림부 19

기업활력 회복에 역점 둔 통상산업정책 / 우태희 · 통상산업부 23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 / 김재섭 · 정보통신부 26

맑은 물의 유지와 공급 / 박대문 · 환경부 29

현장중심적 ·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 문창진 · 보건복지부 32

‘新노사문화’의 창출 / 송길홍 · 노동부 35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경쟁력 제고 / 김경식 · 건설교통부 39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강화 / 오순택 · 해양수산부 42

창조적 과학기술혁신능력의 확보 / 박종용 · 과학기술처 45

이 달의 초점 - 그린벨트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린벨트 완화조치, 문제점 많다 / 조명래 · 단국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50

근본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 / 김태복 · 중부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53

나라경제 초대석

경제정책의 의사결정 능력 / 김유배 · 성균관대 교수 56

건강한 삶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뇌졸중 / 정진상 · 삼성의료원 58

세계경제의 현장 / OECD 정책이슈

OECD의反부패 및 뇌물방지 논의 / 박강호 · 駐OECD대한민국대표부 59

만남

안광구 통상산업부장관 / 김광두 · 서강대 교수 63

경제정책해설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적극 시행 / 진진희 · 노동부 68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약정수매제도 도입 / 윤장배 · 농림부 73

우리 경제를 경쟁촉진형 구조로 - 공정거래법의 개정 / 김병배 · 공정거래위원회 76

「도시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추진 / 김창로 · 통상산업부 80

우정사업 경영혁신으로 경쟁력 및 서비스 향상 추구 / 서병조 · 정보통신부 84

새해의 식품위생정책 / 이상기 · 보건복지부 87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 권도엽 · 건설교통부 91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으로 항만서비스의 질 제고 / 강무현 · 해양수산부 95

엔지니어링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 원상신 · 과학기술처 98

할인특매기간의 규제 철폐 / 김인준 · 공정거래위원회 101

출입기자 코너 · 추곡수매가와 경제논리 / 정영훈 · 중앙일보 기자 105

· 대형사업 시금석 될 경부고속철도 / 양기대 · 동아일보 기자 106

·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신연숙 · 서울신문 기자 107

기업정보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양계 피해 분쟁 / 임종현 · 환경부 108

경제수상

·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 / 정진승 · 환경부 110

· 경제의 '머피 법칙' / 원오석 · 재정경제원 111

해외통신

미국에서의 過消費에 대한 課稅論議 / 권영선 · 재정경제원 112

규제완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노동행정 부문의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과제 / 이기권 · 노동부 115

경제동향 나라밖 : 집권 2期 맞는 클린턴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 정인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8

나라경제 논단

재벌 정책의 문제(下) / 이성구 · 공정거래위원회 121

어음보험제도의 도입 / 윤상흠 · 통상산업부 124

통계로 보는 우리 경제와 사회 통계로 본 OECD 국가와 한국 / 신승우 · 통계청 129

나라경제 광장 읍주문화도 선진국 수준으로 / 김상원 · 보건복지부 132

경제부처발간자료 안내 주요 경제정책자료 133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근모

前 과학기술처장관
이주대학교 석좌교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국제적 여건으로 볼 때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 우선 국제정치적으로는 세계질서를 움직이려는 힘의 논리가 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조건적인 보호와 추종이 가능했던 '政治論理'에서, 받을 것이 있을 때만 주는 교환과 보완의 '經濟論理'로 바뀌고 있고, 국제경제적으로는 범세계적인 자유무역과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물결 속에서도 지역적 태두리내에서 집단적 이익과 경쟁력 확보를 추구하는 지역주의가 상존하고,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국경 없는 세계시장을 둘러싼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간의 교한의 대상, 경쟁의 무기, 협력의 동기가 모두 '技術資産'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술우위의 선수를 위한 국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기술우위를 위한 경쟁 속에서도 기술보완을 위한 협력이 공존하는 이른바 협력 속의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당한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던 개발경제시대의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 중심의 발전전략과 가치체계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창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기술자산의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방향과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즉,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들이 상호 접근·융화되는 '과학기술 융성(fusion)의 시대' 또는 '과학기술 統合(systems)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을 학자들은 기술전략의 패러다임이 '단일기술기반에서 복합기술기반으로, 단일목적기술에서 겸용목적기술로, 기술돌파에서 기술융합으로,

線形的 진행에서 非線形的 과정으로' 변화하는 전환기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다가오는 21세기는 과학기술력을 토대로 하는 정보와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특히 WTO 출범 등 지구적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는 남의 기술을 모방하는 전략으로는 선진국 진입과 세계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은 고사하고 국제무대에서 더 이상 생존하기도 어렵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가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학기술력의 획기적인 제고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정부는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의 전반적 시스템 속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존중되면서 국내 연구개발주체간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시스템의 구축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들은 경제·산업·교육·국방 등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이 명실상부하게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민간기업의 동반적 노력과 적극적 참여 없이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민간기업들이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중심의 기업경영'을 선도할 때에만 과학기술이 경제 및 사회발전의 핵심적 요소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정운영과 기업경영은 단순히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다 넓고 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의 '판단력과 창의력'에 기초한 정부정책과 기업경영이 사회전반에 자리잡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국가전체의 과학기술체제(NSI: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초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70년대말까지 과학기술진흥을 주도한 것은 공공부문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민간부문의 자체적인 기술개발이 본격화되면서 94년도에는 국가 총연구투자비의 84%를 차지하게 되었고, 기업연구소도 이미 2,300개를 넘어서고 있다. 바야흐로 국가경쟁력이 곧 '기업'의 기술혁신능력과 전략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면 기술진보가 가져올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경영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기술 중심의 경영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첫째, 21세기의 경영인·관리자는 통찰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기술변화의 흐름과 내용을 이해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것이 지니는 사회과학적 의미와 실무경제에의 파급효과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조직원들을 미래의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를 이끌고 갈 '21세기형' 기술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는 경제성장과 기업경쟁에 있어 자본 및 노동과 같은 물리적이고 유기적인 생

산요소의 기여도가 소진되고 반대로 새로운 '지식' 및 '기술'과 같은 신축적이고 무형적인 요소들이 경제체제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 말은 미래는 '지식을 가진 사람', 즉 '과학기술인력'의 시대가 된다는 말과 일치한다.

셋째,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술 중심의 경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술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는 그동안의 성장과정과 경쟁전략이 비기술적 수단과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며, 앞으로 개방화·자유화의 무한경쟁시대에는 기업조직의 전략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이 기술적 원리와 수단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세계로 나아가는 기술혁신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최근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의 선진기업들과 기술제휴를 확대하는 등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외 현지생산뿐 아니라 연구개발·마케팅 등에 있어 세계적 차원의 체제와 방식을 도입하고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현지인 채용, 지역사회와의 협력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전체로 보아서는 세계화되고 개별단위들은 현지화됨으로써 세계화(globalization)와 현지화(localization)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glo-calization'의 조직운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한세기인 21세기를 맞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과학기술력을 토대로 하는 정보와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하나의 사회, 하나의 조직은 능력과 정열을 지닌 3%의 소수(core members)가 이끌어 가게 된다. 향후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과학기술이 미치게 될 영향을 이러한 소수의 선도 그룹이 얼마만큼 절실히 인식하느냐에 곧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들이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인식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의지를 갖고 소속된 분야와 직무영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실천해 갈 때 비로소 한국경제는 재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정호**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한국의 미래를 해양개발에 건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은
해양수산부 발족 이전 6개 부처·청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업무를 모아 신설된 부서로서
다가오는 본격적인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해양자원과
해양공간을 '제2의 국토'로 개척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선도하는 해양정책의 산실이다.

글 · 박운영/객원기자(연합통신 기자)

해 양은 풍부한 식량·광물·에너지·공간 등 자원의 보고로 21세기에 새롭게 개척돼야 할 '제2의 국토'이다. 방대한 양의 생물 및 광물자원의 부존, 광대한 공간, 조력·파력 등 무한한 자연에너지가 존재하는 곳이다.

“해양을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은 과거에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건 국가해양 정책은 선택적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의무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EEZ(Exclusive Economic Zone)의 선포 등 새로운 해양질서의 형성으로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영토보존의 차원에서 해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과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양개발이야말로 21세기 풍요롭고 윤택한 선진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켜 해양의 합리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처럼 중요한 해양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해양수산부내의 해양정책실이다.

해양정책실은 해양수산부 발족 이전에 6개 부처·청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업무를 한곳에 모아 탄생하였다. 건설교통부 소관이었던 공유수면 매립·관리 기능 그리고 수로기능이 모이고, 환경부의 해양환경보전 및 연구조사 기능, 과학기술처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기능, 통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과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양개발이야말로 21세기 풍요롭고 윤택한 선진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상산업부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기능을 흡수하였다. 이와 함께 舊 수산청과 舊항만청의 기능도 들어왔다.

사실상 해양수산부에서 신설된 조직은 해양정책실뿐이므로 이 해양정책실의 운용성과가 해양수산부 발족의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위의 기대도 매우 크다. 다행히室 발족 반년도 되지 않으나, 주위의 평가가 매우 고무적이다.

유조선항로 지정, 「습지보전법」 제정, 한국해양유류오염방제조합과 해양수산개발원 설립, 해양조사선의 공동활용 방안 마련, 해양개발시행계획 수립 등 그동안의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세계지도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거꾸로 그려놓은 '21세기 선진해양국가 구상도'는 지난해말 여론의 대단한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중장기 해양수산정책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해양과학기술개발촉진법」, 「연안역관리법」, 「해양안전기본법」 등을 제정하고, 한·중 黃海 공동조사, 청소년해양교육 등을 새로이 착수하겠다고 의욕이 높다.

해양정책실은 실장, 심의관 1명과 정책총괄과, 해양개발과, 해양환경과, 해양안전과, 해양조사과의 5개課 4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장은 정책실의 중요성으로 인해 1급으로 보하고 있으며, 이정환 실장이 사령탑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박

사학위를 취득한 이실장은 오랜 기간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지난해 8월 초대 해양정책실장에 부임하였다. 상황판단이 빠르고 업무처리에 있어 순발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수 정책심의관은 20년 동안 해운항만청에 몸담아 자타가 인정하는 해운항만 분야의 전문가. 업무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아 부하직원들이 어려워하지만 보기와 달리 정이 깊다는 소리를 듣는다.

▲ 정책총괄과는 「해양개발기본법」에 의한 해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바다의 날'(5월 31일) 행사를 주관하며, 연안역의 통합관리를 모색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정책실의 주무과이다.

해양개발계획은 신해양질서에 대응한 국가해양관리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포함한 8대 해양정책을 제시하고, 부문별로 실행과제를 제시하여 해양의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키려는 국가기본정책의 하나이다.

또한 '바다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바다에 대한 인식과 해양개혁의 의지를 높이고 해양인들의 바다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연안역은 그동안 9개 부처 50여 개별법에 의해 분산관리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상실한 채 관리되고 있어 법률 제정작업 등 연안역의 통합관리를 위해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책총괄과의 리더는 신평식 과장이다. 행시 24회의 영국 유학과로 업무추진력이 대단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활동으로 업무수행폭이 넓다.

▲ 해양개발과는 해양자원 개발, 해양과학교육 진흥 등 미래를 창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행시 28회의 해양수산부 아이디어뱅크인 우예종 과장이 능숙하고 치밀한 업무처리로 해양개발과를 이끌고 있다. 그동안 태평양 심해저에서 망간, 코발트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주요 전략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탐사활동을 계속하여 광물의 부존유망지역을 파악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래자원의 보고인 남극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남극개발에 대비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해 남극세종기지에 상주할 월동대를 파견하여 연구하는 등 남극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칠레·페루 등 주변국가와의 남극 연구협력사업도 적극 추진중이다.

또한 해양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도 해양개발과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하나이다.

▲ 해양환경과는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부내에서 가장 바쁜 課가 되고 있다.

천인봉 과장을 주축으로 해양환경을 보존하고 나아가 개선해 나갈으로써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 '생명의 바다'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환경과는 해양환경 보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기법 개발,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업무 등 해양환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환경보전 국제협력 등의 기초를 다졌고 오염항만 준설, 해수수질측정망 구성, 민간방제조합 설립, 「해양오염방지법」 등의 해양환경 관련법령 제·개정, 중국의 공업화에 따른 한·중 황해환경공동조사를 위한 국제협력 등 해양수산부 발족 5개월 동안의 성과치고는 대단한 업무실적을 쌓았다.

앞으로 해양환경 문제는 인간의 생존권 차원에서 관리가 예상되고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해양환경과야말로 해야 할 업무가 무한대이고 책임 또한 막중하다.

천과장은 고시 14회로 작달막한 체구지만 업무처리가 빠르고 적극적이다. 초대 러시아 수산관을 역임한 외교통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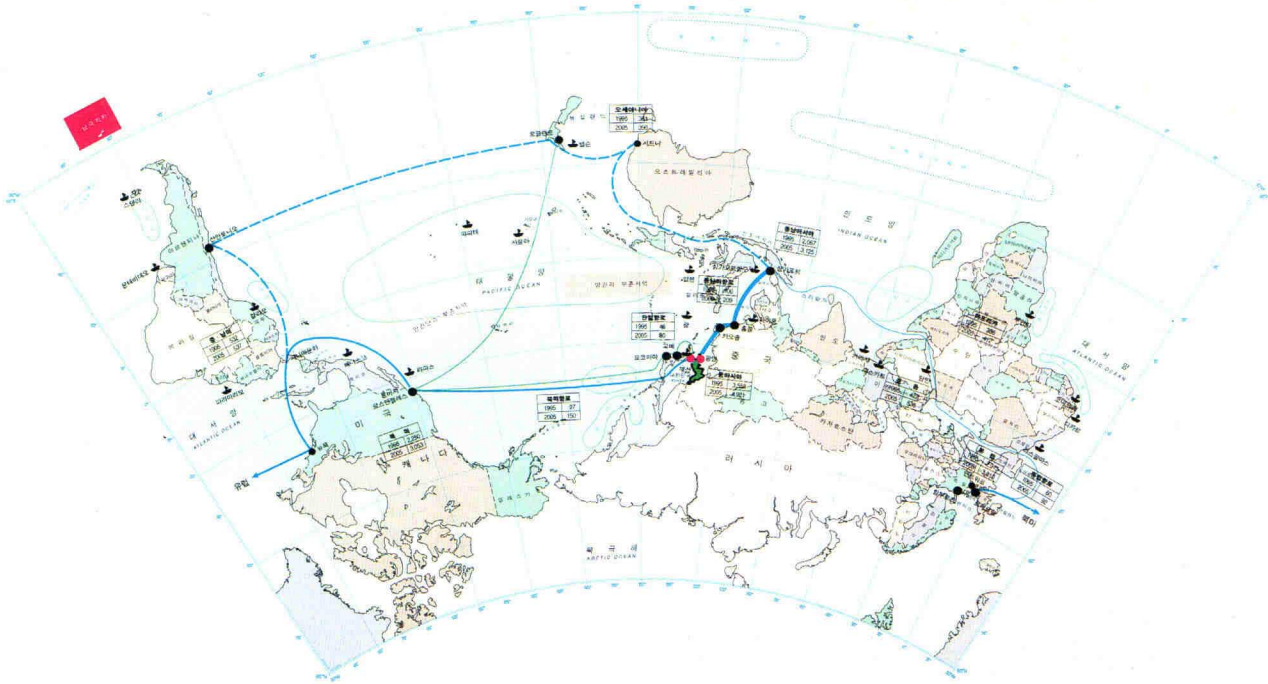
▲ 해양안전과는 해상교통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해상사고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해양오염 사고를 유발한다.

지난해 발생한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는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줬고 국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고였다.

해양안전과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각적인 대처를 생명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박 안전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교통량 폭주 해역에 대한 유조선 항행 금지해역을 설정·운영하며 선박해상안전 지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대처하고 있다.

또 「해양안전 선진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船社의 자율적 안전관리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해상교

21세기 선진해양국가 구상도



21세기 선진해양국가 구상도는 해양개척을 통한 21세기 해양강국 실현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소명의식과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작된 것이다.

통방송 실시, 유조선 항행관제시스템 개발 등 과학적인 해양안전관리 체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양안전과의 팀장은 임기택 과장이다. 한국해양대학교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임과장은 업무 파악이 빠르고 추진력이 뛰어나며課員들과 일사불란한 팀워크를 자랑한다. 소탈한 성격에 부하직원을 아끼는 마음이 남다르다.

▲ 해양조사과는 해양조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국내외 안전항로를 설정하고 해저지형을 조사하여 자원의 부존가능성을 예

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해양조사과의 몫이다. 또 국가 해양기본도를 제작하여 해저형태와 지층구조를 파악하고 전자해도를 개발하여 선박안전항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해양조사방법·기준을 표준화하여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해양조사과는 박재준 과장이 맡고 있다.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격의 박과장은 조용한 가운데서 부하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장점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양정책실은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일류해양국가

를 향한 해양수산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등 해양수산이 나갈 토대를 마련하였고, 창설 2년째인 올해부터는 해양수산 업무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해양은 단순한 美的 감상의 대상도 동경의 대상도 두려움의 대상도 아닌 21세기 선진국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전해야 할 제2의 국토이다.

해양경쟁시대에 우리의 국익과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해양정책실 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우리나라가 해양대국으로 우뚝 설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민**

새해 경제운영 방향

문 민정부는 93년 출범 이후 과거의 낡은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선진화와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무엇보다도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고,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통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였다. 이와 함께 WTO시대에 대응한 농정의 혁신과 중소기업지원 시책의 확충 등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변화와 개혁과정 속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 4년간 연평균 7.5% 이상의 높은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GDP 규모가 세계 11위로 상승되고, 96년 말의 OECD 가입으로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다. 소비자물가 역시 93년 이후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경기순환과정에서 하강국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반도체가격 급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그동안 경제발전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구조



남상덕
재정경제원 종합정책과장

적인 취약요인들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생산성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 선진국보다 높은 금리, 물류비 및 공장용지가격 등으로 인한 높은 생산요소비용,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비효율적인 경영형태, 사회전반의 낭비적인 소비행태 등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허약해져 있다.

지난해 어려움 겪은 우리 경제 올해는 다소 회복될 전망

이상과 같이 우리 경제는 구조적 취약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세계경제 환경은 '무차별·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면서 세

계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이미 21세기의 경쟁을 시작하였으며, 우리 경제는 이러한 세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은 물론 중남미와 체제전환국들까지도 경쟁력 강화와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제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경쟁 분야도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정보산업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기업들은 이제 자국·외국 구분 없이 가장 유리한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년내에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국가와 탈락하는 국가가 확연히 구별될 만큼 국가간의 경쟁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간의 경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관련된 97년의 세계경제 여건은 대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나아질 전망이나 낙관하기 어려운 요소도 병존하고 있다. 즉,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이 상승하고 교역량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며, 원유를 제외한 국제원자재가격도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95

년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주도해 왔던 반도체의 세계시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어렵고, 유가의 강세와 엔화의 약세기조가 당분간 지속되며, 국제 금리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무엇보다도 경제원리에 충실하게 경제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물가안정의 지속과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경쟁력 강화시책을 가속화하여 경제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력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중점 뒤

이상과 같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하에서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경제원리에 충실하게 경제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물가안정의 지속과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경쟁력 강화시책을 한층 가속화하여 경제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력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력 이하로 낮아지는 것은 감수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하에 거시경제정책은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재정은 일반행정경비를 중심으로 1조1천억원을 절감하고, 공무원 총정원의 동결기조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은 가급적 상반기부터 앞당겨 집행하고 항만·병원·환경기초시설 등의 민간이양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통화는 적정유동성 공급기조를 견지하되 금리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간접통화 관리방식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결정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외환·자본자유화는 기존의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물가·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증권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증권 관련 세제상의 지원 등 주식수요기반 확충과 투자심리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기업환경의 개선

먼저, 노사관계의 안정과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선진화된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노동시장에 탄력성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노동법

개정에 따른 진통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도 근로자의 생활향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의지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OECD 국가에 걸맞은 금융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금공급자(금융기관)의 자율화·규제완화 등에 치중해 온 이제까지의 금융개혁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금융산업 효율화와 금리인하 여건 조성 등 획기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부담도 대폭 완화하도록 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물류표준화와 정보화 추진 등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해 나가고 공단개발 관련 각종 부담금 완화 등을 통해 공장용지가격도 인하되도록 하는 등 요소비용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97년 말까지 주요 규제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여 존치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할 것이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방식도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업계·학계·연구기관)로 「규제개혁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동 위원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토록 할 것이다.

국제수지적자의 대폭 축소

국제수지적자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에너지의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경유·등유·LNG 등에 대한 세액(또는 세율)인상예시제를 통하여 에너지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유종간 상대가격체제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호화사치소비재 취급업소의 과도한 유통마진을 조세로 흡수하고 기업의 과도한 접대문화 개선을 위해 손금산입 한도를 더욱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신설하는 등 저축증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화썩씀이도 줄여나가기 위해 공공부문이 숭선하여 해외출장을 줄이고 외국인 초청행사 등을 축소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무자격 자비 유학행위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건전한 여행·유학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수출신장과 수입감축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융자비용을 적정화하고 수출착수금과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생산이 없는 기초원자재는 원칙적으로 관세무세화를 추진하고 부품과 완제품간의 역관세를 시정하는 등 수출입 관련 관세제도도 보완해 나갈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 강화

물가안정을 지속하기 위하여 대형 할인점의 적극 육성과 대규모 점포의 개설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산품가격을 하향 안정시켜 나가고 소비자단체 등의 감시·견제 기능 활성화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인상요인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최대한 흡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중 분산하여 조정하고, 특히 지방 공공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물가안정 노력과 중앙재정 지원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상승 10년 주기설 등으로 연초에 다소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기대책반을 적극 가동하여 투기행위는 철저히 색출·차단해 나갈 것이다.

산업체질의 선진화와 창업의 활성화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우선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작년 12월에 마련한 「정보통신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본재산업 육성시책을 한층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인 기술발전전략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 등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2조원의 구조개선자금을 성장 유망기업에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형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촉진되도록 장외시장·스톡옵션제·벤처캐피탈제도 등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다.

OECD 가입에 따른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

작년말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우리 경제가 21세기를 앞두고 개방경제체제를 확충하고 각종 제도를 선진화하여 구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97년은 OECD 가입의 실질적인 원년이 되는 해인 만큼 올해부터는 금융·투자·조세·환경·무역 등 분야별로 OECD 국가 수준에 걸맞게 국내제도의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OECD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상협상역량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올해 경제성장률은 6% 내외로 다소 낮아지더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에 이어 4.5% 내외에서 안정세를 지속하고, 경상수지적자는 140~160억달러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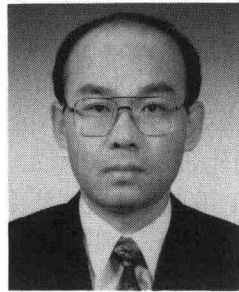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경제체질을 구조적으로 튼튼히 하고, 경제 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 각계 각층이 고통분담의 자세로 경쟁력 강화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남원**

농정개혁을 내실 있게 마무리

정부는 WTO라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시대를 맞이하여,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94년 6월 중장기 農政의 기본틀로서 범국민적인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42조원 농업구조개선 투융자계획을 2001년에서 98년까지 3년 앞당기고, 15조원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는 등 농촌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렸으며, 이를 기초로 농촌투자를 계획대로 착실히 투자하여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농지·糧政·시장과 유통·협동조합 등 농정의 주요 4대제도를 시장지향 중심으로 과감히 개혁하였다.

그 결과, 농업구조 개선과 생산성 증대가 가시화되어 지난해에는 우리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 쌀은 사상 유례없는 대풍을 이루어 GNP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소·고추·배추 등 축산물과 과채류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는 4.5% 상승했으나, 농산물은 1.8% 상승에 그쳤다. 또 쌀 생산량이 95년에 비



소만호
농림부 부이사관
* 필자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었음.

해 436만석 증가해 96년 경제성장률을 6.9%대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농촌현장에서도 UR협상 타결 당시의 좌절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활력이 되살아나고 농업인들이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지속적인 농정개혁으로 농업구조 개선하고 생산성을 증대

정부가 추진한 그동안의 농정성과를 구체적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농업생산성과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농업취업자 1인당 생산성이 85~90년중에는 12% 증가하였으나,

90~95년중에는 40%대로 증가하였다. 농산물물가는 85~90년중에 연평균 7%대였으나, 91~96년중에는 5%대로 낮아졌다. 쌀 kg당 실질생산비는 85~90년중에 19.6% 상승했으나, 90~95년 중에는 18.4%나 하락하였다. 농산물수출은 90년에 14억달러였으나, 96년에는 18억달러로 30% 증가하였다.

둘째, 쌀 중심의 단일 영농방식에서 축산·원예작목과 가공·유통 등 고품질·고부가가치의 다각화 경영방식으로 전환되는 한편, 품목별 규모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농업소득 중 90년 쌀소득비중은 48%이었으나, 95년은 34%대로 낮아졌다. 반면 축산소득은 18%대에서 25%대로 늘었고, 원예소득은 24%대에서 31%대로 늘었다. 돼지고기와 신선 채소류 수출은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수가 90년 4만4천호에서 95년은 7만1천호로 두 배나 증가하였고, 3ha 이상 농가 5%가 전체 쌀재배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두 이상 양돈농가 8%가 전체 돼지고기의 62%를 생산하고 있다. 고졸 이상 경영

주 농가가 23만호에서 24만2천호로 늘었다.

셋째, 농업 부문의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는 생산과 유통기반이 대폭 확충되었다.

경지정리목표 90만2천ha 중 경지정리율은 90년 64%에서 95년은 76%대로 증가하였고, 논외의 수리답률은 73%대에서 75%대로 증가하였다.

대형농기계인 트랙터 보급대수는 4만1천대에서 10만대로 증가했고, 콤바인 보급대수도 4만4천대에서 7만2천대로 증가했다. 특히, 벼농사 기계화율은 78%에서 96%로 증가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6개소에서 13개소로 늘었으며, 농산물 품질인증품목은 21개 품목에서 80개로 늘었다. 또 도매시장 경매율이 32%에서 97%로 증가하여 공정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넷째, 농촌 기초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농촌교육여건 및 농민 연금제 등 복지혜택이 확대되어 농촌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

상수도보급률이 90년 28%에서 95년 39%로 증가했고, 도로포장률은 23%에서 25%로 증가했다. 또 농촌의료기관수가 2,206개소에서 2,865개소로 늘었고, 의료인력1인당 인구수가 975명에서 665명으로 낮아졌다.

또한 농업인연금제가 95년에 도입되었고, 농촌학생 대학특례 입학제도가 95년 도입되어 96년에 315개 대학에서 8,700명 학생이 혜택을

정부는 올해의 농정방향을 농촌 및 농업인에게 확산되고 있는 활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문민정부의 농정개혁을 보다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한편, 풍년농사를 올해에도 차질없이 달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10% 제고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성장과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데 두고 있다.

보았다. 농공단지 217개소에서 276개소로 확대되어 농외소득률이 26%에서 32%로 증가했고, 농가소득도 1,100만원 수준에서 2,180만원으로 증가해 두 배나 늘었다.

농정개혁을 보다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한해로

정부는 올해의 농정방향을 그동안의 농정성과와 우리 농촌 및 농업인에 확산되고 있는 활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문민정부의 농정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마무리하는 한편, 지난해의 풍년농사를 올해에도 차질없이 달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10% 제고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성장과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데 두고 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농업구조개선의 가속화로 농업경쟁력을 10% 이상 제고하며,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수출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수입관리를 효율적

으로 해 나가고 통일을 대비하는 농정방향을 수립하며, 농촌활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촌투융자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99년 이후 중장기 농촌발전계획」을 비전 있게 수립해 나갈 것이다.

올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농정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우리의 주식인 쌀의 자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해 수립한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불안정한 세계식량시장과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식량을 우리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간척지 및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늘려나가는 한편, 쌀 증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치한 '쌀생산대책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쌀값의 계절진폭을 15%까지 허용하여 쌀의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중쌀값을 지원하고 금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약정수매제도와 직접지불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WTO체제 하에서도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킴으로써 소득측면에서도 쌀 농가의 증산의욕을 북돋워나갈 계획이다.

**농업생산성
10% 이상 제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의 경영의식을 함양하고, 현장에서 응용가능한 실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농업경영에서도 비용을 10% 이상 줄이고, 생산성을 10% 이상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품목별 경쟁력강화'라는 평면적인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별 농업경영주체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생산성 향상에 나설 수 있도록 실체화해 나감으로써 농업인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최대한 신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목표관리제를 '품목별·농가발전단계별'로 다양한 경영유형과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하고, 농가에 대한 경영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은 어느 만큼 빨리 농업기술 수준을 높이는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농업기술 개발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즉, 농업인



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여 고품질·저비용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생명공학 등 첨단 농업기술을 조기에 실용화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되도록 하고 농산물 물류비용을 보다 줄이는 한편 올해 유통시장 개방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산물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여건

에서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사전에 재배면적 등을 조절하는 조정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생산조정을 실천하는 우수생산자조직에 대하여 생산·유통 등 각종 지원을 우선하여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농산물유통구조 혁신과 양곡상 및 정육점 등 농산물 소매유통업체의 현대화와 대형화 등을 유도해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그동안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유통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으나, 금년부터는 유통과 정상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보다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미 산지와 소비지에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중에 있는 각종 유통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용측면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는데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일은 생산자와 유통종사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산물검사소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확대 개편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주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철저한 가축방역 등을 통하여 식품 안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의 확대 실시와 원산지 표시제도의 강화에도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과 환경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농업이 가지고 있

올해 정부는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업생산성을 10% 이상 높이며,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는 한편,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수출 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농림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는 공익적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 생산 과정에서 유발되는 농약·화학비료·축산분뇨 등 환경오염 요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농촌투융자의 효율성을 제고

WTO체제 출범으로 더욱 넓어진 세계시장에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품종의 선택에서부터 선별·수송·해외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수출품목별·지역별 수출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발굴 해소하고, 생산·유통 시설의 현대화로 수출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해외 농산물 박람회 참가확대 등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보다 역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WTO 농업협정에 따른 2차 농산물교역 자유화협상에 미리 대비해 농업통상 전문가를 육성하고, 우리의 입장을 지켜 나가기 위한 농업통상 외교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농촌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한 현장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금까지의 농촌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42조원 투융자사업이 완료되는 99년 이후의 「중장기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2단

계 농촌발전계획의 정책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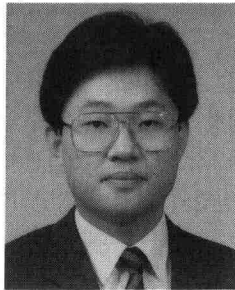
이는 개방대응과 시장지향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해 가는 우리 농촌과 농업이 중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림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정책평가 등 평가기능을 보강하여 농림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는 데 주안점을 뒀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나라경제

깨끗한손 믿음가득

일하는손 보람가득

기업활력 회복에 역점 둔 통상산업정책



우태희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장

올해의 통상산업 여건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무역 부문에서는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신장세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엔貨 절하폭이 큰 데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고급 소비재 수입과 에너지 수입 등도 늘어날 소지가 있어 올해에도 작년과 버금가는 무역수지적자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에서 다각적인 수출 촉진 및 수입안정화 등 획기적인 무역수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무역수지는 작년보다 약 60억달러 개선된 140억달러 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대외개방의 가속화로 수입자유화율이 확대되고 있고, 경쟁국보다 높은 임금·금리·지가 등 생산비용과 물류비용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다. 경기회복은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과 재래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9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어 온 경제적 어려움은 올해에도 쉽사리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에너지 부문을 살펴보면, 석유는

각 부문에 걸쳐 소비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LNG는 도시가스 및 발전용 수요의 급증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올해 에너지 소비증가는 약 8.0%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한해 동안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역수지적자의 획기적 감축, 산업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강력한 추진, 에너지소비의 과감한 절약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수지 적자확대와 산업활력의 저하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대외교역 여건의 악화와 함께 산업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된 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

에 무역수지의 획기적 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들 목표는 정부의 시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수출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전국민이 생산성향상과 에너지절약 운동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수지적자의 획기적 감축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폭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무역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수출상품의 고급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무역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무역업계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선수금에 대한 대응수출기간(현행 120일)을 확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선수금 및 착수금 영수한도도 철폐 또는 상향조정하고 무역금융의 융자단가도 일정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액도 작년보다 500억원을 증액하고, 신규로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

해서도 수출보험을 우대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시책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수출상품의 고급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기업과 광고·이벤트社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을 적극 활용하여 상품수출을 늘리도록 공동상표 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업이 자기상표나 공동상표를 개발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수입수요의 안정화를 추진할 것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본재 및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기계 구입에 대한 외화대출자금을 크게 늘리는 한편,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지급수입기간 연장효과를 갖는 L/C 발급 후 수입대금 결제유예기간(현행 20일)을 폐지토록 추진하는 한편, 연지급수입기간도 우리나라와의 거리를 감안하여 국가별로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넷째, 수입관리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국제규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입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간다는 전제하에 원산지표시 위반과 허위상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의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표시 등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해 나가는 등 성능·안전 및 위생관리기준 등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수입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정부는 올해 한해 동안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역수지적자의 획기적 감축, 산업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강력한 추진, 에너지소비의 과감한 절약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조정관세제도도 우리 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현행 부품과 완제품 간에 역관세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관세체계도 개선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섯째,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산업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진 기법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내에 덤핑률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課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와 관련한 법률자문 및 제소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에 마련한 각종 무역관련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와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무역수지개선 100대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적극 전개

정부는 산업경쟁력 10% 이상 높이를 적극 전개하기 위해 생산요소비용의 인하 추진, 합리화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첫째, 생산요소비용의 인하를 추진할 것이다. 금융개혁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개혁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고,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금·지가·물류비용·관세 등 요소비용별로 특별작업반을 설치하여 비용인하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다. 특히 관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합리화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은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설비투자에 치중하고 있어, 노후시설개선·자동화·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합리화투자가 크게 부족한 실정인 데다 생산성 제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합리화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금융상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산업기술혁신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산업기술인력의 기업규모별·업종별 수급이 불균형하고 고급

기술인력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및 연구소와 산업계의 기술개발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어 산업기술력 제고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8월중 산업기술인력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술연구집단지단을 2개 지역에 조성하여 대학, 연구소의 기술인력·연구시설·기술정보 등 기술적 자원을 산업계의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환경친화적 산업발전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다. 국내외의 환경규제에 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강·염색·전자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생산성향상 및 오염절감효과가 있는 200개 발전과제를 발굴, 올해 안에 5,3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공정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섯째, 자본재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자본재에 대한 수요를 더욱 확충하기 위하여 올해 안에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을 지난해 2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확대 지원하고, 50% 이상을 국산자본재로 도입하는 대형시설투자를 실시하는 대기업에 20억달러 규모의 상업차관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본재 전략품목개발자금의 융자기간 연장(8년→10년), 금리인하(7%→6.0~6.5%)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국제자본재종합전시장' 건립도 착수할 계획이다.

여섯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올해부터 300억원의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자금'을 조성하여 기업당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기술개발비의 75%)하는 한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도 활성화하여 참여기업을 현재의 1,100개에서 1,200개로 늘리는 한편, 관련 지원액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탁기업체협의회 결성을 확대하여 금년중 140개 수준(현재 129개)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소비 절약 추진


첫째,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올해는 TV 3社를 통하여 차별화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에너지 비수기에는 에너지와 환경, 경제운전, 고효율기기 보급,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건강·환경과 연계한 홍보를 실시하고 여성 및 사회단체와 적극 협력, 절약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기업체의 절약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둘째, 노후 보일러 및 窯·爐의 개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일러 및 요·로는 산업용 에너지의 80% 내외를 사용하는 핵심설비이나, 10년 이상된 노후설비의 사용비중이 많아 에너지 이용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개체비용은 높고 에너지 가격이 낮아 시설개체의 경제성이 미

흡한 실정이므로 에너지관리공단 및 전문 진단업체를 통해 보일러 및 요·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체대상 설비를 발굴, 노후설비에 대해 시설개체를 독려하면서 개체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할 것이다. 지난 92년부터 전기냉장고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효율등급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새로운 에너지 다소비 기기가 급속히 보급확산되고 있어 대상확대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오는 9월부터는 대형 에어컨을 동 대상품목에 추가하는 등 점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공공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공공 부문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과 투자우선 순위가 낮아 절약의 여지가 많은 점을 감안, 올해에는 공공기관이 절약 전문기업과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공공 부문의 추가적인 예산부담이 없이도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소유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섯째, 에너지 가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국내 LPG 가격은 정부에 의한 과도한 규제와 유통 부문에 경쟁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부작용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른 민간자율경쟁체제로의 정착을 유도하고 LPG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격을 자유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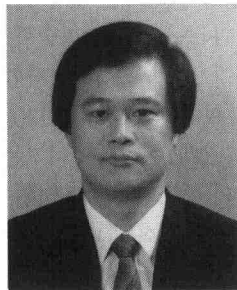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

최 근 경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도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사회전반적으로 정보화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세계는 정보의 축적·가공·검색·전송 등 정보활용 능력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도와 폭 또한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전되고 있다. 정보화는 곧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삶의 방식, 경제활동, 소득분배구조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광통신·디지털 분야의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정보혁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정보화는 경제구조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핵심 요체

정보화는 어느 국가에서나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물류비용 절감



김재섭
정보통신부 기획예산담당관

등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핵심요체로 부상되어 정보화의 정도, 정보인프라 수준 및 정보·지식 산업을 생성·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이 21세기 일류국가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선진 각국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고어 부통령이 국가정보화의 조기 실현과 국가경쟁력의 회복을 위해 국가정보통신기반(NII)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까지 고도정보사회 진입을 목표로 95년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을 향한 기본지침」을 발표한 후 총리가 중심이 되어 소위 '新사회간접자본'

이라 불리는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EU는 모든 회원국을 연결하는 범유럽통신망(TEN) 건설에 매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정보·무역·금융·경제·의료·세금·교육연구·유통 등 8개 분야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정보산업을 생산·기술·고용을 주도하는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 정보화 확산운동의 전개 등으로 정보화 성장률은 연평균 33.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정보화 수준은 아직도 선진국에 크게 뒤져 있으며, 일부 대기업과 전문가 계층에서는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일반국민의 정보활동 능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정보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보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전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전자교환기, 국산주전산기,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이동전화기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정보통신 기술 수준, 기술개발 투자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젊은층의 정보화 열기와 언론기관 등의 경쟁적 정보화 촉진사업 추진은 우리나라의 정보사회 구현을 앞당기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보화물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사고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추진

정부는 우리 사회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94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편, 정보통신부를 출범시킨 후 95년에는 범국가적 정보화를 추진할 기반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4월에는 입법·사법·행정부 가 모두 참여하여 정보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된 데 이어 10월에는 대통령이 직접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전략'을 발표하고 5대 추진원칙과 6대 정보화과제를 채택하였다. 이어 12월에는 정보통신산업 육성의 골격인 「정보통신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 발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 관련 정보의 DB 구축으로 중소기업 창업촉진 환경을 조성하며, 전자문서교환을 통한 물류행정처리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표하였다.

새해에도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보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 유도할 계획이다.

정보화 추진 가속화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 특허 및 기술정보, 산업입지정보 등 창업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중소기업 창업촉진 환경을 조성하며, 전자문서교환(EDI)을 통한 물류행정처리, 화물위치 및 공차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초·중·고교에 대한 개인용 컴퓨터 보급과 네트워크 환경 구축

을 통한 인터넷 등 다양한 교육정보 서비스 활용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OECD 가입을 계기로 은행의 여·수신 등 각종 업무를 정보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토지·금융전산망의 공동활용 추진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기업 등 국민부담을 완화시키고 원격진료 확산과 의료보험 업무의 정보화로 의료비 증가요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정보유통망의 고도화 추진

정보유통망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기존 전화망의 광케이블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음성·데이터·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전송이 가능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15년까지 45조원의 자금을 투입 건설할 계획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우선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은 민간 사업자들이 이를 완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정부가 2천여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80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속 국가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바탕 위에 국제 해저광케이블과 위성통신망을 연계 구축하여 범세계적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확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정보통신 중심 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의 경쟁 확대 및 공정경쟁체제 구축

통신사업의 경쟁을 확대하고 공정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진보 속도가 매우 빨라서 경쟁체제하에서만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先 국내 경쟁, 後 국제경쟁' 원칙하에 경쟁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7개 서비스 분야에 27개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시내전화를 제외한 통신사업 전반에 경쟁을 도입하였으며, 금년에도 신규통신사업자의 추가 허가를 추진하고 통신사업 허가의 사전 공고제를 폐지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경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의 규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보통신 분야의 공정경쟁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통신위원회를 준사법적 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요금제도 등 공정경쟁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산업의 발전을 촉진

정보산업의 발전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정보산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전문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인력양성체제를 정립할 계획이다. 우선 고급전문인력은 산·학 협동과정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 추진과 기존 정보산업 관련 대학 연구활동의 지원, 정보산업 관련업체의 인력양성 촉진 등을 통해 확보해 나가고

전문기능인력은 산업체 기능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국의 급속한 기술혁신 추세에 낙후되지 않기 위해 정부·기업·대학 등의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초고속교환기(ATM), 차세대이동통신(FPLMTS), 대형컴퓨터 및 디지털 방송기기 등 주요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정보산업 중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은 두뇌 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신세대 인력이 산업발전의 핵심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전반적 기술수준이 취약하고 업체가 영세하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소프트웨어 수요를 진작시켜 나가는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욕은 있으나 개발공간이 없는 신세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50억원을 출자하여 이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금년에는 전국 4개소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의 보증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공제사업을 착수하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이들 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일관된 지원체제를 마련,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스톡 옵션(Stock Option)제에 대한 자금·기술 지원 및 장외시장 등록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보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서비스 사업자, 장비제조업체,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해외에 진출할 수 있으며 한번 진출하면 상당기간 시장확보가 가능하므로 정보통신 분야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 부내에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통신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개도국 진출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자금 및 수출보험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정사업에 책임경영체제 도입

우정사업에 민간경영기법을 가미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창의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해말 공포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바탕으로 우정사업 운영체계를 과감히 개편함으로써 우체국도 책임경영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여 나가면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정보 종합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대내외 금융환경에 대비하여 체신금융업무도 전문화되도록 할 계획이며, 그 결과 전국의 우체국들이 우편·금융·정보 분야에서 생산성이 높고 서비스의 질이 민간기업을 앞질러갈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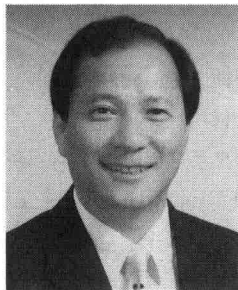
맑은 물의 유지와 공급

전 세계 물자원 중 97%는 해수이고 3%만이 담수이며, 이 3% 담수 중 70~80%는 빙산이나 빙하 등의 얼음으로 남아 있어 하천·호소·지하수·공기 중의 수분 등으로 순환하는 물은 겨우 1%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연평균 1,274mm로 평균 세계강수량 970mm보다 1.3배 많으나, 1인당 연간 강수량은 3천m³밖에 되지 않아 세계평균 3만4천m³의 11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강수량도 연도별·계절별·지역별로 변동이 심하여 갈수기에는 하천의 물이 말라 용수확보 및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총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 홍수기에 집중되어 홍수기에는 물이 넘쳐 하류지역에 수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하천유출량의 변화도 심하여 용수공급과 홍수예방, 수질관리 등에 매우 불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맑은 물의 유지와 공급에 역점

수량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강수량 1,267억t의



박대운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24%(약 300억t)만 활용가능한 실정이나 물 수요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어서 현재 건설중에 있는 9개의 다목적댐이 계획대로 완공되더라도 10년 뒤에는 물부족이 전망되고 특히 겨울가뭄시에 상습적으로 식수난을 겪는 지역이 상존할 것 같다.

또한 주요 하천의 오염으로 하천수의 이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댐 건설적지 부족 등으로 물자원 확보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생산원가의 40~70%밖에 미치지 못하는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물낭비가 심한 실정이다.

수질관리 측면에서는, 전국 하천을 이용목적에 따라 19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율이 45%

에 불과하여 미처리 방류량에 의한 수질개선 목표달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금호강 등 일부 오염우심하천의 수질은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낙동강·영산강 등 주요 수계의 중·하류에 인구 및 산업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갈수기에는 유량이 부족하여 하천의 자연정화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고,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의 개발욕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실태는 미미하여 상수원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물 수요에 대처하고, 수량·수질의 연계관리를 강화하며, 개발욕구와 수질보전시책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근원적인 수질개선을 이루는 것을 97년 물관리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맑은 물 유지·공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상수원 관

리를 강화하고, 청정식수원 개발을 확대하며,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물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 촉진 등을 올해의 역점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역점추진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상수원 관리 강화하고 청정식수원 개발 확대

팔당·대청·주암호 등 주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의 오염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낙동강 하류 주민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2001년까지 강 하류 물금지지역의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수질개선기획단' 설치 운영 및 수량·수질의 연계관리 강화로 근원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정한 源水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식수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낙동강 하류지역 2개소(경남 용산, 이룡)에 1만t/일 규모의 강변여과수 시범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추진결과에 따라 여타지역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오염원이 적은 계곡을 대상으로 소규모 식수전용 저수지의 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돗물의 미량유해물질

정부는 상수원 관리를 강화하고, 청정식수원 개발을 확대하며,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물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 촉진 등을 올해의 역점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함유실태를 조사하여 수질기준 항목을 추가하는 등 먹는 물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정수장 및 수도전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취약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민관합동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운영관리 세미나 개최의 정례화,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방안 마련, 상수도 직결식 급수체계 도입 추진 등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낙동강 수계 등 갈수기에 원수수질이 좋지 않은 전국 16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97년중 1개소 완공), 먹는 샘물 개발절차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의 안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구축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중소도시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97년에는 887억원을 투자하여 27개 지역의 지방상수도 시설을 설

치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은 급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004년까지 5천개소의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개발하고, 97년에는 583억원을 투자하여 38개 지역의 생활용수 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지역의 물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97~2001년까지 1,519억원을 투자하여 65개 지역의 식수원을 개발할 계획이며, 97년에는 215억원을 투자하여 27개 지역에 해수의 담수화시설을 설치하고 식수전용저수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급증대에 의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항구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점점 공급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물자원의 수요관리가 보다 비중 있는 물관리 시책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물관리 수요대책으로서 수돗물의 누수율 감소와 유송과정에서의 수질저하 방지를 위하여 노후관 3,280km, 취·정수시설 100개소를 개량하고(2,400억원),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용수수요에 대응하여 중수도시설과 정수설비의 보급확대, 절수에 관한 종합지침의 마련 등 수돗물 절수시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을 촉진

수질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거를 대폭 정비하여 실질적인

하수처리율을 제고하기 위해 9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05년까지 26조 9천억원을 투자하여 모든 상수원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7년에는 1조6,836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환경기초시설 262개소를 신·증설하고(하수처리율을 55%까지 제고), 하수관거에는 8,907억원을 투자하여 총 3,947km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소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하수도 설치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촌지역 자연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고도처리를 위해 합병정화조를 설치토록 하며(수세식변소 배출수와 일반잡배수를 합병하여 BOD 20mg/l 이하로 처리), 축산폐수 배출규제대상을 확대함과 아울러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규제 미만 축산농가에는 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표 1〉 주요 하천의 오염현황(BOD)

(단위:mg/l)

	80년	85년	90년	95년
낙동강(물금)	3.1	3.7	3.0	6.8
영산강(나주)	-	5.2	6.7	7.2

〈표 2〉 하수·폐수의 발생 및 처리량

(단위:천t/일)

	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발생량	14,638	2,370	175
처리량	9,653 (45)	1,632 (69)	69 (39.4)

註:괄호 안 숫자는 처리율임(%).

아울러, 산업폐수의 적정관리를 위해 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하고, 호소의 부영양화나 바다의 적조원인물질의 하나로 알려진 총질소·총인에 대한 방류수기준을 시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5급수까지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수질을 선진국과 같이 용수 목적에 따라 6~7단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질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14개의 측정항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체성 수역의 오염특성에 적합한 수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음과 같이 정비할 방침이다.

첫째, 전국 호소수질 보전을 위한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낚시면허제의 도입과 가두리양식장의 면허제한 등 호소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둘째, 팔당·대청호 및 낙동강 유역에 한정되어 있는 질소·인 배출 규제 지역을 확대하여 상수원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대책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호소특성별 수질정화기법을 개발·보급하며,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높은 경포호·화진포 등 동해안 7개 석호를 대상으로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현재 780개 지점에서 1,080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하수 개발허가제, 주변지역 영향조사, 폐공예치금제 및 원상복구의 무화 등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신규관리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폐공의 방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폐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되메움, 관측정으로 활용하는 등 폐공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관리는 이제 단순하게 빗물이나 하천수를 댐에 저류하여 배급하는 차원을 벗어난 지 오래다. 이제 물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희소자원이 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그나마도 사용할 수 있는 상류나 댐의 물은 파이프를 통해 가정과 공장에 배급되고, 처리되어야 할 오·폐수만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하천의 수질 관리는 갈수록 어려움을 더해 가고 하천수를 이용한 수돗물 공급에 한계를 느끼면서 물자원의 부족현상은 가중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제는 물자원 주변의 사회·경제 형태와 그 변화양상 그리고 당해지역 주민의 형성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총괄적·입체적 물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깨끗한 물의 보전과 이용은 양과 질의 종합관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동시적 접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주민의 분야별 출선수범과 참여가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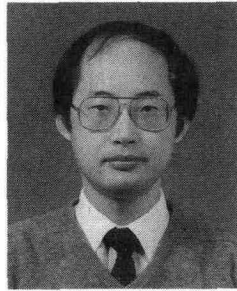
현장중심적 ·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문 민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보건복지 시책의 방향은 국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다. 그 결과, 저소득층 · 노인 ·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이 확충되었고, 보호수준도 향상되었다. 농어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의료보험급여가 내실화되었으며, 예방적 건강증진시책과 식품 · 의약품 안전성 확보대책 등 보건복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틀도 마련되었다.

정부는 올해의 보건복지 시책 방향을 우리 국민이 생활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적 · 생산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의 복지기반 강화

우선, 141만명에 이르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매월 1만원의 생활용품비와 해산보호비(10만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최저생계비의 90% 수준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



문창진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

다. 일시적인 질병 ·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한시적 생계보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생활보호법」 개정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녀학비 지원대상이 전체 인문고생으로 확대되고 생업자금 융자한도액이 가구당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약 265만여명에 이르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보건복지시책을 강화하게 된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령수당의 지급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98년 전 국민연금 실시에 맞추어 연금수혜대

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로연금제도' 등 특별소득보상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건강관리를 위해 생활보호노인에 대한 건강검진수가를 대폭 인상(5천원→1만1천원)하여 현실화하고, 98년도부터 노인의 틀니와 보청기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약 10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도 중점 추진할 것이다.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1만5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대상도 1만9천명에서 3만8천명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대상을 통일호에서 무궁화호로 확대하고, 시각 · 청각장애 가정의 TV 수신료를 면제하고, 장애인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면제범위를 확대(1,500—2천cc 이하)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감면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사회활동제약요인 해소를 위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

를」도 제정하며,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총 4.916억원의 용자 지원을 통해 총 2,648 개소의 보육시설(공공 1,100개소, 직장·민간 1,548개소)을 확충하여 15만5천명의 아동에게 추가로 보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장애

인·영아 전담 보육시설운영 등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민간의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복지 분야 자원 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해 교통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안내센터'를 통한 연계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행 정부 주도의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를 법인뿐 아니라 개인·단체에도 허용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제도의 개선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890만여명의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모의적용사업의 실시 및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의 보건복지 시책 방향을 국민이 생활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적·생산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데 두고, 모든 국민의 균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복지시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여성연금권 확보, 연금지급주기 단축(분기→월별) 등 가입자 편의를 도모하고 장래의 경제적·인구구조적 요인 등을 감안한 적정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등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의 의료보장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보험의 연간적용기간을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고, 보청기·인공후두 등 4종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의료보험을 실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의료보험 국고차등지원액 확대, 고액진료비 및 노인의료비 공동부담사업 확충을 통해 농어촌조합에 1,89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진료행위의 난이도·빈도 등 상대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미래지향적인 의료제도의 기본틀 마련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자문기구로 발족된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 국

민이 편리하고 쉽게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총 24개 개혁과제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11개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금년 1/4분기중에, 의료보장 내실화 등 13개 중·장기 과제는 오는

10월까지 개혁방안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재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종합병원 이상에만 실시했던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를 4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까지 확대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며, 장기이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증 외상·화상 등 응급환자의 질환별 전문치료센터의 건립 추진과 응급환자 신고전화(119와 129) 통합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촌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민간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약 2,100억원의 용자금이 지원된다.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시책의 강화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금연 및 절주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금년 7월부터는 담배사업자와 의료보험자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여 보건교육·영양개선 등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 도입을 적극 권장하는 등 국민영양개선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98년초 개원을 목표로 경기도 일산에 건립중에 있는 500병상 규모의 '국립암센터'의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암정복 10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암 예방·조기진단, 암연구 등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암환자 치료율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정신보건법」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제까지 단순 수용보호 위주의 정신요양시설 운영에서 탈피, 재활과 사회복귀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정신요양시설을 정신요양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로 전환시켜 나가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법조인 등으로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심의위원회'도 구성·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선천성 정신지체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모든 신생아에게 확대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상담사업의 강화와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족보건사업을 질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의과학·의료기기·생명공학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의 성장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에 따라 과급효과가 큰 전략산업(Star-Project)를 선정·지원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개발 지원예산을 610억원(96년:462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충북 오송 지역에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의 세부계획을 상반기중 확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식품·의약품 공급체계 구축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 보다 완벽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중금속과 PCBs(Poly Chlorinate Biphenyls) 등 환경오염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설정 및 신개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어묵제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식품안전관리를 과학화·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출범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기능을 보다 강화,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전담조직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콩나물·고추장·참기름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확대 등 국민에 의한 사회적 감시체제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식품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식품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식품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우리 고유의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증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제도(KGSP)'를 98년 1월부터 시행하고, 표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의 격차가 큰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불신해소 차원에서 가격감시를 강화, 거품가격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음식문화개선운동 및 건전한 가정의례제도의 정착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과소비적·낭비적 요인을 제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화장품 가격을 판매자가격표시로 개선하여 화장품가격에 대한 소비자불신을 해소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시범부처로 지정되어 추진중에 있는 규제개혁은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9개 분야 135개 과제를 선정하여 이 중 단기과제를 3월까지, 중장기과제는 9월까지 마무리지를 예정이다.

한편, OECD 가입을 계기로 OECD 산정기준에 적합한 보건복지통계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안과 '삶의 질'을 보다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복지 GNP' 추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우리의 사회보장수준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맞추어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정재**

‘新노사문화’의 창출

올

해는 21세기 대전환기의 새로운 변명을 위한 발전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중요한 해이다.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많은 과제 중 노사관계의 혁신은 가장 기본적인 과제의 하나이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쟁력’이며, 노사관계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新노사문화는

21세기 국가경영전략의 핵심과제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는 근로자의 일에 대한 열정과 창의가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세계화·정보화의 사회이고,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되는 지식사회이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는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않고는 ‘경쟁력’은 커녕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선진제국은 날로 심화되는 경쟁에 대비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새로



송길홍
노동부 기획예산담당관

운 생존전략을 노사관계의 혁신으로부터 찾고 있다.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념이 없는 것이다.

우리도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체질과 사회구조를 경쟁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가 바로 우리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설계된 새로운 노사문화를 산업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협력적인 노사동반자 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은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국가경영전략인 것이다.

새 노동법은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

연초부터 지난해말 개정된 노동법을 둘러싸고 산업현장에 파업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잘 모르는 일부 국민까지 안정되어 가던 노사관계를 정부가 앞장서서 시끄럽게 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정부가 불필요하게 문제를 만들어낸 것일까? 그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먼저 문제를 일으킬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변화에 따르는 불가피한 부담조차 못 참아 하는 이면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갈등과 투쟁의 관계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대결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노동법 개정으로 일부에서는 임금이 삭감된다거나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제도변혁에 따르는 임금저하는 보전

될 수밖에 없고 고용조정에 따른 보완장치도 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것은 노동운동 전문가가 더 잘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대비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나 깎고 일자리나 뺏는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노동법 개정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다. 기업발전을 위한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그리고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의 발전전략인 것이다.

이제 정부가 노동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해 보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소모적인 대결을 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新노사문화 창출에 노동정책의 역량을 총결집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뒷받침하는 최우선적인 과제는 개정된 노동법이 우리 산업사회에 순조롭게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노사관계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동정책의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우선 노사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법의 내용이 올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지역별 노사대표 간담회 등 순회 노동법 설명회 개최, 현장노사와의 집중적인 대화의 장을

이번 노동법 개정은 기업발전을 위한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그리고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뒷받침하는 최우선적인 과제는 개정된 노동법이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동정책의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마련하고 언론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對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함께 현장노사의 이해제고를 위한 만화·팸플렛·소책자 등 다양한 해설서를 작성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노사관계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기에 제·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체제도 정비할 것이다. 달라진 노동위원회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균

형 있는 조정·심판 기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조정부·심판부 신설,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등 행정체제를 조기에 개편할 계획이다.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인 참여·협력기구가 되도록 「노사협의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운영지도지침 등을

조기에 개정하고 중앙노사정협의회가 주요 노동문제에 대한 勞·使·政 최고 협의기구로 정착되도록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협의회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노사분규의 사전예방과 조기수습체제를 마련할 것이다. 노사분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요 대기업 및 공단 입주업체의 노사협력 결의대회를 적극 권장하고 노사협력 우량기



업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공기업 및 민간 대기업 등 노사관계 주요 사업장을 선정하여 임금·단체협약 교섭 초기단계부터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사분규로의 비화를 방지하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동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한편 노사분규 조기수습을 위한 균형 있는 조정서비스 제공에도 만

전을 기할 것이다. 노사에 대한 합리적 대안제시 등 신속·공정한 교섭지도 및 쟁의조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율타결을 유도하면서 합법적 쟁의행위는 법이 정한 절차내에서 조기타결을 적극 지원하되 노사교섭을 둘러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원활한 고용조정 추진하고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제고

21세기 경쟁력의 원천은 인적 자

원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평생에 걸쳐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경쟁력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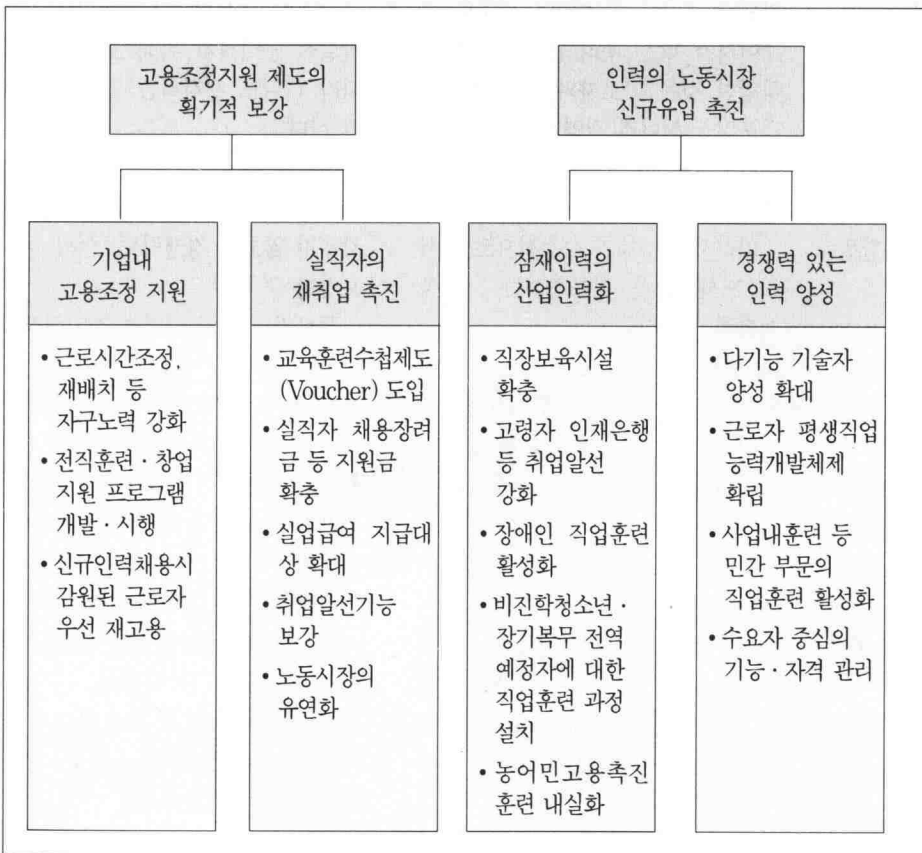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는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체제에 맞추어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중견관리직을 중심으로 고용불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도 부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조정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보강과 인력의 노동시장 신규유입이 노동시장 관리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감안 정부는 기업내 고용조정 지원,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 등 고용조정지원대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기혼여성의 취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잠재인력의 산업인력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다기능기술자의

<그림>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인적 자원 활용의 최적화



양성을 늘릴 수 있도록
기능대학을 확충해 나
갈 계획이다.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획기적으로 보강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일에 대
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데 따른 적절
한 보상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따
라서 정부는 「근로자 생활향상과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제도적으로 뒷
받침할 계획이다.

이 법에는 근로자 주택구입과 전
세자금융자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과 대학학비 융자제도 도입 등 근로
자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내용
이 담길 것이다. 그리고 기능인 우
대와 근로자 체육·문화, 영유아보
육 등 복지시설 확충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안전·보건
체제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쾌적한
작업환경은 근로생활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제품불량률 감소, 생산성 증
대 등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정
착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취약 분야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제일
의 생활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등
지난해에 확정된 「산업안전선진화 3
개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조기에 제·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체제도 정비할 것이다.
또한 노사분규의 사전예방과 조기수습체제를 마련하고
원활한 고용조정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자의
생활안정대책을 획기적으로 보강해 나갈 것이다.

경영계의 능동적인 노사화합노력 기대

새로운 노사관계제도가 산업사회
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원도 기술도 무엇하나 제대로 갖
추어지지 않은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근로자의 땀과 열정의
덕분임을 헤아려 경영계가 근로자를
제대로 대우해 주겠다는 의지를 가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계가 능동적으로 나서
서 노사화합을 이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참여
와 협력을 지향하는 개정 노동법의
정신에 맞추어 근로자와 함께 동반
성장한다는 새로운 경영자세를 가다
듬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금이
낮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
다. 투명한 경영을 통해 근로자에게
마음을 열고 노사가 신뢰하는 참여
와 협력관계를 토대로 평생직장을
만들어 준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의 경쟁력은 인적 자

원의 질에 좌우됨을 유
념하여 근로자의 교육·
훈련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근로자도 기업발전 없
이 삶의 질 향상이 없
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
업의 발전을 위해 자발
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일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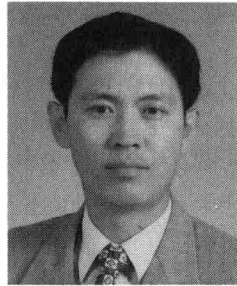
애착과 창의를 가지고 협력하지 않
으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활력
있는 산업현장을 만드는 것은 기대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에 살
고 있다.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착실히 준비하기 위해 오늘뿐만 아
니라 내일도 생각하는 슬기를 가져
야 한다.

내일의 큰 변화를 예견하고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지 않고는 경쟁력도, 삶의 질도
보장할 수 없다.

근로자의 협력 없이는 기업성장이
있을 수 없고 기업발전 없이는 근로
자의 삶의 질 향상도 없다는 확고한
노사동반자 인식 위에서, 근로자는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경영자는 근로자에 대한 진심어린
인간적 대우를 통해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끊임없이 창조적 혁
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새 노사
문화 창출을 통해 풍요와 번영의 21
세기를 준비하는 데 勞·使·政이
힘을 모아야 하겠다. **홍원**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경쟁력 제고



김경식

건설교통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가 국경 없는 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이 전에 없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기술이나 자본, 노동력이 국가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 국토에 고착되어 있는 사회간접자본이 한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100여년 전부터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오고 있는 선진국을 비롯해 경쟁상대국인 동남아 각국에서도 최근 경쟁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장기를 거치면서 30여년간 많은 투자를 하여 왔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더욱이 80년대에는 주택·상하수도 등 국민복지요구에 치중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소홀히 한 결과 지금 도로나 항만 등 곳곳이 막히고 물류비가 연간 48조원에 달하는 등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다행히 문민정부 들어서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하여, 도로·항만·철도 등에 매년 큰 폭으로 투자를 늘

려가고 있다. 올해에는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지난해보다 24% 증가된 1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의 민자유치 활성화방안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의 수립

올해에는 중장기 사회간접자본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 같은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교통수단과

시설 간에 연계수송체계가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중장기 사회간접자본 확충방향과 투자우선순위·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시하는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키로 하고 현재 계획안을 마련중에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속철도 및 격자형 고속도로로 이루어지는 '고속간선 교통망'과 향후 남북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권역별 국제공항을 개발하는 한편, 가덕항·아산항 등 지역 거점항만의 배후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철도 등 교통수단간 연계체제를 확립하고, 상호 수송분담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 등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경부고속철도는 경부축의 교통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통일후 중국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대륙철도망 형성에 대비하는 사업이다. 92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001년 완공목표로 총사업비 10조7,400억 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1일 최대 52만명의 수송이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주로 '천안-대전'의 시험선 구간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총 65%를 진척하였고, 전체적으로는 10%가 추진되었다.

앞으로 경주노선·안전대책 등 현안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二期·사업비 등의 사업계획도 상반기까지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경부고속철도 전구간에 걸쳐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기술 이전과 선도기술개발사업(G7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다.

아·태지역의 세계중심지화에 따라 중추(hub)공항 보유여부는 동북아 중심국의 위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아시아 최대규모의 미래형 첨단공항으로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인천국제공항은 1단계로 99년까지 5조3,823억원을 투입하여 연간 2,700만명의 여객을 처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약 10조원을 투입하여 연간 1억명을 처리하게 된다. 92년 11월 착공한 이후, 부지조성공사와 설계·용지매입 등을 추진하여 96년 12월말 현재 전체공정의 23.8%를 완료하였다.

정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지난해보다 24% 증가된 1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의 민자유치 활성화방안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 같은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다가오는 2000년에 완벽한 상태로 개항하기 위하여 여객터미널·화주 등 핵심시설을 본격 추진하여, 올해 안에 전체공정 45%를 진척시킬 계획이다.

공항고속도로는 2000년 11월 완공을 위해 공정관리에 중점을 두고, 전용철도는 1단계 2003년 개통을 위해 상반기중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중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로·철도·공항·수자원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정부는 도로·철도·공항·수자원 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도로운영을 효율화하며, 철도 수송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간선도로망 확충하고
도로운영을 효율화

도로는 전국 수송량의 9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교통시설로서

그동안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혼잡구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통일과 고속생활권시대에 대비하여,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감안한 간선도로망 체계를 형성한다는 목표하에, 2020년까지 남북 7개축·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사업(1,885km→6,160km)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올해 안에 총 24개의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사업을 정부재정과 민자로 추진하고, 2개 고속도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정부재정으로 9개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사업에 착수하고, 민자유치로 천안-논산 등 5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신설 1개 고속도로 노선과 확장 1개 노선을 완공하는 한편, 대전-진주 등 8개 고속도로 사업은 목표연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국도의 간선도로망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혼잡구간 등 교통애로 구간 해소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아산·녹산·북평·군장 등 주요 공단의 배후 수송도로에 대한 국도 확장사업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중점 추진하고, 서산-태안 및 목포-강진 등 기존 혼잡구간 405km에 대한 국도 확·포장사업을 시행하며, 시내교통과 통과교통이 혼재되어 체증이 심한 시·읍·면 소재지 통과 국도에 대한 우회도로 건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 수송능력 제고하고 산업지원기능을 강화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확대하여 물류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교통애로를 타개하는 데 철도정책의 목표를 두고, 장기적으로 남북 2개축·동서 3개축(남북축:호남고속철도·동해선 철도연결 고속화, 동서축:경부고속철도·동서고속철도·경전선철도 고속화)의 날일(日)형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향후 남북철도망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수송능력 증대 효과가 큰 철도의 복선화·전철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선, 심각한 애로구간인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화 사업과 전라선·호남선의 직선화·복선화를 추진하고, 경춘선·충북선의 복선전철화와 장항선 개량사업과 함께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를 올해부터 추진할 것이다.

한편, 대도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 방사순환형 광역전철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수도권 및 부산권에 2001년 목표로 광역전철망 건설을 추진하고, 대구·대전·광주권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광역전철망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외 항만 물동량을 지원하기 위한 철도건설을 위해, 일로-대불공단간 인입철도 건설을 금년부터 추진하여 2001년에 완공하고, 가덕항·광양항·아산항 등 거점항만에 대한 배후철도망 건설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철도 경영개선을 적극 추진

하여 재정자립도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적자노선과 역을 정비하고, 인력을 감축(1,294명)하여, 철도 운영비용의 절감을 추진할 것이다.

지방거점 공항을 건설하고 국제항공 노선망 확충

항공교통 대중화 시대에 부응하여 공항건설·항공망확충 등 국내외 항공서비스 공급을 대폭 확충한다는 목표하에 우선, 권역별 거점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시설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청주공항을 올 4월중 개항하여 중부권 항공수요를 흡수하고, 수도권외의 보조공항으로 활용하며, 양양공항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고, 무안공항은 설계에 착수할 것이다.

한편, 김포공항은 98년 완공목표로 여객터미널 증축과 개량을 추진하고, 김해공항은 신활주로 공사를 본격 추진하며, 국제여객터미널 설계를 시행한다. 대구공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을 시행하고, 울산·여수·포항 공항 등의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울진공항은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군비행장의 운행시간대를 추가확보하고,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경항공기 운영을 개선하는 등 국내 항공망을 적극 확충할 것이다.

2000년대 용수난에 대비한 수자원 개발·관리

2000년대초에는 전국적으로 물 부족상태에 직면하게 되어 도시나 산업단지 개발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10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했으나 연강수량의 7%를 담아 두는 데 불과하며, 댐 건설 적지가 줄어들고 주민저항이 커지는 등 개발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또한 물값이 너무 낮고 국민들의 물낭비 습관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천의 개·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홍수피해가 증대하는 등 우리나라 수자원 여건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을 담아 두고 홍수를 조절하는 다목적댐 건설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댐 공급량을 92억t에서 156억t으로 늘릴 수 있도록 34개 댐을 추가로 건설하여 연강수량의 12%를 이용한다는 목표하에, 올해에는 건설중인 6개 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영월댐의 보상에 착수하며, 댐후보지 4~5개에 대한 조사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댐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몰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보상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보된 물을 지역적으로 고르게 공급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건설을 확대하는 것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2011년까지 광역용수 공급비율을 35%에서 65%로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올해 안에 5개 사업을 완공하고, 2개 사업을 새로이 착공하며, 3개 사업에 대한 조사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강화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 및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등 신해양질서와 WTO 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우리 연근해 어업도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오순택
해양수산부 연근해과장

연근해 어업을 신해양질서에 맞게 재편

정부는 주변국의 EEZ 선포 등 어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선세력 유지 및 총허용어획량제도 도입 등 연근해 어업을 EEZ체제에 맞게 재편하고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 대한 단백질 공급 및 수산물의 수요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양식어장을 확대개발하는 등 '기르는 어업'을 집중육성하고 연안어장의 자원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한 인공어초시설사업 및 어장정화정비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주변국 중 일본은 이미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고 중국도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중에 있어 앞으로 3국의

협이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확정될 경우, 대형선망·안강망 등 일부업종은 어장의 일부상실이 불가피하다.

또한 주변국과의 협이에 의해 상호 入漁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조업시기 및 척수의 제한 등 규제강화가 불가피하므로 우리 어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는 어선세력을 우리 수역의 자원수준에 맞게 조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합리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시행도 시급한 실정이다.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추진하고
EEZ의 자원관리 강화

연근해 어선세력을 우리 주변수역

의 자원수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주변국의 EEZ 설정으로 어장이 상실되거나 규제를 받게 되는 대형선망·안강망·저인망어업 등 9개 업종을 우선 감척할 계획이며, 해선망·낭장망·연안안강망 등 자원감소 및 인력과다소요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도 단계적으로 감척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권 밖에서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무허가·무등록 소형어선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제도권으로 흡수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EEZ내 어업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어종에 대한 자원량 예측 및 적정어획강도를 평가한 후 어획량이 많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종, 자원상황이 악화되어 보존관리가 필요한 어종, 우리 주변수역에서 외국어선이 많이 어획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제도 대상어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대상어종에 대한 조업어선의 활동과 어획량 감시체제를 마련하고 어종별 총허용어획량제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총허용어획량제도 관리를 위한 세부 시행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EEZ내 어업자원의 보존과 우리 어선의 주변수역 입어조업을 위해서는 외국어선의 우리 EEZ내 조업방법 및 입어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허가 및 시험연구 승인절차, 입어허용업종 및 선박의 규모 등을 정할 계획이다.

주변국과 공동자원관리방안 마련

자원생물학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주변수역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어종은 계절별 回游性이 강하고 EEZ경계를 아무런 방해 없이 왕래하는 경계왕래자원이므로 이들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는 주변국간의 상호 협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주변국들이 자국의 EEZ내에서 자국민만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경우, 자원남획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산란장에서의 치어어획은 어업자원의 가입을 방해하게 되고 어획대상 이전의 치어어획을 허용할 경우, 먹이사슬을 파괴함으로써 생태학적 남획을 낳게 된다.

또한 동일 이용자원에 대해 각국 EEZ내에서 각기 다른 자원관리 수단을 채택하여 A국은 어획량 제한을, B국은 어획 노력량 제한을, C국은 금어구 및 금어기 설정 등을 채택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곤란해져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에 더욱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주변수역의 어업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용대상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전생활구역 및 생태적 지위를 고려한 공동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연결하고 있는 일본·중국과 협의하여 공동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출어선의 안전조업을 확보하고 어업질서를 확립

우리 수역의 어업자원 보호 및 질서 있는 조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난사고의 예방과 불법어업의 근절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주 및 간부선원 7만5천명을 대상으로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출항어선의 항해, 통신장비 점검은 물론 大和堆(울릉도 북쪽에 있는 오징어 어장), 동중국해 등 원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유류 등 선수품과 의료지원

을 실시하고 1일 2회 출어선의 동태파악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상과 육상, 공중을 연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어업 우심해역 및 지역에 대하여는 책임단속자를 지정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며, 일선수협 및 어촌계 단위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민의식 개혁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기르는 어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우리 주변수역의 EEZ 설정으로 어선어업에 의한 생산은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산물수요 증대에 부응하려면 '기르는 어업'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양식어장을 확대개발해 나갈 것이다. 수면의 입체적인 이용을 위해 복합양식을 확대개발하고, 공동어장을 다수어업인의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종래의 1종공동어장을 마을어장과 협동양식어장으로 구분하여

협동양식어장에서는 어촌계원들이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대량으로 양식되고 있는 김의 병해예방과 품질 향상을 위해 어업인들에 대한 유기산 공급을 확대지원하고 돔·농어·가리비 등 부가가치가 높은 어패류 양식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수면 어업을 개발하고 연어 인공부화 방류를 확대할 것이다.

상수원내 양식어업의 제한으로 위축되어가고 있는 내수면 어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상수원내 가두리양식시설을 육상으로 이전해 나가고 뱀장어·자라·송어 등 양식이 보편화된 품종은 단지를 조성하여 소득원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어를 명태·오징어와 함께 동해안의 3대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어간이부화장 8개소를 신설하고, 치어방류량 확대를 위해 동해안 13개 연어소상하천의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성

우리 수역에서 어업이 지속적으로

정부는 주변국의 EEZ선포 등 어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선세력 유지 및 총허용어획량제도 도입 등 연근해 어업을 EEZ 체제에 맞게 재편하고,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기르는 어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다.

유지발전되려면 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안수역의 수산자원을 적극조성하기 위해 97년도에는 632억원을 투자하여 1만6천ha에 인공어초를 시설할 계획이다. 인공어초는 어업인들의 활용도가 높은 수역에 우선 시설하고, 시설수역과 대상어종에 적합한 특성어초를 개발, 투입하는 등 방식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안수역 자원증강을 위해 강원·전북 등 5개 시·도에 독립종묘배양장을 시설하여 유용수산종묘를 양산 방류하고 연안 정착성품종을 집중적으로 생산 방류하여 방류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며, 개발된 신품종생산기술은 빠른 시일 내에 민간종묘배양장에 이전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직결시킬 계획이다.

그런데 70년대 이후 적조에 의한 수산물 폐사 등의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적조의 근원적인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처역량 제고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적조의 조기발견 및 예보

체제 확립을 위해 39개 시·군에 상주예찰반을 운용하는 등 정기적인 적조예찰을 실시하고 수산진흥원 조사선 및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수역단위 기동예찰과 헬기에 의한 항공예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경남 지역에 적조방제용 황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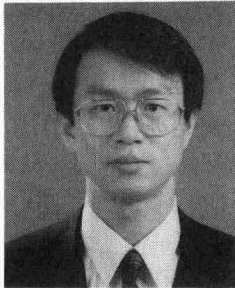
를 6만t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해경, 시·도, 시·군 등에 적조예찰반을 설치하여 적조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다 근원적인 赤潮의 제거 및 방제를 위해 대학·연구소·수산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안어장의 정화·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어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협 및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어장을 대상으로 어장정화사업과 침체망 인양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가막만·고성만 등 오염 및 적조 상습발생해역 9개만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어장의 장기사용 및 밀식으로 생산성이 낮은 주요 양식단지 30개소를 선정하여 어장정화 및 정비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며, 어장정화·정비 및 재개발에 필요한 절차 및 지원을 위해 가칭 '연안어장정비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대**

창조적 과학기술혁신능력의 확보



박종용
과학기술처 정책기획과장

4년도 채 남지 않은 21세기에 우리는 무엇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제환경과 주변 선진국의 기술과 제품을 모방·개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국제경제환경은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경쟁력의 원천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과 노력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그 여파는 벌써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겠다.

과학기술력의 향상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해 줄 수 있는 핵심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문민정부 이후 추진했던 민간 주도 기술혁신체제의 정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을 마무리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원동력 또는 국제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깃든 우리 고유의 기술과 제품으로 국제무대에서 승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 지 않으면 안될 기로에 놓여 있다.

앞으로 국가 기술혁신이 가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자가 더욱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과학기술문화가 창달·확산되고 독창적인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배양과 핵심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7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96년 2조4천억원에서 3조원 규모로 확대되어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국공립연구소 또는 산·학·연 공동 연구 등의 연구비로 활용되며 과학기술처가 추진하는 특정

연구개발사업에 3,140억원을 직접 연구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특히, 국내 연구개발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 연구를 더욱더 촉진하며 세계적으로 창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고유의 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민간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소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동연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먼저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7개국 수준의 진입을 뒷받침할 제품기술과 기반기술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21세기 유망산업 분야에서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광대역종합통신망, 신의약·신농약, 차세대자동차, 초소형 정밀기계 등 8개 부문 첨단제품의 요소기술개발을 본격화할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력으로 확보해야 할 정보·전자·에너지 첨단소재, 첨단생산시스템, 신기능 생물소재 등 기반기술을 개

발해 나갈 것이다.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 대규모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지만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우주·해양 기술 등 거대과학기술개발을 본격 착수할 것이다. 96년 4월에 개최된 제12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장:국무총리)의 의결

에 따라 수립된 「우주기술개발 중·장기기본계획」에 따라 한반도 관측, 해양탐사, 과학실험 등에 활용될 지구 저궤도용 다목적실용위성의 개발을 추진하여 99년에 제1호기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 분야에서는 태평양 심해저자원 탐사 및 채광·채련 기술의 개발·확보를 중점 추진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방 위주의 연구형태를 일신하여 창의적인 기술을 탐색하고 독자적인 과학기술의 싹을 창출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을 새로 착수하게 된다. 물질·재료, 생명공학, 극한기술 등의 분야에서 연구과제 중심과 연구원 중심으로 구분하여 약 10년간 계속지원하며 기존 연구개발방식과는 달리 산·학·연으로 구성된 기술분야별 사업단을 단위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일류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연구과제 중심운영제도(PBS)를 완전히 정착시키며 노후장비 교체, 고가 첨단연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배양과 핵심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특히,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고 세계적으로 창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고유의 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을 확대하여 연구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서 우수연구원에 대한 창의적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가칭 '이 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신설하며, 대덕연구단지내에 첨단의료원을 유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첨단 의과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기초과학의 육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열위에 있는 기초과학 연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연구와 우수연구집단의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첨단연구장비의 지속적 확충과 공동이용 지원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중점 지원하는 목적기초연구사업(97년 405억원)은 과제당 평균 연구비를 확대하고, 신예박사가 과제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며, 수요조사를 실시하

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추진시에는 대학의 우수연구개발인력·자원과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우수연구인력을 특정 분야별로 조직화·체계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선도과학자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수연구센

터(현재 총 38개 센터) 육성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97년중에는 3~5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3년 단위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수준 높은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자원과 지역별 비교우위산업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내에 설치된 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97년에 추가로 전남지역에 1개를 선정하여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에 총 14개 센터가 발전되도록 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대학의 연구활성화와 특성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창조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고급 과학기술인력은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핵심자원인바,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양적 규모 위주의 인력양성체제를 질적 탁월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국제성과 독창성을 갖춘 창조적인 미래형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학사과정 2,500명과 석·박사과정 등 총

6,600명의 학생을 탁월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과 신의료기술을 접목한 의과학연구소 건설에 착수하고, 금융공학프로그램 개발, 첨단교육시설 등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교육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은 95년 개원 이래 교수초빙, 교육·연구 지원시설의 확충에 이어 금년에는 정보통신, 신소재, 기계·전자, 환경, 생명공학 등 5개학과의 석·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산·학 협동을 위한 민간연구동 건설에 착수하며, 앞으로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여 국제화 시범대학원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광주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동연구단지 조성도 추진할 것이다.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능력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해 96년 개원한 고등과학원은 금년에 석학·교수 등 28명의 연구인력을 영입하고 대덕연구단지내로 이전을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 기초과학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다.

해외고급과학두뇌의 초빙활용사업은 해외 현지 연구경력 5년 이상의 교포 또는 외국인 과학자를 초빙하여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바, 금년에는 130명을 초빙·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초빙되는 경우 정부의 경비지원비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신진 박사학위 소지자를 국내·외 우수연구기관에 연수시켜 정예 연구인력으로 양



성하기 위한 박사후 연수지원사업도 450명으로 확대하며 점차 연수기관 및 연수지역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 강화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지원시책을 효율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기술개발자금지원 확대, 기술담보제도의 본격 실시, 해외고급두뇌의 활용지원 확대, 이공계대학 교수의 산업현장근무 확대지원 등 기술혁신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세계화의 진전 등 기술개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생기게 되는 기술개발활동의 규제 또는 애로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의 시장진출단계에서도 특별전시회 개최, 신제품 해외홍보 등의 가능한 시책을 개발하여 최대한 추진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성고가 제품생산과 신속히 연결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연구개발능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출연연구소와 연구과제를 추진할 경우 대응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소 또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허토록 하며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자문과 경영지도에 출연연구소 연구원이 적극 참여하도록 관련경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첨단기술 분야 또는 새로운 사업분야의 창업을 통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창업지원도 확대된다. 정부출연연구소별로 해당분야의 특성에 따라 창업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원

(KAIST)의 신기술창업보육센터·기술혁신센터의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연구원이 창업할 경우 연구소 시설·장비의 사용편의 제공, 신분상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등 모험중소기업의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기술을 제품생산에 적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주변기술의 개발·적용 등 엔지니어링 단계의 기술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핵심기반기술의 개발·보급을 확대하며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신고기준 및 사업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적극 전개

해외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선진국과의 실질적인 연구협력을 확대하여 과학기술이 세계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96년 서울에서 개최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들의 창조적 과학기술 연구인력 개발 및 교류에 대해 논의했던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APEC 청소년과학축전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과학기술네트워크 구축도 구체화해 나가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과학기술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OECD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과

정부는 기초과학 연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연구와 우수연구집단의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첨단연구장비의 지속적 확충과 공동이용 지원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를 전환하여 국제성과 독창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의 과학기술협력사업 및 첨단기술 정보의 수집을 확대하기 위하여 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국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OECD회의를 금년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토록 하며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체제 및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미국과는 과학협력센터의 개소, 제5차 한·미 과학기술포럼 개최, 과학기술특별협력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해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독일·영국 등과는 한·독 민간과학기술협력위원회의 설립·운영, 한·영 과학기술각료 원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이전을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술원천지에서의 연구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대형연구과제 지원 확대, 해외연구소의 추가 설치 및 다국간 국제공동연구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협력사업도 점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북방국가와는 국가별 강점기술의 국내이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러시아 국제과학기술센터(ISTC)에

가입을 추진하여 구소련 고급과학기술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크라이나와 우주 분야 특별프로그램의 추진, 중국과는 신소재 및 생명공학연구센터 설립 추진, 베트남에는 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지원 등 전략적인 연구개발협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종합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

21세기 선진국으로서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4~5년 동안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력의 향상은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이 모아져야 할 핵심적인 분야이다.

이에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하여 향후 5년 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들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중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초연구의 진흥 등 10대 부문계획을 실천과제 중심으로 수립·추진하며 매년 그 집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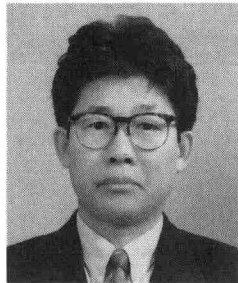
이와 함께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시책·사업의 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심의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국립**

그린벨트 완화조치, 문제점 많다

도 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71년에 도입된 그린벨트 시책은 우리 정부가 초지일관 지켜온 몇 안되는 정책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일본 국토청 前차관 下河邊박사가 한국의 그린벨트현황을 둘러보고 '20세기 인류가 남길 업적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의 하나가 될 것'으로 격찬했을 정도로 우리의 도시관리에서 그린벨트는 참으로 소중한 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린벨트제도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점도 또한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성급한 지역지정과 세부 관리지침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린벨트내의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주민생활불편은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구실을 주어 지금까지 무려 45여 차례 이상의 완화조치가 취해졌다. "아침 이슬에 소매가 젖는다"고 잦은 완화로 말미암아 현재의 그린벨트는 더 이상 본래의 그것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린벨트의 완화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그에 따른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



조명래
단국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난 3년여 동안 훼손된 그린벨트 면적이 7,115만 m^2 로서 6共 5년간의 2,430만 m^2 , 5共 7년간의 3,700만 m^2 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근자에 정부가 또 한번의 대대적인 완화조치를 단행하자 '그린벨트가 이제 개발벨트'로 전락되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신한국당과 건설교통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96년 12월 24일자로 발표한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그린벨트 개선책'이 그것이다.

여론이 한결같이 비판을 하는 대목 중 하나는 이번 그린벨트 개선책

이 그린벨트의 전면적 개발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건교부가 제시한 자료에서 여당의 당초 안대로 규제가 풀린다면 향후 10여년 안에 그린벨트 전체 면적(16억3천여만평)의 37%인 6억평이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린벨트 보존이 물건너 가게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번 개선책의 골자는 ①원거주민에 대해 3층 이하 90평까지 주택의 증개축 허용과 그들의 직계비속에 대해 30평까지 1세대 주택의 분할등기 허용 ②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로 돼 있는 12개 시·군·구에 테니스장·병원·은행·농수산물공판장 등 생활편의시설의 허용 ③100가구 이하 집단취락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④15년 이상 거주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율 인하를 포함한 각종 조세감면 등이다.

여당이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에 견주어 볼 때 최종 발표안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그 주안점이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완화조치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실제 어떻게, 얼마나 돌아갈지, 그에 따른 후유증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린벨트 기능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완화조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투기적 개발과 급격한 인구유입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거주민에 대한 증개축 허용에 관한 부분이다. 이 조치로 그린벨트 내 주택 중 69%에 해당하는 10만3천 가구가 증개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견된다.

90평까지의 증·개축과 분할등기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며, 분가받은 주택의 임대·전매가 조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적 개발과 인구의 급격한 이입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

투기적 개발은 기본적으로 이번 완화조치가 주민불편 해소와는 달리 과도한 재산증식의 효과를 수반하는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원주민 이룸으로 집을 지은 뒤 등기를 이전받는 식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지만 이번 조치로 그 규모와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그린벨트의 난개발과 도시

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행정권역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인 지역에 도시적 생활편의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조치가 특히 이러한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혜택을 볼 지역은 하남·의왕·시흥·과천·의정부·구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개선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투기적 개발과
급격한 인구유입을 자극할 뿐 아니라
그린벨트의 도시적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그린벨트 개발권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그린벨트 개발을 부추겨 환경파괴가
가속화될 것이다.**

리·광명·군포시와 부산 기장군·대구 북구·광주 남구·대전 동구 등인데, 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의 완화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그린벨트 훼손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정조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생활편의시설의 광범위한 허용은 종국에 그린벨트의 대대적인 도시적 난개발을 초래할 뿐이다. 이 점을 고려해 편의시설 입지를 지정 당시부터 공부상에 내대지로 남아 있는 지역에만 허용한다고 하지만 현재 그 입지분포·규모·지역역건 등은 파악이 전혀 안된 실정이다.

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내대지는 그린벨트 전체면적의 0.8%를 차지하

는데(경향신문, 96년 12월 25일자 3면), 이는 그린벨트내 대지의(전체의 2.1%)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이 중 원주민 소유가 반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린벨트내에 생활시설 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계획적인 관리가 강구되지 않는다면 준농림지보다 더한 마구잡이식 개발(투기적 개발까지 포함해)이 그린벨트내에 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허용시설 대부분이 전형적인 도시시설이므로 이들이 대대적으로 입지하게 된다면 그린벨트 지역은 이제 본격적인 도시화의 물결을 탈 것이다.

셋째는, 그린벨트 개발(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개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조치들이 특히 남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주의가 풍미하는 현재의 지방자치제하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그린벨트 개발권은 주민여론을 등에 업고 환경과 괴를 자초할 그린벨트 개발을 부추기는 쪽으로 남용될 것은 삼척동자도 생각할 수 있다.

취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고로 지원하고 사업절차를 단순화하며 밀도기준을 하향화하는 등의 조항은 모두 그린벨트 개발을 부추길 내용들이다.

아울러 공익사업에 의한 주택移築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주민에게 요율이 낮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

하는 것, 15년 이상 거주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인하여 주는 것 등도 모두 체계적 개발규제가 부재한 현실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해 개발이 남용될 수 있는 조항들이다.

넷째는, 그린벨트 정책·행정의 파행성과 정치적 이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환경 정책은 해당 지역주민뿐 아니라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그리고 당대뿐 아니라 후대의 입장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그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그린벨트 개선책도 당정의 몇몇 고위 인사들간에 밀실협약을 통해 결정된 후 민원해결이란 탈을 씌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완화조치에 내재된 수많은 쟁점이 호도되고 있다.

특히 당정 고위인사들의 밀실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그린벨트 완화방식은 그 당위성에 관한 대중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나 계산에 관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언론매체들은 하나같이 이번의 완화조치가 올해의 대선을 의식해 취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의 진위를 떠나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민정권 3년 동안 그린벨트의 연평균 훼손면적이 5共의 4배, 6共의 3배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민정권의 정치적 특수성과 결부시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의 문제점들이 합쳐져 가져올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이 될까? 지금까지 누적된 그린벨트 이

용의 파행성이다 이번 완화조치의 후유증이 더해진다면 그린벨트제도의 장래는 참으로 암담해진다.

최근 들어 그 암담함은 그린벨트를 둘러싼 환경일반에 대한 국가철학의 빈약에 의해 더욱 짙어 보인다.

지난해 3월 대통령은 '녹색나라의

그린벨트의 보전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유효하다고 본다. 지금껏 수행해 왔던 도시적 확장을 막는 실제적 기능에 더해, 앞으로 보편화될 생태적 도시계획을 위한 기능(생태성), 녹색자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기능(공공성), 미래세대를 위해 공간을 저축하는 기능(미래성) 등을 그린벨트제도가 새롭게 감당해 가야 한다.

환경대통령'이 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1년도 안되어 자연보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유지되어 온 각종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조치들을 정부가 앞장서 취해 왔다.

경쟁력 강화란 미명하에 수도권과 밀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했고, 수도권 상수원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해제를 추진했으며, 준농림지에 산업축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였다. 이런 추세와 연장에서 주민 불편 해소를 내세워 그린벨트마저 유례없이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 수순으로 지금까지 개발이 제한돼 온 절대농지나 각종 도시계획지역, 공원녹지지역에 대한

해제와 개발요구들이 분출할 것이다.

선거국면 및 각종 국가시책(특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완화시책)과 맞물려 정부가 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는 흥미로운 관건거리가 될 것이다.

그린벨트의 완화는 이렇듯 그린벨트내에서의 파행적인 개발을 부추길 뿐 아니라 유사한 토지이용에 대해 심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그 후유증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수많은 논란과 대안제시가 있었지만 그린벨트의 보전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유효하다고 본다. 지금껏 수행해 왔던 도시적 확장을 막는 실제적 기능에 더해, 앞으로 보편화될 생태적 도시계획을 위한 기능(생태성), 녹색자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기능(공공성), 미래세대를 위해 공간을 저축하는 기능(미래성) 등을 그린벨트제도가 새롭게 감당해 가야 한다.

따라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도 좋지만(실제 결과는 다르지만), 모든 완화조치는 종합적인 그린벨트 이용계획의 청사진내에서 그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취해져야 한다.

그러한 조건을 갖추기 전에는 그린벨트에 대해 어떠한 완화조치도 있어선 안된다. 이번의 그린벨트 완화조치도 마찬가지이다. 그린벨트를 포함한 환경일반에 관한 국가철학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세워져야 할 때인 것 같다. **문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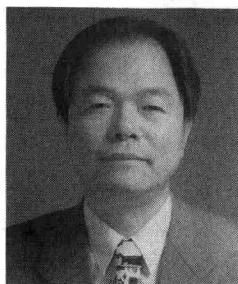
근본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법」 제21조 1항에 의거 도입된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및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데 그 지정의 목적을 두었다.

같은 해 7월 30일 서울을 중심으로, 71년 4월 18일 여천지역을 마지막으로 8차에 걸쳐 14개 권역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는 전국토 면적의 약 5.4%인 5,397.1km²이며 전국 10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내에 편재해 있다.

정부가 93년 5월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린벨트내에 약 9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토지용도별로는 임야 약 61.3%, 농경지 약 24.5%, 대지 약 2.1%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비율은 약 4 대 1로 나타나 있다.

한편 건축물은 주거용과 농림수산용·기타의 비율이 약 7 대 3이며 20호 이상인 취락이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내 면적 비율은 약 3.9% 수준



김태복
중부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으로 그린벨트내 토지 중 약 1,283km²의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등으로 중복지정되어 있다.

당초 도입목적 이루지 못한 그린벨트 제도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의 중요한 문제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로, 지정 당시 취락지역이 배제되지 않았고,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 등이 1,093필지였던 것으로 미루어 충분한 사전준비와 현장조사 및 검증이 없이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현행 「도시계획법」의 운용은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지침 등의 시달을 통해 사실상 이루어져 왔으므로 법률체계상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행정부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

셋째로, 그린벨트로 지정된 후 그 운용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행사해 왔고 지역에 따른 인구 및 도시기능 등의 변동에 적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린벨트내의 가용토지는 두고 그린벨트 외의 자연녹지를 무분별하게 훼손시키는 등 비환경친화적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넷째로, 그린벨트내 주민과 생산업체 등의 무기한적인 희생에 대한 대책 결여와 소극적 방치주의로 일관된 관리운영의 모순을 들 수 있다.

다섯째로, 그린벨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책임지고 용단을 내릴 대통령 또는 관계장관이 없었다는 점이다.

여섯째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범주에서 볼 때 그린벨트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이 불가능하여 유기적인 지역상호간의 교류가 단절되고 있

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접근 없는 원화조치로는 안된다

96년말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그린벨트내 생활불편해소 대책은 그린벨트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 환경 훼손 최소화, 부동산 투기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 자녀분가용 주택 증·개축 허용, 생활편익시설의 확충, 각종 조세부담의 경감,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방침은 개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보다는 필요한 조치이고 부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린벨트 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기본골격 유지'라는 원칙으로 차단해 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그린벨트내 생활불편해소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정부 여당이 제시한 수준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일부에서는 개선대책이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환경·시민단체 및 일부 언론기관 등에서는 제도의 완화에 강력히 반발하여 당장이라도 환경이 파괴되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될 것 같은 주장을 하는가 하면, 민원해소를 겨냥한 땀질처방 및 선심용 제안이라고 일축하는 견해도 있다.

미래지향적인 예방정책을 제시해 나가야 할 정부가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린벨트 제도에 관한 확실한 비전과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원

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울러 환경·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환경파괴 우려는, 그린벨트 완화는 곧 환경파괴 및 부동산투기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린벨트지역이 전부 녹지가 아니고 약 40%에 가

**그린벨트의 완화는 곧
환경파괴 및 부동산투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고정관념일 뿐이다.
그린벨트지역이 전부 녹지가 아니고,
국민경제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약 40%에 가까운 토지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까운 토지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만 국민경제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생활편익시설을 지정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만 국한한 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마련된 것인지 묻고 싶다. 절대적 구속력이 없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일부의 국고지원 수준으로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그린벨트 제도 문제는 단순히 구역내 주민과 생산업체 등에 국한된 문

제가 아니라 국민전체가 당면한 과제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필자는 그린벨트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을 표방한 그린벨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식하는가.

둘째, 그린벨트는 결코 전부 녹지가 아니며 그동안 대규모의 녹지훼손은 공공기관이 주도해 왔고, 61.3%의 녹지는 지역주민 등이 보전 의지를 표명하는데도 언론기관과 시민환경단체가 여론을 오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전국 101개 기초地自體 중 상당수가 都·農 통합 등의 지역요인과 과다·불합리하게 지정된 그린벨트로 인해 사실상 지방자치행정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넷째,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그린벨트내의 증축 허용과 부분적 공공시설 확충이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며, 또한 지역 주민에게 그럴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가.

다섯째, OECD 가입국으로서 세계가 지구촌 주민이 되는 현실에서 아직도 그린벨트의 주민을 원주민·외지인으로 구분하고 있는 정부의 전근대적인 고정관념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여섯째, 구역내 주민과 생산업체, 토지 등 재산권 소유자의 권익은 자

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의거 보장되어야 하고, 지정전 생산업체 등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보존 가치가 없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곧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

일곱째,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 선거 등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린벨트의 근본적 제도개선보다는 이 문제를 단회적·정치적인 공약이나 구호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덟째, 전시효과 및 실적 위주의 수없는 감사로 인해 행정공백과 지역주민·생산업체·담당공무원을 전과자로 양산해 온 그린벨트 제도의 중앙집권적 운용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아홉째, 위헌소지가 충분한 「도시계획법」 21조를 포함한 관련법률의 개정과 시행령·시행규칙·행정지침 등의 월권적·행정편의주의적 운용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현실적으로 보상에 관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가.

열째, 그린벨트 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토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앞장설 용의는 없는가.

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필자가 속한 한국토지행정학회는 지난 96년 8월에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주민, 그린벨트 인접주민,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공무원 등 7,563

명, 영국 그린벨트 주민 434명, 한·영 전문가집단 21명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

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되 중앙정부가 지정·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의 용도 및 지目に 따라 일정한 수준까지 확대 해제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이때 영국에서처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되 중앙정부가 지정·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그린벨트 지정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으로는 가칭 '그린벨트제도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영국식 조정방식으로 지자체의 계획수립 과정을 거쳐 지역적 합의를 이룬 다음 중앙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선택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행위제한의 완화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을 위해 토지의 용도 및 지目に 따라 일정한 수준까지 확대 허용하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시설이나 편익시설이 공급되어야 한다.

넷째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의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강구되어야 하며, 국민의 일체감 형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재원 확보방안 또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그린벨트의 감독과 관련지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그린벨트 담당조사관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여섯째, 향후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그린벨트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린벨트 제도가 영국처럼 전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전국 10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都·農 통합이 이루어진 지역도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을 통해 현행 그린벨트 제도가 근본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특히 그린벨트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명백하게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린벨트내의 주민은 물론 지정 전부터 허가 또는 차후 조건부허가를 받은 생산업체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제도의 도입이 지정 당시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제도개선 역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국회를 통하여 대통령 또는 관계장관에 의해 소신 있게 단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



경제정책의 의사결정 능력



김유배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는 최근 대외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수입이 늘어나 국제수지적자가 지난 88년 140억달러의 흑자를 보인 이후 계속 악화, 작년말 20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구조적 침체국면에 빠져 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개정노동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투쟁과 총파업에 따른 '政'과 '勞'의 정면 충돌이 한국경제에 어두움을 더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앓고 있는 경제병에 대해 『조선일보』(96년 12월 31일字)가 20명의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진단 결과는 '고비용-저효율'의 경제조로증으로 판명되었다. 이들이 진단한 10대 경제병은 ①구조적 불황병 ②인플레 기대병 ③만성 적자병 ④팽창 중독증 ⑤외채병 ⑥규제최고주의 ⑦투기성 거품경제 ⑧고물가 증후군 ⑨기업의 해외 탈출 증후군 ⑩위기 불감증 등으로 정리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이러한 증상은 통상마찰 등 무역환경의 악화로 인한 대외경제조건의 변화에도 기인하지만,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환과정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과 정부의 정책대응 능력이 부족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잃어버린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 있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울러 정부의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은 어제오늘에 비롯된 문제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가 곧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만 되풀이하여 왔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만 믿고 소비자들은 과소비에 흥청 대고 기업은 위기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였으며 투자한 외국인들은 크게 실망하고 한국을 떠나고 있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뒤늦게나마 최근 경제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은 다행이나 총파업사태에 직면해서 노사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여건의 조성 및 이 위기상황을 풀어갈 정치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유감이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은 첫째,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상의 인식격차 확대 둘째, 정책운용의 불투명성과 비일관성 셋째, 사회구성원의 이해에 미치는 정책결정의 영향을 간과한 점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정부 정책대응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올바른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제전문가들의 진단과 정치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격차를 좁히는 일이다.

경제전문가들의 진단 및 처방은 정치인들 또는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서 종종 무시되거나 수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적 처방을 인식하는 시점과 실제 정책의 시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사이의 인식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경제전문가 자신이 정책의 제안에 있어 순수한 경제적 논리에만 지나치게 의존한다거나, 정치인들이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하든지 인식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수용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가 그의 「國富論」에서 자유무역론을 주장한 것이 1776년이었으나 영국의 수상 피트(Pitt)가 프랑스와 무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이 1786년이었으며 70년 후에야 비로소 자유무역이 태동되었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순수 경제이론면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제전문가들의 자문은 행정 및 입법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에 의해 거부되거나 상당한 수정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포착된 커다란 비경제적 요인을 경제학자들이 간과했거나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이 오류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옳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는 필연적으로 전문가로서 특정 연구에 집중하며 자신들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문제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정치가들은 주어진 상황에 작용하는 모든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에 있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게 된다. 건전한 경제적 사고는 때론 정치적 의미로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가끔 경제전문가들의 경제 개혁안이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무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정책결정자들이 경제문제에 대해 문외한이거나 지나치게 정치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건전한 경제적 사고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능력에 있어 한계성이 노정된다.

둘째,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부의 정책결정 및 규제 집행과정이 명확하면 개인

이나 기업은 보다 더욱 정부의 정책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정부정책의 투명성은 합리적인 예측을 가능케 하고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민간 부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극대화한다. 정부정책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부정책의 의도를 알기 위한 노력을 하느라 낭비와 비효율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가 OECD 가입이 한국경제를 선진국으로 진입시켰다는 자찬을 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은 정책결과의 불확실성을 노정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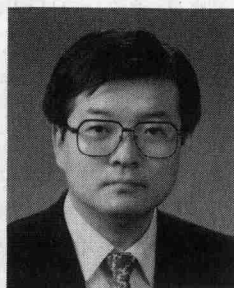
또한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매우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 만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특정지역에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이 돌연한 정책 변경에 의해 투자계획을 포기해야 할 때 입게 되는 손실은 치명적이다. 정부는 문민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공장설립의 완화를 수시로 약속하였지만 아직도 규제는 철벽 같고 공장부지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다. 현대그룹에 제철소를 허가한다고 약속했다가 하루아침에 이를 취소하는 사례에서 일관성이 없는 정부정책의 폐해를 엿볼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정책결정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의사결정이 부주의하거나 낭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그 유효성이 가끔 시간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이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장단점을 미리 예측하는 등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 선진국가의 정부는 특정 정책결정이 사회의 열위계층(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저소득자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아울러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나 노동의 소외문제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생산력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개발 능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동법 개정에 대한 엄밀한 영향평가도 없이 정책을 줄속으로 실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최근의 경제적 파장은 매우 치명적이며, 이러한 정책의 의사결정이야말로 정부정책실패의 대표적 예이다. **남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뇌졸중



정진상
삼성의료원 신경과 전문의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뇌를 손상시키고 신경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장애를 유발하고 사망까지도 이르게 하는 무서운 성인질환이다. 또한 뇌졸중은 어느 나라에서건 주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 성인의 신체 장애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얼마만큼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병 자체에 대하여도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많다.

국내외에서 시행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매년 최소한 8만명 정도의 뇌졸중 환자가 새로 발생한다. 그중 30%의 환자는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하고 나머지 생존자 대부분도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며 자주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상당수의 뇌졸중 환자들(20%)이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이며 가정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시기인 55세 이전에 발병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40~50대의 사망률을 세계최고로 높여 놓는 데

크게 기여(?)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뇌졸중이다.

그러나 뇌졸중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다. 새로운 뇌졸중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 주의하고 예방하였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졸중은 고혈압환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고혈압만 없으면 뇌졸중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사실이다. 실제 뇌졸중은 많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마다 뇌졸중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음주와 흡연, 당뇨, 심장질환 및 혈관질환 등이 바로 뇌졸중 발생요인이다.

그렇다면 건강해 보이는 우리들 누구나 다 건강에 주의하지 않으면 뇌졸중환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뇌졸중은 치료될 수 없

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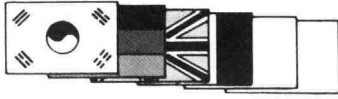
이런 생각은 10여년전까지만 해도 맞는 말이었지만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뇌졸중 발생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고 장애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선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뇌졸중 위험인자인 고혈압, 음주와 흡연, 당뇨, 심장질환 및 혈관질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일단 뇌졸중이 생겼을 때의 치료방법으로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 혈압조절로 재출혈을 예방하고 운동 및 약물요법을 지속해야 하며, 정기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의 용량조절, 꾸준한 외래 통원치료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험인자인 당뇨·고혈압·흡연을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육의 경직을 막아주는 운동요법과 물리치료를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뇌졸중 마비상태를 회복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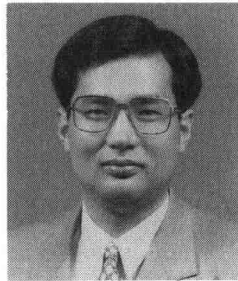


OECD의 反부패 및 뇌물방지 논의



지 금 국제사회에서는 부패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막고 보다 투명한 세계경제질서 조성을 위해서 부패방지노력을 국제적으로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패'란 기업이 국제상거래에서 거래의 성사를 위해서 외국공무원에게 금전이나 금품을 공여하는 행위, 즉 뇌물공여를 가리킨다. 부패는 민주정부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범죄행위를 조장하며, 공공자산의 낭비를 유발하고 경제발전을 제한할 뿐 아니라 무역을 왜곡시킨다. 국제거래가 경쟁가격과 품질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경쟁적인 뇌물에 의해 결정된다면, 세계각국이 관세를 내리고 서비스나 보조금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박강호
駐OECD대한민국대표부 1등서기관

여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주요 국제거래의 상당부분이 뇌물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는 비경제적인 현실을 개선하고, UR 협상으로 이룩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뇌물공여 행위를 방지하려는 경제적 이유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치적으로는 90년대 초반 이후 많은 국가에서 부패문제는 정부전복의 계

기가 되어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방치될 경우 민주정부와 시장경제의 전세계적 확산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것도 논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논의의 배경은 「해외부패관행법」(The Foreign Corruption Practice Act:1977)을 갖고 있는 미국의 적극적인 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부패관행법」은 미국 기업의 외국관리에 대한 뇌물공여를 불법화하는 법률인데, 미국의 기업은 이 법률 때문에 이러한 법률이 없는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개도국 시장에서의 정부조달 등 국제입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년간(94~95년) 개도국의 부패행위로 인해 100건

미국의 적극적인 제의로 뇌물방지 논의 구체화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교역의 주요 참여자이면서 무역체제를 보호·유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OECD 회원국들은 국제상거래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OECD 뇌물방지 논의는 우선 국제상거래에서 뇌물공

의 거래에서 약 45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상거래에서 뇌물방지 권고'를 채택

OECD는 1989년 미국의 주도로 국제상거래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고, 90년에 OECD 이사회는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에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불법적 지불행위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OECD는 부패방지 문제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시켰고, 94년 이사회에서 '국제상거래에서 뇌물방지 권고(Recommendation on Bribery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를 채택하였다.

동 권고는 외국정부관리에 대한 뇌물공여를 억제하는 최초의 국제합의로서 회원국들이 국제상거래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동 권고는 국제상거래 뇌물방지작업단(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을 설치하여 뇌물의 손금처리문제 등을 검토하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94년 10월 국제상거래 뇌물방지작업단이 설치되어 부패방지를 위한 형사처벌 문제 외에 조세, 회계, 감사, 공공구매, 민·형법 등 관련 분야에 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96년 4월 OECD 이사회가 '외국정부관리에 대한 뇌물공여의 손금처리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Tax Deductibility of Bribery to Foreign Public Officials)'를 채택하게 됨으로써 중요한 단계를 넘게 되었는데, 동 권고는 뇌물의 손금처리를 합법화하고 있는 회원국들이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법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96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외국관리에 대

OECD 뇌물방지 논의는 우선 국제상거래에서 뇌물공여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주요 국제거래의 상당부분이 뇌물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는 비경제적인 현실을 개선하고, UR 협상으로 이룩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 뇌물공여를 형사처벌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97년 이사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97년 이사회에서 구체적 이행방안 채택 예정

OECD 뇌물방지 논의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뇌물에 대한 손금산입 불인정, 뇌물공여행위의 형사처벌, 기업 회계기준 강화 그리고 공공구매시 뇌물제공기업에 대한 제

재문제이다.

외국관리에게 제공되는 뇌물에 대한 손금산입 불인정

대부분의 OECD 유럽회원국들은 국내관리에 대한 뇌물과는 다르게 외국관리에 대한 뇌물은 손금산입(Tax Deductibility)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기업의 뇌물제공 행위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미국·영국·일본·포르투갈 등은 손금산입 허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기타국가들은 뇌물이 수령자 국가의 일반 商관습이며 뇌물수령인이 확인될 경우 등 일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금지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 분야는 OECD 뇌물방지 논의 중 가장 먼저 합의에 도달한 분야로서 96년 4월 OECD 이사회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손금처리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여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회원국들에게 동 손금산입을 부인할 의도로 이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외국관리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 형사처벌

뇌물공여 행위의 형사처벌문제는 OECD 뇌물방지작업단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다. 대부

분의 OECD 회원국들은 국내 정부관리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외국 정부관리에 대한 뇌물공여는 형사처벌하고 있지 않다.

뇌물방지작업단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의 형사처벌이 뇌물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주목하고 형사처벌의 이행방법 확인에 논의를 집중한 결과 다음 네 가지의 국내적 이행방법을 확인하였다. 네 가지 국내적 이행방법이란 별도입법을 통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형사범죄화(미국의 해외부패관행법), 일반적인 반부패법의 적용(영국의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일반 뇌물죄를 외국공무원에 대해서도 확장적용, 그리고 상기 세 가지 방식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불공정 거래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국내적 이행방법보다는 각국의 통일적 이행이 가능한 형사처벌을 위해 국제적 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있어 상기 국내적 이행과 더불어 국제협정의 체결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뇌물방지작업단은 형사처벌 이행방법과 관련하여 전문가 소그룹회의를 구성하여 형사처벌 구성요건, 관할권 등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 소그룹회의는 뇌물의 정의 속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 ①공무원에 이익이 되는 부당한 금전지불 또는 혜택의 약속 또는 제공 ②비즈니스를 얻거나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 ③공무원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또는 공무원의 직무위반을 유도할 목적) ④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회원국들 사이에 대체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 소그룹회의는 뇌물수령인인 외국공무원의 정의와 관련, 객관적 정의인 '임명되었거나 선출된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입법·행정·사법부에 속한 직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기능적 정의인 '외국에서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제시하였으나 작업단 회의의 논의과정에서 객관적 정의에 '공공기능 수행'이라는 기능적 요소를 보충하는 혼합된 정의가 형성되고 있다.

이 밖에 뇌물공여죄에도 미수·공모·공범의 일반 형법 개념이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있고, 뇌물금액의 다과, 현지 관습인식에 상관없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는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 영토와의 연계로 충분한 영토관할권을 적용해야 하고, 국내공무원에 대한 뇌물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한 처벌이 필요하고, 기소재량에 대한 각국의 법 체계를 인정하되 남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 회계기준 강화

이 분야는 적절한 회계기록이 유지되어 뇌물제공에 대한 조사 및 감사가 가능토록 한다는 94년 뇌물방지 권고에 근거한 논의로 96년 4월 외국공무원에 대한 손금산입 금지 합의 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업 회계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뇌물방지작업단은 적절한 회계기준, 독립적인 외부감사, 내부경영통제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첫째, 적절한 회계기준을 위하여 정부가 모든 회사와 그들의 지사에게 입출금 관련내용의 확인을 포함한 입출금된 모든 금액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회사는 장부의 거래구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둘째,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정부와 회계단체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적절한 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정부가 불법뇌물 행위를 발견한 감사에게 동 발견을 경영진과 기업 내부통제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셋째, 내부경영통제를 위해 정부는 회사의 적절한 내부통제의 발전과 채택을 권장하고, 회사로 하여금 상부의 압력이나 지시로부터 직업기준 및 윤리를 지키려는 자를 보호하는 연락채널을 제공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공공구매시 뇌물제공기업에 대한 제재

뇌물제공 기업에 대한 blacklisting을 통해 일정기간 동 기업의 입찰을 제한하거나 whitelisting을 통해 입찰시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whitelisting문제는 그 적용의 어려움과 남용 가능성 우려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입찰제한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찰제한을 위해서는 사전 형사소추가 필요함을 감안, 동 요건의 완

화가능성 및 국내적 제재의 국제적 확대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 제재를 외국공무원에 대한 자국의 뇌물제공기업에 확대하거나 해외에서 뇌물제공으로 소추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국내적으로 입찰 제한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입찰제한의 사전요건과 관련, 일부 회원국들은 형사소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일부국가들은 뇌물제공의 증거가 합리적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형사소추 없이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뇌물방지 위해 '형사처벌에 관한 국제협정' 필요성 제기

현재 부패방지를 위한 논의는 OECD 외에 유엔, WTO, World Bank, OAS, EU 등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OECD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OECD는 보다 심도있는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다른 국제기구들의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ECD 논의의 강점은 여타 기구에서의 논의와 달리 국제상거래에서 제공되는 뇌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세계 주요 교역국의 모임이라는 성격상 회원국 기업이 주요 뇌물제공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OECD에서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OECD 논의결과 외국관리에 대한 뇌물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OECD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형성됨에 따라 OECD는 다음 단계 목표인 형사처벌 문제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형사처벌 문제는 각국 법 체계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기존 법규의 적극적 해석 혹은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하여 합의에 이를

우리나라가 OECD의 뇌물방지 권고를 수용하려면 형사·조세·정부조달 등 각 분야에 있어 일부 법과 제도의 정비 필요하다. 특히 형사처벌의 이행방법과 기업 회계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국내제도 현황을 기반으로 민간 경제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조속 정립해서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처벌에 관한 국제협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비추어 뇌물방지작업단은 엄격한 권고 채택 후 국내법을 이에 따라 개정하고 이를 감시하는 방식과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각료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OECD는 뇌물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기업 회계기준 강화를 위해 작업중이며, 적절한 회계기준, 독립적인 외부감사, 내부경영통제 발전

등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합의수준은 회계 및 감사의 고유기능과 뇌물지출 발견이라는 새로이 요구되는 기능 사이에서 적절히 절충되는 선에서 합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공구매 분야는 WTO·세계은행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을 감안, OECD에서의 논의의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OECD에서의 전문적 토의, 유엔에서의 국제협약작성 논의, WTO에서의 공공구매 관련 반부패 논의 등을 통해 동시적으로 강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로서도 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OECD의 뇌물방지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조세·정부조달 등 각 분야에 있어 일부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형사처벌의 이행방법과 기업 회계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국내제도 현황을 기반으로 민간 경제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조속 정립해서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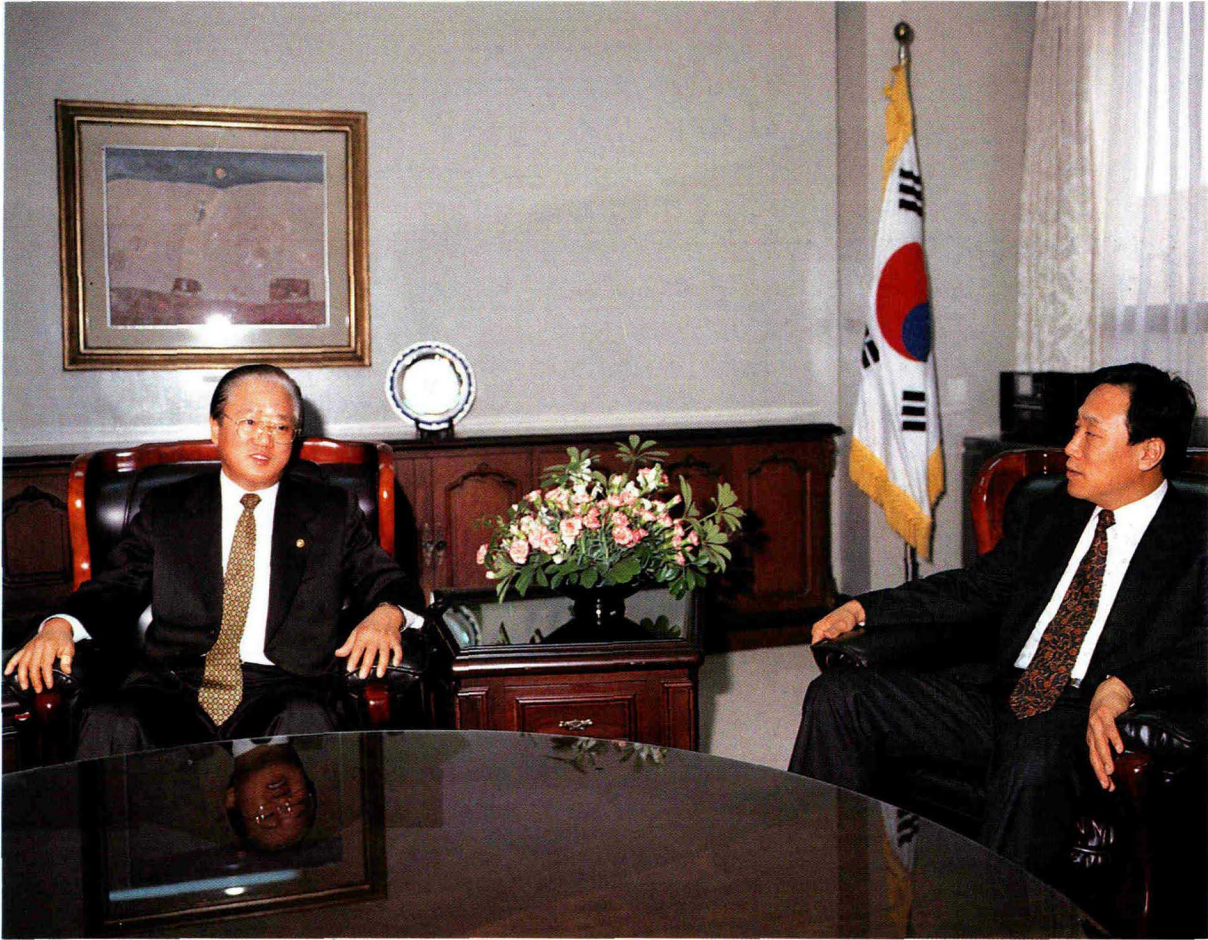
그리고 OECD 뇌물방지 권고의 수락 및 이에 따른 법과 제도의 개정이 우리 해외진출기업의 활동이나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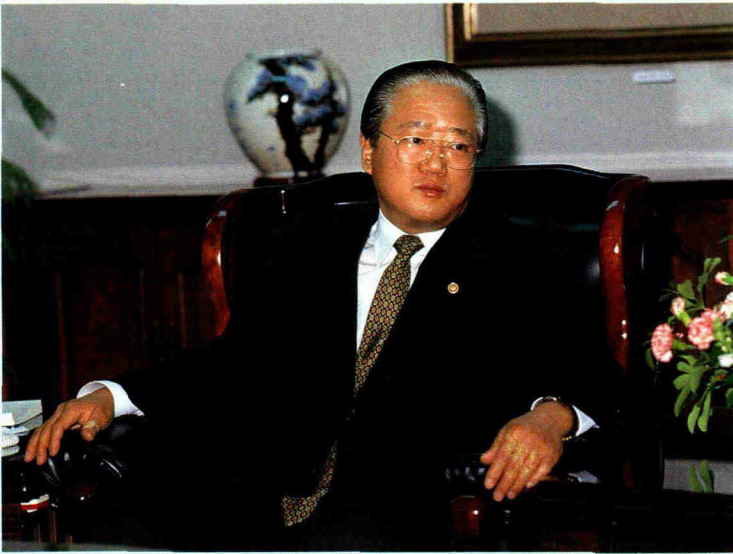
안 광 구

통상산업부장관

대담 : 김광두/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때 : 97년 1월 8일 • 곳 : 통상산업부장관 집무실





우리 업계의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난해 여섯 차례에 걸쳐 마련한 「무역수지 개선 및 수출산업의 경쟁력제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우선 통상산업부장관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기침체·수출부진 등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는 통상산업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승진기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중요한 시기에 장관직을 맡게 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지요.

▲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습니다만, 국내의 경제여건이 어려운 때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짐을 새삼 느낍니다.

앞으로 통상산업부는 기업과 관련단체, 학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출업계의 사기진작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기술향상, 생산요소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에너지소비 절약을 강력히 추진하여 에너지 수입부

담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난해 우리 경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무역수지적자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수출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3.8%가 증가한 1,298억달러, 수입은 11.2% 증가한 1,502억달러로, 무역수지적자는 204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출부진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반도체·석유화학·철강제품 등 주력 수출품목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95년 7월부터 지속된 엔貨 약세의 지속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미국·일본·영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증가세 둔화 등 대외적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높은 금리·임금·지가·물가·물류비와 낮은 생산성으로 요약되는 '고비용-저효율'의 산업구조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 대내적 요인도 수출부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제품의 단가는 0.7% 하락한 반면, 수출제품의 단가는 국제 반도체가격의 급락 등으로 11.5% 하락하여 수출물량이 18.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전년대비 3.8% 증가에 그쳤습니다.

—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 역시 경상수지 개선이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올해 수출입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업계의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먼저 올해 수출입 여건을 살펴보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 및 교역신장세는 전반적으로 호전될 것이나 미국·일본·개도국 등 우리의 주력시장의 수출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은 다소 안정될 것이나 적정성장 유지를 위한 수입증가와 도시가스 보급기구수의 증대 등으로 인한 에너지수입 수요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올해에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무역적자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업계의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지난해 여섯 차례에 걸쳐서 마련한 「무역수지 개선 및 수출산업의 경쟁력제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출업계의 단기적인 애로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과감하게 이를 해소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출보험기금의 정부출연금을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어난 1,800억원으로, 산업설비금융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5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한국상품구매단 유치를 확대하는 등 해외 마케팅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통상산업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통상산업부는 취약한 우리의 산업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에 몇가지 중요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의 추진입니다. 이 계획은 인력의 탄력적인 공급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외 고급 기술인력이 결집하여 신기술 혁신의 거점이 되는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험기업 육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소를 활용하여 '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입니다. 이 계획은 국산화

가 시급한 기술과제 및 산업현장의 핵심 기술을 1~3년의 단기간에 개발하는 '공통핵심기술 개발사업', 자동차·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핵심기술을 5년 내외의 기간에 일괄 개발하는 '중기거점기술 개발사업', 21세기 G7 진입을 위하여 차세대자동차 등 첨단기술을 10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산업디자인 발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 및 디자인개발을 위한 자금·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의장법」·「저작권법」 등 디자인 보호 관련 법령을 국제수준으로 보완하며, 산업디자인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업디자인 발전의 구심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생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금년에는 6천



대답자 김광두 서강대 교수

1947年生. 70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76년 미국 하와이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81년부터 서강대학교 교수로 후학을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통화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연구」, 「한국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재정립방향」, *Shifting Strategies from Cost Advantages to Superior Value* 등이 있다.

여개 업체에 2조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제조업 외에 제조업겸업 유통업,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등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술개발지원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 3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직업훈련 지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 및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산업연수생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



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통상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WTO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무역과 노동·환경·경쟁정책 등 새로운 무역규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나라가 29번째로 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상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그 시장의 특성에 부합되는 진출전략을 개발하고, 교역상대국의 통상제도 및 관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는 등 수출증대를 위한 통상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우회덤핑방지, 통일원산지 규정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투자 및 경쟁정책 등 새로운 통상의제 논의에 이해관계국과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하며, OECD 정회원국으로서 무역·공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 정책협조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제도를 선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통상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 제도나 관행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나가는 한편, 주요국과의 첨단기술 공동개발, 상호투자 확대 등 산업·기술 협력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경채**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그 시장의 특성에 부합되는 진출전략을 개발하고, 교역상대국의 통상제도 및 관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는 등 수출증대를 위한 통상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 확대, 공동상표 개발 촉진,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관 건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입지상의 어려움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과소비는 무역수지적자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의 경우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과소비의 원인이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에너지정책을 총지휘하고 있는 통상산업부장관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 90년대 들어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연평균 10%의 엄청난 에너지소비 증가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소비 증가는 우리나라가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과도한 승용차 운행 등 국민들의 생활양태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에너지소비 절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가격은 소비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토록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승용차 운행 수요억제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절약은 정책개발도 중요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을 이루는 자세로 온 국민이 실천하여야만 성과가 있으므로 對국민 홍보사업의 강화와 함께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사업'도 강력

최 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2%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총량적인 면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96년부터 수출부진 등으로 제품의 재고가 증가하고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등 경기하강 국면이 계속되면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원감축을 추진함에 따라 개별

재배치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고용안정 노력을 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둘째, 기업의 고용조정을 원활히 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확충한다.

셋째, 실직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적극 시행

기업 차원에서 다소의 고용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 마련

현재 인원감축 방식은 노사간 마찰이 우려되는 정리해고보다는 주로 명예퇴직제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40·50대의 사무관리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하강국면이 계속되어 불황극복의 일환으로 기업의 고용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올해의 실업률이 2.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근로자의 고용불안 현상이 확산될 우려가 크고, 고용불안은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고용조정을 통한 경제의 활력회복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안정대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기업에서 집단감원을 시행하기 이전에 인력의

을 활성화하여 신속한 재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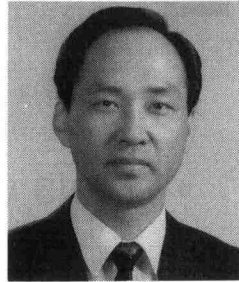
기업의 자체 고용안정대책 마련 유도

기업에서 획일적인 인원감축과 같은 단기대책은 임원 및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고용조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유인력

을 성장 분야에 흡수하거나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채용 감축·자연감원·잔업시간 단축·일시휴직 등에 의한 자체 고용안정 노력이 요청된다. 근로자도 노사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하에 생산성 향상 등 경영합리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기업의 고용문제에 대해 노사가 공동인식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지시키고, 노사교육·사업주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진희
노동부 고용정책과장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성실히 협의토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사용자가 해고 60일 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문서 및 기타 방법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대비하고 노사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자를 우선 고용토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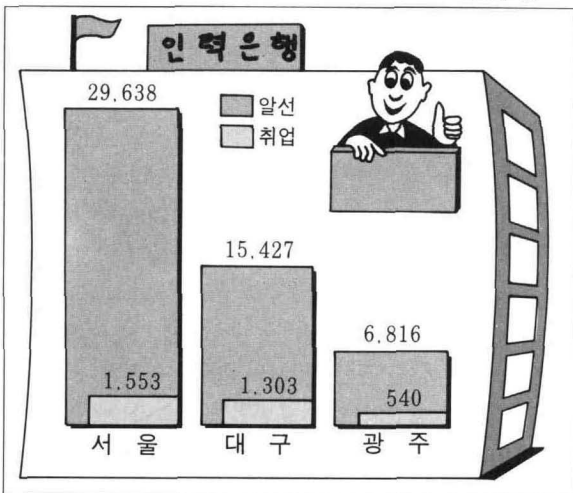
앞으로 정부는 사용자의 부당한 자의적 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를 행한 사업주를 처벌함은 물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고용안정사업을 확대

현행 고용보험 법령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잉여인력의 해고 대신에 일시휴업·전직훈

〈그림 1〉 인력은행 운영실적(96. 12. 31 현재)

(단위:명)



경기하강국면이 계속되고 불황극복의 일환으로 기업의 고용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올해의 실업률이 2.5%로 전망되는 등 근로자의 고용불안현상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고용조정을 통한 경제의 활력회복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련·인력재배치를 통해서 고용유지 노력을 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에 대하여 휴업수당지원금·인력재배치지원금 및 전직훈련지원금을 지원하는 고용조정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탄광업, 신발제조업 등 5개 업종에 국한되어 결과적으로 고용보험적용 사업체의 대부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현행 고용조정지원제도는 기업의 고용조정을 원활히 하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정책적 기능이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최근 고용사정이 악화된 업종을 고용조정지원 대상업종 및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고시하는 한편, 지정업종이 아닌 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하되, 지정업종 및 지역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직훈련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며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산업구조조정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일차적으로 근로자의 계속고용 내지 실직예방을 지원하고, 실직한 경우에도 빠른 시일내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등 고용조정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직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감원 등



고용조정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를 다수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4분의 1~5분의 1을 1년간 지원하고, 특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취업을 알선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취업시킨 경우에는 단 1명인 경우에도 채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1~5분의 1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직자채용장려금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해 이직할 근로자나 실직한 근로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접 '창업지원강좌'를 설치·운영하거나 각종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교육기관에 근로자를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이직한 근로자나 이직예정인 근로자가 직접 '창업지원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창업교육지원금제도'도 새로이 도입한다.

아울러 고용조정 또는 도산·폐업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훈련기간 동안 임금의 2분의 1~3분의 1과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받는

'고용조정적응훈련 지원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직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

실직자에게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의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실직 후 조속한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훈련 기회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97년부터 시범적으로 훈련바우처(Voucher)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동 제도는 훈련희망자가 노동부로부터 '교육훈련비 교환권(바우처)'을 받아 훈련을 이수한 후 해당하는 만큼 바우처를 훈련기관에 제출하고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수료생으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훈련비를 수령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될 경우 훈련희망자의 훈련이수절차가 단순화되고, 개인별 훈련이수 및 훈련비용 관리가 용이해져 교육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가능하므로 재직시에 이수한 교육훈련

기록은 실직후 구직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로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는 실직자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전액지원하는 한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게는 훈련기간중 생계유지를 위하여 매달 최저임금액의 50%와 가족수당(4인 한도, 1인당 3만원)을 훈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실직자의 훈련수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훈련수당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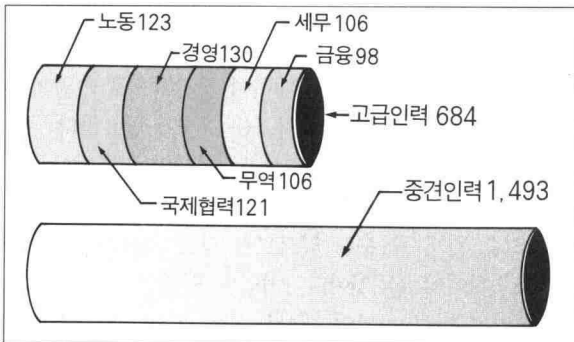
아울러 실직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훈련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지정교육훈련기관(당연지정교육훈련기관 포함)에 개설되어 있는 직무능력향상·개발 과정의 교과과정내용, 교육장소, 교육비 및 일정 등을 모두 수록한 교육훈련기관총람을 발간하여 97년 상반기중에 사업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개설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안내전산망을 1단계로 각 지방노동관서 민원창구(46개소)에 구축하고, 2단계로 역·터미널·고속도로휴게소나 시청·자치단체 등 민원실 공공장소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100여개소)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직업훈련을 원하는 국민이 언제나 손쉽게 관련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정보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실직을 당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어디에 가서,

(그림 2) 고급인력정보센터 구축자 등록현황 (96.7.29~97.1.3)

(단위:명)



註:이 중 재취업자는 113명임.

기업에서 집단감원 이전에 인력의 재배치 등 고용안정 노력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조정 원활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확충하며, 실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과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 신속한 재취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훈련기관·직업안정기관·취업활동방법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업에 따르는 사회적 폐해를 극복하도록 카운슬러요원을 배치하여 사회심리적 치료요법으로 실업자의 사기양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0개소의 산업인력관리공단내 능력개발센터에 '실업자 재취직 및 사회적응 오리엔테이션과정'을 설치·운영하여 훈련희망자에게는 무료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영업을 희망하는 이직자를 위해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능력개발센터' 기능을 보강, 퇴직자를 대상으로 1~2주의 '창업지원스쿨'을 개설하여 실업자가 우선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강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이 개시된 이후 실직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 직업소개·직업훈련 등이 연계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윈스톱시스템으로 즉시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직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위하여 앞으로 각 지방노동관서에 구인개척팀, 전문직업상담팀, 자영업상담창구 등을 운영하여 취업상담·알선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구인개척 및 직업지도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를 조기 재취직시킨 직업안정기관 담당자 등에게는 절감한 실업급여액의 10분의 1 내에서 포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기재취직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96년 12월말 현재 218개소에 구축된 고용정보전산망을 올해중에 78개 시·군·구에 추가연결하는 등 고용정보서비스 제공체제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최첨단의 고용정보자동응답기(ARS)도 서울 등 6대도시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 구인·구직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취업정보지를 활용하거나 지방노동관서 등 공공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컴퓨터에서 수록되어 있는 구인·구직 내용을 조회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 제공방식을 보다 편리하고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나 광범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가정·기업에서도 구인·구직 정보를 스스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설치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종합적인 지역고용정보센터인 서울·대구·광주 인력은행과 퇴직 고급·중견 경력인력의 재취업을 위한 '고급인력정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동시장규모가 큰 지역에 인력은행을 추가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주요공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퇴직 고급인력의 재취업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고령자 및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령자 신규고용비용이 일정비용 이상 증가한 경우 신규고용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 1~4분의 1 또는 일정액을 지원하는 고령자다수고용 장려금제도와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1년 이상 근속후 퇴직한 여성을 5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확대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외국에서는 퇴직 이후에도 퇴직자들의 경험과 능력에 적합한 직종에서 半日 혹은 격일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게 하거나 퇴직 이후에는 승진이나 급여인상에 제한을 두고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퇴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또 재취업이나 창업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수개월간의 유급휴가를 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도 파트타임·계약직·촉탁직·임시직 등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고령자·주부·퇴직자들의 재취업이 용이한 새로운 고용형태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실직자의 생활향상을 지원

정부는 현재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연령, 피보험기간에 따라 30~210일간 실직전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 수강시 2년까지 연장 지급이 가능하며, 고용조정지원 지정업종 및 지역에서 이직한 자로서 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는 60일까지 연장 지급하고 있다.

올 7월 1일부터는 그 적용대상을 현행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4만개소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실업급여가 12만개소의 사업장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임금 및 복지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주거·교육·의료 등 일상생활의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소득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복지시설 확충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재형저축제도 등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며, SOC투자 확대 및 중소기업창업활성화 등을 통한 고용창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 「근로자의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용불안현상은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화된 데 기인하고 있으며, 경제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과감한 구조개선을 통해 시급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충실히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여 고용이 확대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기업도 단기적인 인원감축 등의 방법보다는 사업구조 조정과 인력의 재배치 등 고용안정에 적극 노력하면서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도 현재의 경제현실을 이해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으므로 평소 자신의 능력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이 없다면 근로자가 설 땅이 없는 만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노력에도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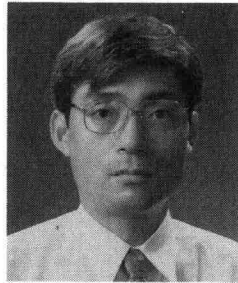
정 부는 96년 6월 14일 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쌀의 생산에서 유통·소득까지를 체계화·종합화하는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는 좋은 기상여건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쌀 농사는 사상 유례 없는 대풍을 이룩함으로써

과하여 안정적인 쌀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제곡물시장도 93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생산국가의 생산감소에 따른 재고감소 등으로 밀·옥수수를 중심으로 가격이 지난해 3월 이후 급등하는 등 공급불안요인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제 쌀 시장의 경우 생산량은 밀·옥수수 다음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약정수매제도 도입

당장 시급한 쌀 수급상의 어려움은 한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자급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앞으로 97~98년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를 통한 충분한 생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쌀 농업인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개편되는 수매제도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윤장배
농림부 식량정책과장

으로 많지만 교역량은 5%(1,800만t) 정도에 불과하여 약간의 수급불안에도 크게 충격을 받는 '얇은 시장'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입맛에 맞는 중·단립종은 특히 교역규모가 200~300만t 수준에 지나지 않아 가격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WTO체제 출범으로 인하여 95년부터 국내 쌀 보조금을 연간 750억원씩 2004년까지 감축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수매가 인상이나 수매량을 늘리는 데 제약이 있으며, 매년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양정여건 변화로 양곡관리제도의 변환 필요

국내의 양정여건의 급변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쌀 자급기반의 유지·확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93년 양정개혁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는 민간 쌀 시장기능에 맞추어 추곡수매 등 정부의 양곡관리에도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먼저 국내 쌀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91년 이후 95년까지 벼 재배면적이 연평균 3만7천ha씩 감소하고 잦은 기상재해로 쌀 생산량이 줄어들며 따라 재고량이 90년도 1,400만석에서 매년 감소되어 96년말에는 170만석에 불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 차원에서 약정수매제도 도입

쌀 자급의 확고한 정부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의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쌀 자급기반 유지를 위하여 적정한 벼 재배면적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우량농지의 보전을 강화하고 비농업용 토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토지공급을 확대하고, 규모화된 쌀 전문

경영체의 지속적인 육성과 생산기반 정비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쌀의 민간유통 활성화를 통하여 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확기와 端境期 간의 계절 진폭을 15% 범위내에서 확대·운용하고 72년 이후 시행해 온 현행 수매제도를 '사전예시에 의한 약정수매제'로 개편하여 농가의 생산의욕을 진작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쌀 생산농가의 규모화 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올해부터 시행하여 고령농가가 안심하고 경영이양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수매가와 수매량을 연초에 예시하고 희망농가에 한해 약정가격으로 수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약정수매제도는 수확기에 가서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는 현행 수매제도와 달리 전년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연초에 이를 예시하고, 예시된 가격으로 3~4월경에 희망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수매기에 약정가격으로 수매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정부와 출하약정을 체결한 생산농가에게는 약정가격의 일정수준을 선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가서 시장에 출하하든지, 정부수매에 응하든지 그 선택여부를 생산농가에 맡겨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선도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정부수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도금에 일정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면 출하약정은 해제되게 된다.

이러한 약정수매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먼저, 연초에 수매가격과 물량을 사전예시하므로 생산농가의 계획적인 영농설계와 추진에 도움을 주고, 영농기에 수매자금의 일부를 선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등의 소득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확기에 정부수매와 시장출하 간에 선택권을 농가에 줌으로써 자율영농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약정수매제는 쌀값 하락 방지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정부가 이와 같이 수매제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게 된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올해부터 '사전예시에 의한 약정수매제'를 도입·시행할 방침이다. 약정수매제는 현행 수매제도와 달리 전년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연초에 수매가와 수매량을 예시하고 예시된 가격으로 3~4월경에 희망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수매기에 약정가격으로 수매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배경은,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WTO체제 출범으로 지난해부터 발효된 국내보조금(AMS) 감축이행계획에 따라 매년 750억원씩 2004년까지 그 규모를 감축해 나가야 하므로 추곡수매를 통한 가격지지와 물량확대에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93년도의 양정개혁 이후 도입된 조곡공매제, 쌀값 계절진폭 확대 등으로 민간시장기능이 크게 활성화되어 최근 산지 쌀값이 정부수매가격에 근접하는 등 유통여건이 변화됨으로써 현행 수매제도로는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 유지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2~3년간의 급격한 벼 재배면적 감소와 연이은 기상재해 등으로 쌀 생산량이 소비수준에 미달하는 등 생산기반이 약화되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인의 생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했던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쌀 수급상황의 변화, WTO체제하의 가격지지계약 등 새로운 양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된 약정수매제는 양곡의 수확기에 홍수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매제도의 기본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이와 같은 약정수매제의 도입·시행을 위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작업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계부처와 농업인의 의견을 감안하여 선도금은 97년산 추곡매입가격의 40% 한도내에서 지급기로 하였고, 수확기에 가서 약정을 파기하고자 하는 농가는 지급받은 선도금 원금에 연 7%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에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장적응성 검증을 통해 시행방안 확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약정수매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제도의 현장적응성 검증을 위한 도상연습 등을 통하여 확정지를 예정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구상하고 있는 약정수매절차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매년 2월경에 약정수매에 관한 계획 예시

먼저, 매년 2월경에 당해연도 약정수매에 대한 계획을 예시하려고 한다. 추곡 매입가격과 매입량은 지금까지의 절차와는 달리 수확기에 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국회에서 미리 동의를 받아 확정된 가격으로 하여 수매약정 체결방법 및 선도금 지급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양곡 매입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등에 관한 요령을 예시할 계획이다.

97년도의 경우 매입가격은 1등급 정곡기준(80kg)으로 할 때 13만7,990원이며, 40kg 조곡으로 할 경우 4만9,730원이다.

그리고 WTO 수매보조금(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범위내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된 97년산 매입가능량은 850만석이며, 이 물량에 대해서는 3월에 시·도별로 전년도 생산량 및 수매실적, 생산계획량 및 농업진흥지역 등을 감안하여 배정할 계획이다. 각 시·도별로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는 리·洞별 수매협의회에서 자체협의를 통해 개별농가별로 97년도 추곡수매량이 할당되게 된다.

이와 같이 각 농가별로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지역단위의 농협에서 약정체결 양식에 따라 수매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약정서에 포함될 내용은 재배품종, 재배면적, 전년도 생산량 및 수매량 등 영농상황과 출하약정물량, 선금지급액 등을 들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하는 기관을 지역농협으로 지정케 하는 이유는, 정부가 120만호에 이르는 쌀 생산농가와 개별적으로 약정을 맺고 선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선도금은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약정체결 농가에 지급

그리고 약정수매제도의 핵심적 내용인 선도금은 매년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약정체결 농가에게 지급할 계획인

데, 97년말 1등급 매입 가격(13만7,990원/80kg)을 기준으로 그 가격의 40% 범위(5만5,200원/80kg)내에서 농가의 희망액을 지급할 것이다.

이 경우 개별농가가 선금을 6개월 가량 사용한다고 볼 때 80kg가마당 3,180원 수준의 소득증가가 예상되어 97년산 수매가 대비 2.3% 정도의 수매가 인상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수확기에 가서 산지 쌀값동향에 따라 정부수매에 응하거나 시중출하를 하든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정부수매에 응하는 경우에는 농가별 수매대금에서 선도금 지급분을 공제하고 정산하게 되며, 약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농가는 선도금 원금에 일정수준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게 되면 그 약정은 해제하게 된다.

그리고 약정을 파기한 농가에게 부과하는 선도금 반납금리는 연 7%로 입법예고하였지만, 수확기 농가의 자율선택권 보장이라는 약정수매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현행 정책금리(5~8%)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약정이행농가와와의 형평성, 시중출하의 선택기준 및 약정수매의 원활한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예측가능한 수매추진을 위하여 약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농가는 11월말까지 그 포기의사를 지역농협에 통보하고 선도금을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개별농가의 의사 확인을 통하여 지역별 약정물량에 대한 수매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는 정부수매에 응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매입량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약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농가는 약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불이행에 상당하는 선도금과 이자를 반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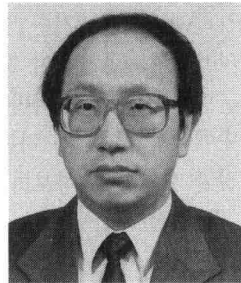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약정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도금 상환기간 연기 및 그 이자에 대해 감면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체**

96년 8월 7일 입법예고된 바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필자註: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줄여 씀) 개정안이 96년 12월 11일 國會 本會議에서 의결됨으로써 제5차 공정거래법 개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올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을 뿐 아니라, WTO체제 출범 이후 각국의 獨寡占的 시장 구조와 反競爭的인 기업관행이 교역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화되고 있는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 즉 경쟁라운드(C.R)에 대비하여 국내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미리 정비하고 국내 공정거래제도

우리 경제를 경쟁촉진형 구조로 - 공정거래법의 개정

이번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93년 4월 1일 도입된 대규모기업집단 系列社間 채무보증제한제도(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는 채무보증금액 제한)의 경과기간이 96년 3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系列社間 상호채무보증을 계속 축소함으로써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상호채무보증 축소 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첫번째 이유였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를 국제적 기준에 일치시킬 필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도 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였다.

우리 경제를 경쟁촉진형 구조로 전환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改正時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법령의 범위를 명료화

개정 공정거래법 올 4월 1일부터 시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개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의 각 부문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를 경쟁촉진형 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고, 進入規制 완화와 기타 경제자유화 조치의 확대에 인하여 야기될 소지가 있는 경제력집중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제고에 부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의 공정

경제 각 부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먼저 법령의 제·改正時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법령의 범위(법령·예규·고시 등)를 명료화하고, 사전협의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경쟁제한적인 법령·처분 등에 대해서는 公正委가 관계행정기관의 長에게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보험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의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신고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으며,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금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이제까지 일정규모(자본금 50억원 또는 자산 200억원) 이상에만 적용되던 것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경쟁제

한적 기업결합에 적용하되, 일정규모(例: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1천억원) 이상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

채무보증한도를 98.3.31까지 자기자본의 100%로 축소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보증을 제외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포괄적인 채무보증의 한도를 98년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의 100%로 축소토록 하되, 상호채무보증의 완전해소 일정은 다음번 법 개정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公正委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需給市場에 대하여 경쟁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행정기관에게 경쟁도입 등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제까지는 系列社間에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취급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만을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산·자금·인력 분야의 부당한 지원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계열분리는 촉진시키되 부당내부거래는 엄격히 규제하려고 하였으나, 용어에 대한 경제계의 異見 등을 고려하여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의 개념은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하여 계열분리는 촉진시키되 부당내부거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도록 하였다.

기업결합심사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免責制度 신설

기업의 인수·합병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결합심사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 분야에 기업결합을 통해 진출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결합하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상장법인에 대한 신고대상주식 취득비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주식취득비율 계산시 이제까지 30대집단 소속회사의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 지분을 합산하던 것을 모든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개정, 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우리 경제를 경쟁촉진형 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고,
進入規制 완화 등으로 인해 심화될 소지가 있는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결합신고를 원칙적으로 사후신고제도로 전환하여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특히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업결합 금지 및 경제력집중억제 규정의 적용을 免脫하기 위한 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하여 법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시정의 강화방안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최초로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免責制度를 도입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만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던 것을, 경쟁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쟁사업자의 人力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公正委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

이제까지는 公正委를 예산·인사·교육훈련 등 한정된 분야에서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추정하던 것을 경쟁정책의 책임 있는 수립·집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정부위원이 되는 것으로 하여 위원장의 國會 本會議 출석·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나누고, 일상적인 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은 '소회의'에서 객관적으로 심사·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였다.

중대한 범위반 행위는

公正委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토록 규정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범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이러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서 시정조치의 이행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였다.

이 외에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와, 범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신속한 정지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 과정에

서 삭제되었다.

이번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에 산재되어 있는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경쟁촉진적인 선진국형의 구조로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최근의 자율화와 규제완화의 진전으로 야기될 소지가 있는 경제력집중의 심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도 갖추어졌다고 생각된다.

물론 당초에 입법예고된 내용이 법 개정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된 것이 있어 다소 아쉬운 감도 없지 않지만, 경쟁촉진이나 경제력집중 억제에 위한 기본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공정거래법의 개정은 우리의 공정거래제도를 21세기를 내다보는 선진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정재**

〈표〉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요약

항 목	종 전	개 정
1. 경쟁제한적 법령·처분협의제도(제63조)	○ 행정기관에서 경쟁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명령·처분·승인시 공정위와 미리 협의	○ 법령 제·개정과 승인·처분 등은 사전협의 토록 하고, 예규·고시는 공정위에 사전통보 ○ 기존 경쟁제한적 법령·처분 등에 대해서 공정위가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시책 마련(제3조)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 등 거래행태 시정에 중점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시장에 대하여 경쟁도입 등의 구조개선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제도(제10조의 2)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	○ 98년 3월까지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축소토록 하고, 완전해소 일정은 차기 법 개정시 제시
4. 자산·자금 관련 부당내부거래 규제(제23조 제1항 제7호)	○ 계열사간 상품·용역 부문의 부당 내부거래만 규제	○ 자산·자금·인력 부문의 부당내부거래행위도 규제대상에 추가 ○ 계열회사만을 차별하지 않고,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균등하게 적용

항 목	종 전	개 정
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 개선 (제7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 금융기관은 제한대상에서 제외 ○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20% 이상 주식취득시 신고의무 부과 ○ 혼합결합 등에 대한 경쟁제한성 추정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 ○ 금융기관도 기업결합 심사 및 금지대상에 포함 ○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신고대상 주식취득비율을 15%로 하향조정 ○ 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 진출시 결합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경우에 경쟁제한성을 추정
6. 재벌그룹의 계열분리 촉진(제14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분리를 엄격하게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집단의 분리를 촉진하면서 부당지원행위(내부거래)는 엄격히 규제
7. 탈법행위 규제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법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만 있음(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제22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기준(제23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위원회 고시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10.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7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계속 유지 ○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해야 한다는 조항과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11. 공정위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를 예산·인사·교육훈련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고 규정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정부위원으로 규정
12. 위원회 운영개선 (제37조의 2, 제37조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안건은 위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모두 처리 ○ 비상임위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회의를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고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에서 처리토록 함. ○ 소회의 운영을 위해 비상임위원을 4명으로 증원
13. 이의신청시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제도의 집행정지 제도 (제53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이의신청을 해도 시정조치는 이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이행시 이의신청 사업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가능

지난 80년대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도시가스는 이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의 필수연료로 자리잡게 되었다. 국민소득의 증가 및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사용이 편리하고 깨끗한 고급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도 점차 증대되어 왔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가스의 보급은 급속히 확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

략해 왔으며, 96년 8월에는 그간의 대책을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도시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은 현재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와 소매사업자인 일반도시가스회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입을 담당하며, 87년부터

「도시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추진

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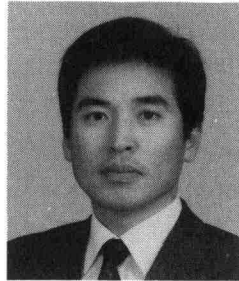
가스는 사용상 편리하고 깨끗한 연료로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종래의 에너지정책은 수요증가에 대응한 안정적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21세기 선진국 도약을 앞두고 있고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이한 지금에는 국민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그중에서도 가스사고를 예방하여 국민들이 가스에 대하여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도시가스 소비 급증에 따라 가스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

정부는 지난 2~3년간 발생한 일련의 대형가스사고를 계기로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 법령 정비,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도시가스안전관리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



김창로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장

수도권 7개 도시가스회사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하여, 96년 11월 현재 전국 15개 도시가스회사를 대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일반도시가스회사는 96년 11월 현재 총 32개로 이 중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LPG를 공급하는 회사가 각각 15개로 총 30개 회사이며, 2개 회사는 현재 건설중이다.

도시가스사업의 성장추세는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과 각종 지원정책에 따라 10년 만에 매출액 기준으로

약 35배의 급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80년대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는 국민소득과 환경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급속히 보급되어 왔다. 95년의 공급량은 53억2,700㎥로서 공급초기인 85년의 8천만 ㎥에 비해 약 67배나 성장하였고, 수용가 수도 95년말 현재 434만7천가구로서 10년전인 38만가구에 비해 11배 넘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6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용 LNG의 수요는 95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0.9%의 성장을 기록하고, 특히 가스공사의 전국배관망이 거의 완성

되는 95~2000년 사이에는 연평균 18.9%라는 큰 폭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천연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천연가스 수요의 상당부분을 PNG(Pipeline Natural Gas)로 전환하여 공급토록 하며, 해외 가스전(gas田)의 개발단계부터 국내기업을 참여시켜 천연가스 도입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99년까지의 LNG 수요는 이미 계약된 가스전에서 확보토록 하고, 2000년 이후의 부족물량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오만·카타르·캐나다 등과의 프로젝트를 비교·분석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의 소비증가와 함께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시가스 소비는 92년 170만7천t에서 95년 430만3천t으로 2.5배 증가한 반면 사고건수는 92년 22건에서 95년 264건으로 12배나 늘어났다.

물론 이러한 사고증가는 최근의 대형가스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신고의식이 높아져 종전에 사고통계에서 누락되어 왔던 사소한 사고까지도 집계된 데도 그 이유가 있다. 다만, 96년 들어서는 사고증가 추세가 누그러져 96년 1~11월 기간중에는 전년동기 253건보다 36.0%가 줄어든 162건이 발생했다.

96년 1~11월 기간중 도시가스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31.5%,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가 38.9%, 불량제품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오던 각종 안전관리대책의 미비점을 보완, 「도시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작년 8월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은 시설 및 기기의 안전성 향상방안,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교육 및 홍보의 강화방안, 도시가스회사의 경영효율 향상방안 등 다각적인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최근 들어 취급부주의 중 타공사시 가스배관 손상으로 인한 누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타공사로 인한 사고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상의 가스배관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해서 발생하고 있어 각종 공사시공자 및 굴착담당자 등 관련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 확보가 기본목표

지난 90년대초까지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특히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공급확대 위주의 시책을 추진해온 관계로 과거에 설치되었던 시설과 기기의 노후,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소홀, 도시가스회사 임·직원, 사용자 및 타공사 시행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의 안정공급 위주의 양적 확대정책 일변도에서 탈피, 안정공급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도시가스정책의 기본으로 설정·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스안전관리제도를 외국의 예와 비교해 보면,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도하는 타율안전관리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가의 경우에 규제법령에서는 주로 행정적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술기준은 민간단체의 규격 등 통일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보험회사와 사업자·민간단체 등이 주도하

〈표〉 도시가스사업 성장추이

	85년	95년	증가율
• 회사수	15	32	2.1
• 공급량(백만m³)	80	5,327	66.6
• 수용가수(천)	380	4,347	11.4
수도권(보급률)	312(8.8)	3,097(48.5)	9.9
지방(보급률)	68(3.4)	1,250(27.5)	18.4
• 수용가당 사용량(m³/년)	200	1,226	6.1
• 매출액(억원)	438	15,512	35.4
수도권	296	10,743	36.3
• 사고건수	3(87년)	264	88.0

자료: 도시가스협회

는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의한 자율안전관리체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자율안전관리체제는 가스 사용의 증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안전확보에도 한계를 가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의 자율안전관리체제는 오랜 가스사용의 역사와 함께 확산되어 현재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시설의 안전성이나 안전의식면에서 지속적인 보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자율안전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前단계로서 주요시설의 안전성과 사업자·사용자의 안전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대책」 마련

94년 12월의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사고와 95년 4월의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사고 이후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대책」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와 정부·유관기관의 가스안전조직 보강이 이루어졌다.

95년 5월 수립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는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래 시설 위주의 안전관리 위주에서 기업활동의 모든 부문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로 전환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경영활동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케 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및 준수여부 확인을 받게 하는 한편,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안전성 평가 및 안전성 향상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였다.

둘째,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시공감리제를 도입하였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시공할 때,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기술검토 서류와 시공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관리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가스배관매설상황 조사를 의무화하였다. 지하철공사 등의 타공사로 인한 가스배관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도로굴착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로부분의 지

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넷째, 가스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의 노출이 예상된다든지, 최고 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첨부한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도록 하였다.

다섯째, 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을 제정하였다. 대구 지하철공사장의 가스사고가 타공사로 인한 배관파손에 기인하고 타공사로 인한 가스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굴착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을 제정하였다. 예컨대, 가스배관과 수평거리 1m 이내에서 파일박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후 시행하여야 하며, 가스배관의 주위를 굴착하고자 할 때에는 가스배관의 좌우 1m 이내의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96년 6월 7일 발생한 서울 강남지역 가스방출사건 이후, 정부는 그간에 추진해 오던 각종 안전관리대책의 미비점을 보완, 「도시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은 시설 및 기기의 안전성 향상 방안,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교육 및 홍보의 강화방안, 도시가스회사의 경영효율 향상방안 등 다각적인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도시가스회사의 상황실과 정압기 간을 연결하는 遠方감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유선통신망의 誤作動 최소화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이 무선통신망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무선통신망의 설치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와 협조, 도시가스용 주파수를 할당받아 주요 도시가스회사들이 시스템개선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정압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현행 안전장치 작동순서를 안전공급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지하정압기 및 빌딩내 단독정압기의 지상화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노후공급관 및 아파트 단지내 가스누출위험배관의 조기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 초기에 사

정부는 금년에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교육·홍보 및 자율점검사업 등을 통해 가스안전관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용하였던 아스팔트 코팅관 등의 노후화가 최근 가스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어 이의 교체가 시급하나 신속히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세아파트 단지내 노후 배관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취약하여 주민들간에 배관교체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의한 노후배관교체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조기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현재 수도권 및 지방의 일부 회사만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전산화를 전도시가스회사로 확대시켜 배관망의 체계적 관리를 기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도 2~3개社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타회사에 보급토록 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올해부터 도시가스사업자의 적정 안전관리투자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금액 이상을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의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경쟁체제가 자리잡지 못하여 업계의 안전관리투자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투자기준에 따르면 매출액에 대한 안전관리투자비의 비율은 93~95년 기간중 1.8~2.6% 수준에서 97년에는 약 3~5% 수준으로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안전관리투자비에 대하여는 세액을 공제해 주도록 추진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하며 도시가스요금 산정시 공급비용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미이행업체에 대하여는 요금산정시 불이익부여 등 각종 제재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다섯째, 가스사고보험제도를 가스사고 예방기능과 보상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의 가스사고보험제도는 보상한도액이 사고피해자의 보상금액 수요와는 큰 차이가 있고 사고예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와 같이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고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며 보상금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가스사고보험제도 개선방안을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97년중 가스 관계법령을 개정·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사업자 및 안전업무담당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가스안전전문교육기관의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식과 자율점검의 생활화·습관화를 위해 소비자단체·학교 등을 통한 안전교육과 TV·라디오 등 매스컴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회사의 임직원과 시·도 등 자치단체 가스담당공무원 교육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일곱째, 96년 7월부터 2년에 걸쳐 전국의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일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는 가스안전공사·가스공사·한국가스기공(주)의 전문가로 별도의 상설점검반을 구성,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점검결과는 월 2회 해당 도시가스회사 및 시·도에 통보하여 보완·개선케 하고 있다.

또한 약 450만에 달하는 일반가정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96년 8월과 11월에 사용자정 스스로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분기별로 실시하여 사용자들이 자율안전점검을 생활화·습관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 및 법령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져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틀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97년에는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교육·홍보 및 자율점검사업 등을 통해 가스안전관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최 근 들어 우정사업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
송업체의 활발한 참여로 말미암아 사실상 민간과
의 경쟁체제로 진입했으며 우편물의 대중도 종래 信書
중심에서 기업우편물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기
업우편물의 점유비는 88년 68.9%에서 94년 72.4%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례법 제정·시행으로 우정사업 경영체제 개편

이러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
정사업 운영체제를 개선하여 대내외 경쟁력 및 對국민
우정서비스의 향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
하게 되었다.

우정사업 경영혁신으로 경쟁력 및 서비스 향상 추구

또한 국민의 욕구가 고도화·다양화되
어 우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미국·캐나
다·일본 등의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우정
서비스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실정
이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주요 선진국가들은 우정조직을
공사형태로 개편하거나 또는 정부에 의한
직접경영방식을 추진하면서도 우정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
여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우정사업을 우
리와 같이 정부기관인 우정성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경
영혁신 전략으로 우편·저금·보험 사업별 독립채산제
를 실시하고 외화환전·전자우편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신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경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의 정보화·지방화 시대
를 맞이하여 우체국의 기능도 종래의 단순한 우편물의
수집 및 배달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정보화를 선도하는
종합창구로서의 역할이 증대하면서 국가·지역 사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종합센터로서의 기능 재정
립이 요구되고 있다.



서병조

정보통신부 우정사업경영개선기획단
제도개선부장

정보통신부는 지난 94년부터 경영체
제 개편을 위하여 우정사업의 公社化를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
기되었다.

첫째, 공사화로의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부담금 5,680억원과 시설·장비
개선 등의 투자비 소요는 우편요금의 인
상이 없는 한 사전에 정부예산으로 확보
해야 함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만 가
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공사화로의 전환시 신분변화에
따른 종사원들의 동요 문제와 공사화 이
후의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른 경영의 효율성 저하 등이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공사화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시발로 우정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기업형태를 유
지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는 경영혁신의 법
적·제도적 장치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
정하여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다.

특례법에서는 우정사업의 조직·인사 및 예산 등 운영
에 있어 기업적 경영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법」·「국가공무원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률에 대

한 특례를 인정하였으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民·官 합동의 우정사업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동법의 시행은 112년 우리나라 근대 우정사업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적 틀을 근간으로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경영체제와 새로운 경영혁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영혁신을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

먼저 새로운 경영혁신 전략을 제시하기에 앞서 우정사업의 경영여건을 진단해 보면, 우편과 체신금융으로 구성되는 우정사업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잠재력이 큰 사업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 여하에 따라 정보화의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반면, 국가경영에 의한 운영의 경직성, 전기통신의 발달에 의한 우편시장의 잠식 등 여러 가지의 약점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우정사업의 경영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극복하여 우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적극 도모하기 위한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대내외 경쟁력 및 對국민 우정서비스의 향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1단계(전환기:1997년)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과 더불어 새로운 경영개편체제의 조속한 구축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의 재배치, 신규 서비스의 개발, 책임경영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단계(성장기:1998~2000년)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체국의 기능별 置局을 추진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고객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사업별 마케팅기능의 강화, 경영정보시스템 구축과 고객지향적인 기업문화의 창출 등 고객 중심의 제1의 서비스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제3단계(정착기:2001년 이후)는 제1, 2단계에서 추진해온 경영혁신전략을 보다 활성화하고 착실히 뿌리가 내리도록 추진하여 우정사업의 수지균형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고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정보종합센터로서의 우체국기능 정착을 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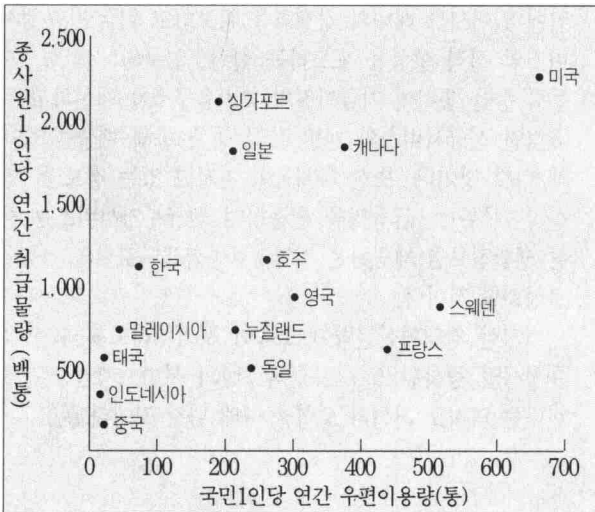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주요 추진내용인 경영합리화계획의 수립, 우정사업영역의 확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경영합리화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영역 확대

우정사업의 환경분석을 기초로 하여 우정사업의 비전 및 경영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을 4개년 중기계획으로 작성하는데, 그 안에는 우정사업의 조직·인력의 재배치, 우체국 설치 및 우편작업의 생산성 향상, 서비스의 질적 개선, 책임경영평가체제의 확립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정사업의 영역을 통신매체의 유형과 교환대상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우편사업과 체신금융사업은 각각 고유의 영역인 우편(I)과 금융(III)에 머물러 왔으나 우정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의 영역을 물류(IV)와 정보통신(II)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그림 1〉 우리나라 우편사업의 현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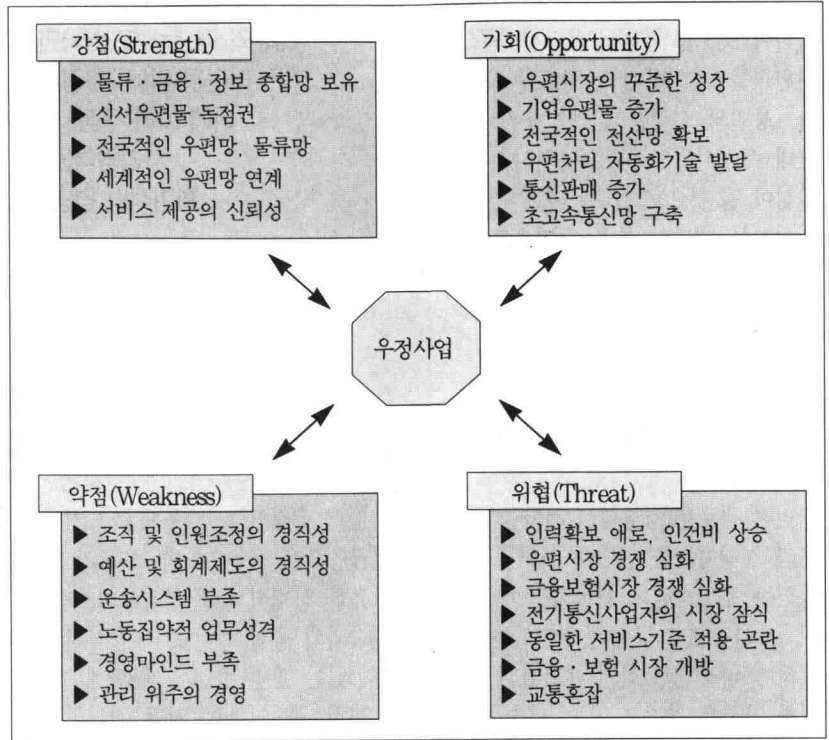
우편망을 물류망, 정보통신망 및 금융망과 통합하여 신규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그림 3) 참조.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R&D 투자 확대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책임경영단위를 우체국(서기관국, 사무관국)으로 설정하고, 책임경영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체국의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서별·사업별·활동별 원가분석에 기초한 비용배분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평가가 가능토록 할 것이다. 또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정사업 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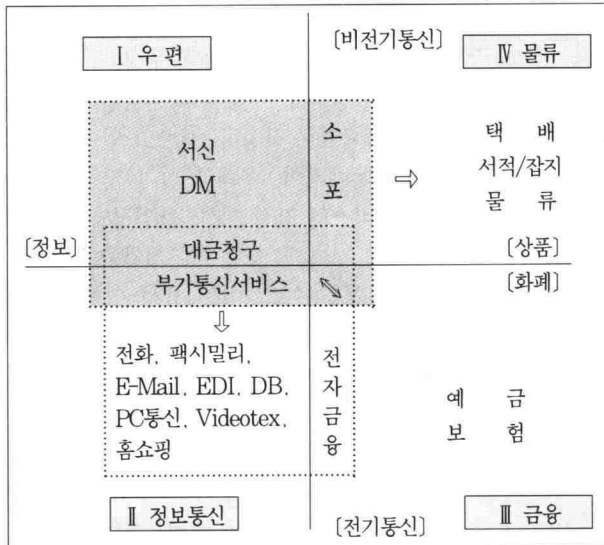
아울러 우정사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신규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기능의 재정립 등을 추진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우정사업이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임을 고려하여 종사원의 교육훈련에 중점을 둘 것이다. 앞으로 지

〈그림 2〉 우정사업의 경영여건



속적으로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높여 나갈 것이며 통신개발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산재해 있는 우정 관련 연구기능을 통합하고 조직·우편·물류·금융 전문가를 보완하여 그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림 3〉 우정사업영역의 확대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우정사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기본방향과 경영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우정사업에 있어서도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우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의 전산화·자동화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신규서비스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매출을 증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체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전산망·물류망·금융망을 활용하여 신규부가서비스는 물론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정보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다.

이러한 경영혁신전략이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4만명의 우정사업 종사원 모두는 한국 제1의 서비스기업을 창출한다는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남재**

산 업화의 진전에 따른 환경공해 등의 영향으로 식품의 오염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외식산업의 급신장 및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식품의 급증 등 식품위생환경 또한 크게 변하고 있다.

반면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제 소비자들은 식

정착 및 기초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좋은 식단' 정착 및 음식문화 개선 등의 과제를 선정, 새해 식품위생행정의 기조로 삼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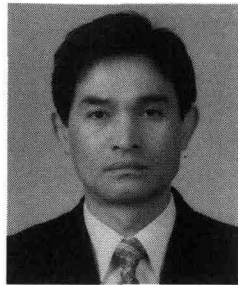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7일 김영삼대통령은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범죄근절에 대한 특별지시를 내려, 식품안전문제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규정하고 식

새해의 식품위생정책

품에 대하여 절대적인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국가경쟁력의 강화가 목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에도 '뿌집한 한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 전래의 식습관은 여전하여,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음식물쓰레기는 이제는 환경오염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상기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정착에 정책의 중점 뒤

지난 한해 동안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식품위생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설치하여 식품위생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82년 이래 역점사업으로 계속되어 온 음식문화개선사업을 더욱 확대, 구체화한 「좋은 식단」 활성화방안을 마련,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품관련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사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6개 지방청의 발족으로 식품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하겠으나, 국민은 식품안전성의 향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개선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거니와, 올해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뿌리를 내리게 하

는 일이다.

우선 안전본부가 식품의 원료에서 제조·가공, 유통·판매, 소비자의 보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계통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품안전의 검사·평가·집행 등을 안전본부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식품원료인 농·축·수산물의 안전성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본부 및 지방청에도 행정처분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그리고 식품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검사업무에 대한 精度관리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하며, 자가품질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지난해에 식육제품에 대하여 실시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는 올해 魚肉제품으로 확대 실시된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는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 걸쳐 위해요소를 분석·제거하는 선진관리기법으로, 몇몇 선진국에서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식품에 대하여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그 도입 및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성공적인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역시 지난해에 마련된 식품회수(Recall)제도 및 식품광고사전심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방식품의약품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발할 수 있는 회수명령은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자진회수를 장려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회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식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관련단체에 설치한 위원회에 의한 자율심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물질의 유해성을 판정하는 기능 및 절차, 정보의 체계화가 강화된다. 유해성 여부와 관련한 국민의 불안 및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유해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빠르게 확보·지원하며, 표준화된 검사방법 및 절차,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유해성 발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식품범죄에 대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다. 유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을 유도함은 물론 고의·상습사범은 언론에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행정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은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범죄억제력을 발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라도 악질

정부는 식품위생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설치하여 식품위생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정착 및 기초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좋은 식단' 정착 및 음식문화 개선 등의 과제를 선정, 식품위생행정의 기조로 삼을 계획이다.

적인 식품범죄는 발본 색원하여, 국민이 밥상머리에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식품규격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초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정부와 관련 연구진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농약이나 항생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지난해 대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올해에는 이들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중금속·PCBs(폴리염화바이페닐) 등 환경오염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확대하여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선진국 수준과 조화되도록 조정하는 한편, 다양한 재료의 발달에 따른 신개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도 보완할 것이다.

95년 이후 추진되어 온 유통기한 자율화는 올해도 계속되어, 부패·변질이 쉬운 김밥·도시락류 등을 제외한 전품목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된다. 유통기한 표시가 정착되면서 오히려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 제품이 팔리지 않고 폐기되는 등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유용한 선진화된 유통기한제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콩나물·간장·고추장·참기름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먹는 다소비식품은 다른 어느 식품보다도 안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농약재배 콩나물, 간장의 MCPD 검출 등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주된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들 식품의 안전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콩나물에 농약을 사용하는

데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농약 없이 재배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이다.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수·축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림부와 긴밀히 협조, 출하전 안전지도 및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시장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수입식품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공식품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

지난해 도입된 외국공인검사기관 지정제도는 지정된 외국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일부 항목을 검사에서 제외하여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 현재는 미국 오리건주 수출서비스센터가 유일한 지정예이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공인을 계속 확대하여,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역소의 업무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입식품의 위해물질정보, 수출국의 상황, 과거의 위

반사례 등 광범위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위해발생가능성에 대한 자동검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화사업이 올해 마무리된다.

정확한 해외정보의 신속한 입수는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한 만큼, 정기간행물·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수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 기준·규격에 대한 국제기구인 Codex의 정보를 분석하는 상설작업반을 계속 운영하며, 선진국의 최신 식품위해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미국·일본·EU 등과 정보교류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축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식품정보지 등의 형태로 유관기관 및 업계에 제공, 유해식품단속 등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그간 식품위생관련업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가공식품산업의 진흥업무를 올해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규모는 수입액 4조8천억원을 포함 연간 약 20조원 규모로,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전체 제조업소의 6.4%, 제조업취업자의



6.9%가 여기 종사하고 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작지 않을 뿐더러, 불황에 강한 산업으로서 경제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UR의 피해가 가장 큰 농업과의 연관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우선 稅制에 있어서는 수입식품 원료의 역관세 및 전반적인 고율관세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결하고, 식품산업 관련 기자재나 연구개발용 시설·장비에 대한 관세의 인하를 추진할 것이다.

품목별 수출추이를 예측하여 각국 국민의 기호·식생활 등을 고려한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 한국식품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유통구조의 개선은 산업발달은 물론 식품안전의 측면에서도 긴요하다. 냉동·냉장유통(Cold Chain)체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1/4분기중으로 완료하여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도입비를 지원하며, 수송·하역·보관 등 유통단계별 자동화, 재고관리의 정보화도 병행 추진할 것이다.

또한 식품유통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 및 설비의 표준규격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냉장·냉동식품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일층 강화된다.

통상에 있어서는 종래의 소극적·방어적 자세에서 탈피, 적극적·공세적으로 국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협상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기왕에 진행중이던 미국과의 양자협상 현안사항은 우리측의 제도개선으로 해결된 사항임을 분명히 하여 종결지를 방침이다.

민·관 식품수출제로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출시 상대국과의 제도, 기준·규격의 상이로 인한 업계의 애로를 적극 파악·발굴하여 대외협상시 議題化하고, 관·학·연의 전문가들로 통상대책팀을 구성, 각종 통상문제의 관련자료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제도를 분석하며 우리측 홍보논리를 개발하는 산실로 삼을 것이다.

'좋은 식단'의 정착 등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식생활 개선사업에 있어서 96년은 여러 가지로 의미

정부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체계화시키고,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제도를 魚肉제품으로 확대 실시하며, 식품회수 제도 및 식품광고사전심의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식품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있는 한해였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영양 많은 식사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음식문화개선운동은, 쓰레기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거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문제 부각 등과 맞물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런 만큼 성과도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금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작년 11월 한국음식업중앙회를 중심으로 발족한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는 민간 차원에서 '좋은 식단'을 보급하는 구심체로 계속 강력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43만여개의 모든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전개하고 실시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 수도료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휴게음식점 등 기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실태를 조사하여 참여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1/4분기중에는 시·도, 시·군·구, 안전본부 및 지방청이 참여하는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는 결의대회, 순회교육, 포스터 및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 등 고식적인 홍보수단에서 탈피, 다양한 매체 및 수단이 이용될 것이다.

'좋은 식단' 실천수기 공모, 자작 메뉴 콘테스트 등으로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하이텔·천리안 등 주요 통신망과 인터넷을 활용, 새로운 매체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

95년 인구·주택 총조사 2% 표본속보 집계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가구수는 1,296만1천가구이고 주택수는 957만9천호로서 가구수 중 가족형 가구인 보통가구(1,113만1천호)를 기준으로 한 주택보급률은 86.1%로 나타났다. 90년의 주택수 735만7천호와 주택보급률 72.4%에 비하면 5년 동안에 주택수는 222만2천호나 늘

공급활성화는 필요한 상황이다.

**임대사업의 수익성 부족 및 규제과다로
임대주택 공급 지지부진**

정부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어났고 보급률은 13.7%나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155만호의 주택이 부족하고 보통가구 기준으로 72만가구 이상이 단칸방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3.6%가 전세(28.1%) 또는 월세(15.5%) 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임차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이 대부분 비제도권의 전월세주택이다 보니 임차기간이나 가격 등의 불안요인이 커져 전반적인 주거안정을 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집값이 장기간 안정됨에 따라 집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계층까지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금융·세제상 유리한 전·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어, 이사철마다 전세값이 오르는 등 무주택임차가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세값 안정과 서민 주거불안 해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가 주택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집값의 장기간 안정으로 주택구입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주택건설물량을 급격히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장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장기·안정적인 주택공급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임대주택의



권도엽

건설교통부 기획예산담당관
*필자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주택정책과장이었음.

여 소형 분양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한편, 82년부터 임대주택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임대무기간 50년·5년차리 임대주택과 임대기간 10년의 사원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고 공영개발택지를 조성 원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다. 89년부터 92년 기간중에는 총 4조원에 달하는 정부재정자금을 투입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 자력으로 주

거문제 해결이 어려운 도시영세민을 위해 19만호의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인 임대주택은 73만5천호에 불과하고, 더욱이 임대되고 있는 물량은 총주택재고의 5%에도 못미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10~130%에 이르고, 그 20~30%가 임대주택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재고는 매우 빈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무주택가구의 주거불안요인도 크다고 하겠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

급이 부족한 것은, 아직도 주택의 재산기능이 중시되고 있고 물량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점, 임대주택사업은 투자에서 자금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한 주택건설업체들의 특성과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상 장기·저리 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점, 선진국과 같은 합리적인 임대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사회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부족하고 각종 규제가 과다하여 진출입과 임대과정에서 자율성이 제약된데다 임대차인간에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나 분양전환가격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잦은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이 주로 수요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렴한 자금과 택지의 공급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높여주는 한편, 젊은 신혼부와 맞벌이부부를 비롯한 중간계층 이상을 위해서는 시장 자율기능에 의하여 다양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임대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임대차인간의 분쟁소지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사업활성화 시책을 추진중에 있다.

임대주택 종류별 특성에 맞게 임대사업을 활성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용으로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가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건설임대주택은 다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여부에 따라

〈표 1〉 연도별 주택보급률 현황

	70년	80년	85년	90년	95년
주택보급률	78.2	71.2	69.8	72.4	86.1
• 주택수	4,360	5,319	6,104	7,357	9,579
• 가구수	5,576	7,470	8,750	10,168	11,131
• 부족량	1,216	1,218	2,646	2,811	1,552

**임대주택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공영개발택지의 공급가격을
10%포인트 인하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무기간
5년짜리 임대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지원금액을 300만원 인상하였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60㎡ 이하의 주택인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자력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금융·세제 등 각종 지원이나 규제는 물론 수요계층 등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활성화 대책도 이러한 임대주택 종류별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수익성 제고 대책은 택지와 자금의 공급 원활화에 중점 뒤

수익성 제고 시책은 건설임대주택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임대주택건설에 필요한 생산요소인 택지와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저렴한 임대택지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현재 조성원가의 80~90%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택지의 공급가격을 1월부터 10%포인트 인하하고,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일정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토지면적의 90% 이상을 매입한 경우에는 잔여토지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무기간 5년짜리 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규모에 따라 호당 1,500~1,700만원 까지 연리 3%로 임대기간 동안 거치후 20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지원금액을 300만원 인상하여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자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분양받아 소속 근로자에

게 공급하는 사원임대주택에 대한 호당지원액은 96년의 1.800만원에서 97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저렴한 택지나 자금의 지원 확대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현재 임대사업자가 투입한 자체자금(건설원가에서 기금지원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중에는 5개 급지별로 구분하여 자체투입자금의 35~70% 수준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임차인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50~70%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임대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82년 임대주택제도 도입 이후 95년말까지 건설된 임대주택은 74만3천호에 이른다. 이들 주택은 거의 대부분 정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 순수한 자체자금으로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건설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민간건설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 못지않은 규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 방안은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무주택서민에게 공급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등 각종 규제를 존속하되, 중산층 이상이 주로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시장기능에 의하여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무기간 준수·임대조건 신고 등 임대사업자로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96년 7월에는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임대무기간 종료후 당해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에도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각의무를 폐지하여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97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는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자본이 매입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전략으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사전에 5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을 확보하도록 조정하여 최초 5호의 주택 구입시에도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자를 비롯한 소액자본가의 임대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문제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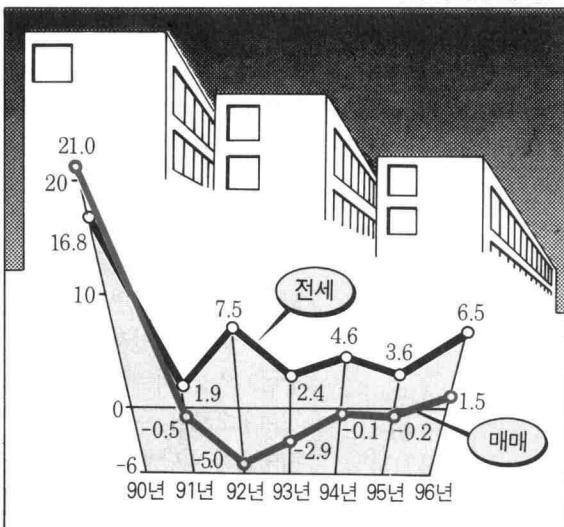
임대차인 간의 분쟁소지를 최소화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익성제고나 규제완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임대차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임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93년에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시에는 임대기간 종료후 매각가격을 반드시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고 매각가격의 중재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기간중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토록 하여 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임대기간 경과후 매

〈그림〉 연도별 주택 가격 동향

(단위: 상승률, %)



註: 91~96년 기간중 주택가격은 8.5% 하락한 데 반해, 전세값은 21.7% 상승

각시에 수선범위와 관련한 분쟁소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주택가격의 안정 및 주택경기의 침체 등에 따라 96년 10월 말 현재 미분양주택이 11만2천호에 이르고, 준공후에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주택이 1만2천호에 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준공된 미분양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에 부여되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이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준공된 미분양주택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건설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적체로 인한 주택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차가구의 주거안정문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

90년 이후 매년 60만호 이상씩 주택을 공급한 결과 최근의 주택상황은 크게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80년대 후반까지 시급하던 물량부족문제는 대부분 해소되었고, 집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 대책은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96년 7월에는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당해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에도 자율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령 개정을 올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값도 장기간 안정되어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대비 집값 수준도 91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단칸방수·1인당 주거면적·주거설비 등의 질적인 지표도 신규주택의 대량공급 덕택으로 몰라보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이나 대만·싱가포르·홍콩 등 경쟁국들이 보급률 100%를 넘어선 지가 오래인데 우리는 앞으로 매년 50~60만호씩을 계속 지어나가야 2005년경에야 보급률 100%를 바라볼 수 있고, 1인당 주거면적 또한 일본이나 구미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1인당 소득수준이 현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0년경까지는 주거복지를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공급 확대와

질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일층 강화되어야 할 상황이다. 특히, 무주택서민을 비롯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번에 추진중인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대책이 최근 이사철마다 겪고 있는 수도권 전세값 문제 해소와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시장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장기적·안정적인 주택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주거복지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문재인**

〈표 2〉 연도별 임대주택 건설실적

(단위:가구, %)

	주택건설실적	임대주택건설실적										
		소계(비율)	공공임대	영구임대	사원임대							
82년	191,420	1,155,071 중 77,719 (6.7)	77,719									
83년	225,990											
84년	222,047											
85년	227,362											
86년	288,252	51,918(21.3)	51,918									
87년	244,301											
88년	316,570											
89년	462,159											
90년	750,378											
91년	613,083					43,253	60,004	16,650				
92년	575,492											
93년	695,319											
94년	622,854											
95년	619,057											
96년 8월	311,193	49,607	36,706	10,852								
합 계	5,870,519											
	800,608(13.6)				176				10,106	9,111		
	531,515										189,746	68,190
	77,584											
	52,210											
	15,074											
	15,121											
	30,912											
	74,862(12.0)											
	82,032(13.2)											
	57,523(16.3)											

93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왔던 '부두운영회사제'가 오랜 진통 끝에 지난해 11월 27일 勞·使·政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올해부터 부산·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기본합의서는 항만근로자의 대표인 항운노조연맹과 하역회사측의 항만운송협회 그리고 정부측의 해양수산부가

라 수시로 이동함에 따라 하역비용이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특히 국유·국영의 항만운영체제가 치열한 항만간 화물유치경쟁 등 국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다양해진 항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항만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제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으로 항만서비스의 질 제고

항만에서 확고한 노·사 공존체제를 유지한다는 기본틀 안에서 부두시설을 민간에게 전용으로 임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과거 관료적이고 경직된 국가운영체제를 민간운영형태로 전환하여 항만운영효율을 극대화하고, 항만간 또는 부두간 경쟁을 통하여 항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항만운영의 일대 혁신이라 할 수 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항만유통과장

도입을 인식하고, 76년 3월 당시 해운항만청 발족 직후 부산항에 우선적으로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업계간의 이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93년 7월 해운산업연구원의 「전국 항만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를 계기로 다시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항만노무공급 형태에 대한 항만근로자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랜 기간 진통을 계속해 오다가, 해양수

산부 출범과 함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중점 과제로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을 선정하여 항운노조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 '현행 노무체제의 유지'라는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다.

항만이 물류종합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국제물류체제의 진전으로 항만기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인 시점에서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은 한마디로 항만의 20년 숙원과제의 해결이자 120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勞·使·政間 합의의 도출로 항만의 숙원과제 해결

유럽·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운영체제를 과감히 개혁, 항만운영에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수익 혹은 이윤의 극대화를 통한 항만의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고 항만 현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항만운영은 아직 항만시설을 국가가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공영형태로서 하역회사들은 고정된 하역장소가 없어 하역장비의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하역장비와 인력이 선박 접안장소에 따



개항역사 이래 항만운영의 일대 개혁조치라 할 수 있으며, 세계 항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현재 국제적으로 생산·무역·운송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원자재의 조달·생산·수송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이 하나의 요소로 취급됨을 의미하는 국제물류체제는 국제복합일관운송의 진전과 함께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세계 각국 화주들의 토털(total) 물류시스템의 최적화 추구에 따라 항만의 기능도 종래의 단순한 하역·보관 기능을 넘어서 국제물류의 종합적 합리성을 대상으로 최적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통거점 항만체제로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유통거점항만에서는 터미널 운영주체가 항만이용자인 화주와 선사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종합화물유통시설을 갖추고 화물의 추적, 유통, 가공, 분배, 전시·판매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비용의 절감과 부가가치의 창출, 편의

성, 신속성 등이 제고되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항만 자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전용부두를 제외한 일반부두가 임대대상

부두운영회사제는 전국 무역항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대상부두는 현재 전용부두를 제외한 일반부두로서 가능한 한 부두별로 단위화해서 임대하고, 임대대상부두 중에서도 상당규모의 공영부두는 계속 존치 운영할 계획이다. 공영부두는 중·소형 선사 및 화주가 이용하게 되며, 앞으로 항만하역업 개방에 따른 신규업체의 작업장과 접안시간이 긴 여객선 및 비상업적 운항선박이 이용하게 된다.

부두운영회사는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부두배정기준만 제시하고, 하역업계 자율협의방식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정하역시설을 갖고 있는 대량화주 등의

'부두운영회사제'가 올해부터 주요 항만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과거 관료적이고 경직된 국가운영체제를 민간운영형태로 전환하여 항만운영효율을 극대화하고, 항만간 또는 부두간 경쟁을 통하여 항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항만운영의 일대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참여도 허용하였고, 앞으로 신설부두에는 자격제한 없이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임대계약 기간은 3년 단위로 하여 하역기계화 추진성과 등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임대료는 우선 첫째에는 현행 전용사용료 규정을 적용하고, 2차연도부터는 기본사용료와 실적사용료 체제를 토대로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원가상승요인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임대료 수준을 책정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와 달라지는 운영시스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두운영회사가 우선 선사에게 선석을 마음대로 지정하게 하고, 야적장과 창고시설을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선·화주의 요구에 따라 하역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부두시설 이용효율은 부두운영회사와 항만이용자(선·화주)간 협정효율로 하고, 협정된 효율은 지방청에 신고토록 하여 고시하며, 이러한 고시효율 범위내에서 서비스제공 여하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

앞으로 부두운영회사제는 항만별로 지역단위 노조와 세무사항에 대한 합의절차를 마치고, 임대 대상시설과 부두운영회사를 결정하여 시행효과가 큰 부산·인천항을 시작으로 해서 울산·포항·마산·군산항 등 시행준비가 완료되는 항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부두운영회사제가 시행된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계화 계획 및 서비스 향상방안을 마련하고, 부두운영회사의 매년 기계화 추진성과와 운영실적, 서비스향상 정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지속 여부를 결정해 나가고 본 계약 갱신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으며, 선석배정의 최종 조정권은 정부에서 계속 유지하는 등 독·과점 운영방지와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항만 생산성 증대와 함께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 기대

부두운영회사제가 도입 시행되면 항만 생산성이 크게 증대됨으로써 부산·인천항의 경우만 해도 부두 30개 선석을 추가로 건설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선석 및 야적장의 이용률이 높아져 만성적인 체선·체화 현상이

크게 완화되어 항만에서만 연간 약 4천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두별로 하역회사가 지정되어 항만하역 기계화 및 부두운영 전문화가 촉진되고, 하역장비와 부두야적장 이용효율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 항만하역 기계화 촉진 대책으로는 부두운영회사 임대계약 조건에 반영하여 기계화 계획을 징구하고, 매년 기계화 추진성과와 운영실적, 서비스향상 정도를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선사들은 부두운영회사와 장기계약을 통해 자사 선박 이용부두를 고정시킬 수 있어 사전에 화물선적 준비작업이 가능해지며, 아울러 하역기계화 촉진으로 하역 시간이 단축되어 선박의 항만내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셋째, 하역기계화와 함께 능률과 수익 극대화라는 기업경영기법을 통한 부두운영으로 부두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시설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항만 적체현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넷째, 부두간 경쟁운영체제가 확립되어 화주와 선사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화물유통시설의 항만내 설치가 촉진되고,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등 항만종합정보망을 활용한 화물의 추적·보관·분배 기능까지도 수행하는 종합물류회사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년 1월부터 정부조달 엔지니어링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때에는 중앙정부는 13만SDR(1억5천만원), 지방자치단체는 20만SDR(2억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국제 경쟁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물론 이 금액 이하에서도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국제입찰에 불

되어 엔지니어링산업의 해외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개방되는 외국시장의 지역과 업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시장에의 진출기회 확대가 국내 시장개방의 가장 중요한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업체의 경영관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엔지니어링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라도 엔지니어링업체로 신고기준인력을 갖추면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주재할 수 있고, 국내의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내국민과 똑같이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시장의 개방이 국제 경제의 거역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하더라도 개방으로 인해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와 같이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개방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사업창출 및 구조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 1월부터 정부조달 엔지니어링시장 전면 개방

국내 엔지니어링시장의 개방이 다른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무관할 수 없으며, 그 영향과 효과 또한 엔지니어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외국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원상선

과학기술처 엔지니어링진흥과장

개선될 것이며, 기술진보와 기술개발노력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시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업체의 영업활동을 다소 위축시킬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내업체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와 합작하는 경우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이 유입되어 엔지니어링산업의 현대화 및 대형화를 유도할 것이고, 신기술습득 및 기술이전이 촉진될 뿐더러 합작을 통한 제3국에의 공동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한편, 엔지니어링의 국내시장 개방은 국내업체 시장점유비율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국내시장 개방은 엔지니어링업체의 부가가치와 고용의 크기를 감소시킬 것이며,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업체의 도태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외국업체의 경쟁력이 높으므로 이들이 국내 시장을 점유하게 되면,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엔지니어링시장에의 외국업체 수주확대는 국제수지의 적자요인이 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장비와 재료의 수입을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적자폭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며, 또한 이들 연관산업의 국내생산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엔지니어링 분야는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시공은 국내 기업이 담당하는 형태가 진전되어 국내 기술수준의 향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선진국의 우수한 업체들이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프로젝트의 발굴에서부터 인도까지 준과정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경우에는 국내 업체들은 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수준은 아직 선진기술수준과 큰 격차가 있다.

기술내용별로 보면 상세설계·기기조달은 국산화 단계에 이르렀으나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사업관리·시운전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은 그 기초가 미흡하여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초기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일반 산업플랜트나 석유화학·전력 분야 등 상당부분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국내 엔지니어링시장에서 장비·기자재의 15~20%는 외국 엔지니어링의 도입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개방의 규모에 따라 30~40% 이상의 물량이 외국업체에 의해 잠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지니어링기술의 높은 해외의존도는 엔지니어링산업

〈표〉 국내 엔지니어링시장의 전망

(단위 : 10억원, %)

	GDP(경상가격)	시장규모	GDP 대비 비중
1996년	338,600	2,260	0.67
1997년	375,800	2,689	0.72
1998년	417,100	3,200	0.77
1999년	463,000	3,808	0.82
2000년	513,900	4,532	0.88
2001년	560,200	5,393	0.96
2002년	610,600	6,418	1.05
2003년	665,600	7,637	1.15
2004년	725,500	9,088	1.25
2005년	790,800	10,815	1.37

엔지니어링 시장이 올해부터 전면 개방되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업체간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적극 유도하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현실화시키는 한편,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발달과 공업화의 역사가 일천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엔지니어링 경험과 기술축적의 미비로 독자적인 노하우 개발이 부족하였고, 그동안 기술경쟁을 배제한 가격 중심 낙찰제도로 인해 엔지니어링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는 일부 해외진출경험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가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선진국에 뒤쳐진 기술, 규모의 영세성 등의 취약부분을 빠른 시일안에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업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하면서 시장개방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한편, 정부로서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자립화와 고도화를 위해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엔지니어링산업육성 지원시책 적극적으로 추진

정부는 우리 엔지니어링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첫째, 엔지니어링업체의 기술능력 향상과 엔지니어링성과품의 품질보장을 위해 입찰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발주형태는 예산의 제약 때문에 기술 및 품질보다 최저 입찰가격이 중시되는 경향이였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시장을 기술경쟁 위주로 발전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개방규모에 맞게 확대하고, 평가기준도

현실성 있게 개선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先기술평가 後가격협상 방식(Two Envelope System)의 계약제도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성이 무시되고 있는 현재의 가격경쟁 위주의 계약제도를 기술경쟁 위주의 입찰제도로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엔지니어링 수주 확대를 위해 관련 업체간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다.

국내 엔지니어링업체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며, 기술수준이나 자금 지원 측면에서 보다 우위에 있는 해외 엔지니어링업체와도 국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프로젝트의 자금을 공동조달하고, 기술수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기술제휴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공동개발도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발전과 성과품의 품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엔지니어링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자체기술개발 여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엔지니어링대가가 보장되도록 계속해서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엔지니어링산업은 전형적인 기술집약적 지식산업이므로 엔지니어링기술수준 향상과 프로젝트 수주능력

을 높일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엔지니어링산업의 주된 경영자원은 고급기술인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고급두뇌의 양적 확충과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엔지니어링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력개발에 대한 금융·조세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술개발 종사자에 대한 병역특례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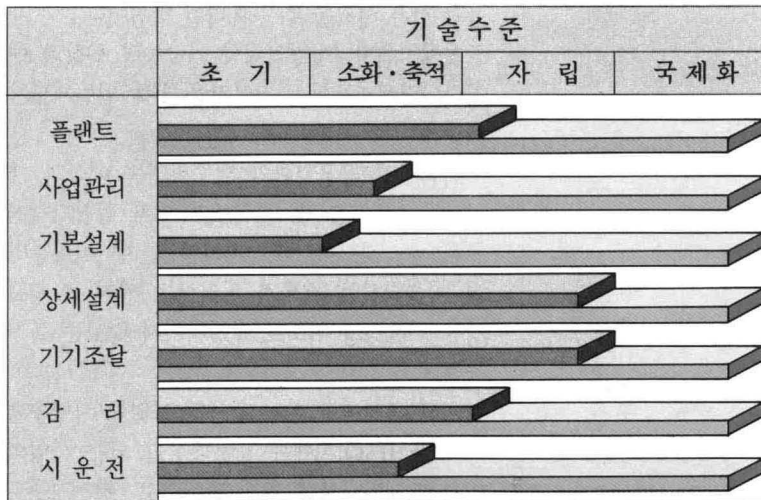
다섯째, 엔지니어링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엔지니어링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조세금융 지원시책이 필요하고 아울러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연불수출 자금 및 수출보험한도의 확대 등 엔지니어링 수출관련 금융지원의 강화가 요망된다.

외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장기저리 금융지원과 기술수출소득공제, 해외손실준비금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해외대형 프로젝트 응찰시 응찰보증과 이행보증을 해주고 있다.

여섯째, 엔지니어링산업과 관련된 조세금융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조세·금융 지원을 제조업과 건설업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엔지니어링기술성과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엔지니어링기술개발 능력의 배양과 더불어 개발된 신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설계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한 보증보험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능력과 자금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업체를 공종별로 전문화하며, 엔지니어링 기술수출 중 노하우 습득이나 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소액계약은 인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의 개정이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문필**

(그림)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기술수준



정 부는 지난 12월 22일, 최근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할인특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하고 금년 4월 1일부터 적용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연간 60일, 1회 실시기간 15일 등의 할인특매기간 제한을 하고 있는 규제를 없애기로 하였

정이 있었다.

1차 개정은 매출실적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 허위로 종전가격을 표시하고 세일을 실시한 소위 '백화점 사기세일' 파동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89년 5월 할인특매 실시기간을 연 60일로 축소허용하고 1회 실시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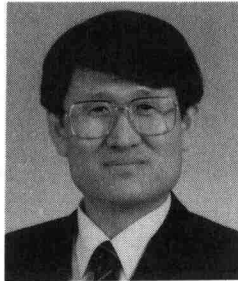
할인특매기간의 규제 철폐

다. 또한 가격인하시 인하율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광고기간 제한을 폐지하였다. 즉, 현행은 할인특매와의 오인을 우려하여 인하율 표시·광고를 금지하나 할인특매기간 제한폐지로 금지의 실익이 없어 인하율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10일로 제한한 광고기간도 그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4월부터 할인특매기간 규제 없어져

우리나라는 1981년 4월부터 공정거래법을 시행하였으나, 소비자가 제품과 시장에 관한 정보를 생산자와 비슷하게 접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정보 등이 불완전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인 시장기능의 결과가 비효율적이었다.

이러한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변칙적인 할인특매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83년 7월 할인특매고시를 제정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에는 할인특매 실시기간을 연 90일간 허용하고 1회 실시기간 제한은 없었으며, 할인특매 후 종전거래가격으로 환원의무화 기간은 30일이었다. 그후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할인특매 실시기간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까지 모두 네 차례의 개



김인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이렇게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완전성은 보완되지 않았고 업계의 변칙세일이 여전히 잔존하여 91년 1월 할인특매 실시기간을 연 40일로 재축소 허용하는 2차 개정이 있었다.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개정에 발맞추어 백화점협회는 공정경쟁자율규약을 제정하여(91년 12월) 백화점협회에 가입한 사업자들은 동 자율규약에 의거 연 40일, 1회 실시 10일 이내의 제한규정을 준수하였다.

이렇게 2차 개정시까지의 할인특매 실시기간의 지속적인 축소조정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백화점 협회 등 여러 사업자 단체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규범 준수 노력과 동시에 개별사업자들의 공정거래규범의 인식 확산으로 공정거래절서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질서로서의 공정거래제도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약화되는 분위기였다. 그리하여 93년 7월 3차 개정시에는 할인특매 실시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확대허용하고, 1회 실시기간 또한 10일에서

15일 이내로 확대허용하였다. 또한 할인특매 후 종전거래가격으로 환원 의무화 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축소조정하였다.

94년 9월 4차 개정시에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적용대상을 제조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소규모사업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93년부터는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쟁정책도 전환 필요

유통 부문의 국민경제적 의의는 고르바초프의 경험으로 쉽게 알 수 있다.

그가 젊은 시절 공산당원의 중간 간부였을 때의 일화다. 어느날 감자를 수송하는 트럭을 따라가는데, 그 트럭에서 많은 양의 감자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나 기사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가더라는 것이다. 이 트럭을 앞질러간 그는 기사에게 감자가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냥 가느냐고 캐물었더니, 그 기사의 답변이 걸작이었다. 기사의 임무는 감자를 수송하는 것이지 포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책무라는 것이다. 포장이 잘못되어 떨어지는 감자를 주워서 가면 물론 많은 양의 감자를 수송할 수 있으나, 기사의 책무가 수송이므로 감자 줍느라고 규정된 시간내에 수송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포장책임을 맡은 자의 책무를 대신하여도 이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느낀 바가 훗날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는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나, 최근 러시아의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던 91년 러시아의 한 고위관리가 한 말이 또한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러시아의 식량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다. 경제 전체로는 생산이 초과된 상태이나 수송 등 유통문제가 생산과 소비를 잘 연결시키지 못하기에 식량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다.” 유통 부문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수급의 경제문제가 크게 해결될 것

정부는 세계경제 질서와 우리나라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유통 부문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세일기간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였다. 다만 개정 할인특매고시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으로 전망되는 까닭에 근본적인 식량대책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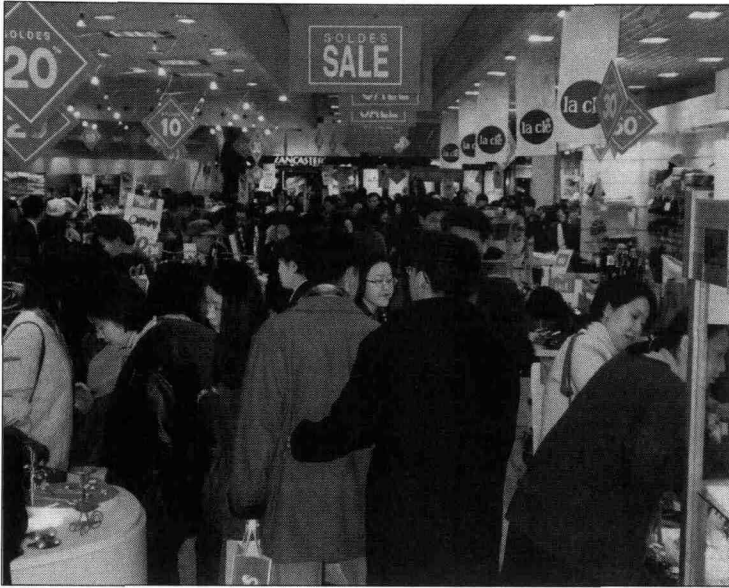
지금까지 유통시장의 개방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유통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제조업체에 의한 유통 부문의 지배(소위 유통계열화) 등으로 수직적 제한행위 등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유통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기법·기술 등이 낙후되어 유통업이 불투명한 가운데 암시장도 형성되고 있다.

반면, 세계적인 경제환경은 국경 없는 경제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국내와 해외의 실질적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 국내가 곧 해외이고, 해외가 곧 국내인 것이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 대칭성이 강화되어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시장구조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지식의 창조과정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기업 경영에서 창조적인 소수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이 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의 유통환경 또한 변화되어 공정거래의 경쟁정책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요·공급 및 정보화 등의 변화로 유통체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소비패턴이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수요가 세련되고, 생활정보의 공급으로 소비자 선택이 합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비부문의 변화는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또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 대형 유통업체의 국내진입과, 우리나라 대기업의 유통업 참여 및 유통업체의 대형화·다점포화 등으로 제조업체에 미치는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유통업도 자체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통업체의 기획상품의 개발 등으로 가격과 품질 등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로 고객관리능력이 향상되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긴밀화로 유통비



용의 감소 및 정보의 흐름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유통경로를 지배하여 오던 제조업체의 권력이 유통업체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유통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국내 유통시장은 백화점이 지금까지 독주하였지만 앞으로는 할인점의 급속한 성장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업체들도 다원화될 것이다. 이런 변화로 경쟁의 양상도 업체간, 다자간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이익 증진 기대

정부는 이러한 세계경제 질서와 우리나라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유통 부문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의 강화와 소비자이익 증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겨냥하여 세일기간에 대한 규제를 제거한 것이다. 정부가 유통 부문의 흐름에 대하여 할인특매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유통업체의 경쟁 부문에 대하여 가하던 제한을 풀고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율조절기능에 맡겨버린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위하여 그동안 세일기간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과 미국 등의 할인특매제도의 발전과정을 참조하였다.

공청회에서는 서로의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였다. 대형 백화점들은 세일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지는 주장이었고,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도 세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세일실시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나 수수료 인상 등의 백화점의 요구를 우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지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세일업체의 허위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유관기관의 감독기능이 보장된다면 소비자 선택범위 확대와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세일기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지는 주장이었고, 연구기관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런 여러 견해를 토대로 정부는 유통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규제를 계속한다는 것은 경쟁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자율

적인 세일실시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유통업체에 대하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장과정에서 있는 할인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미국은 70년대 경제가 저성장기에 돌입하여 절약구매와 가격파괴 등의 현상이 시작되면서 할인점의 성장배경이 마련되었고, 일본은 90년대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가격파괴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96년 유통시장의 완전개방으로 가격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의 경제불황기를 맞이하여 가격파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가격할인을 주무기로 하는 할인점의 성장과정이나 배경은 서로 상이하지만, 할인특매에 대하여는 미국이나 일본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공통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유통환경의 변화로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할인특매를 계속 규제할 명분이 약하여 우선 세일기간에 대한 규제부터 폐지하게 된 것이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영업전략 구사 가능해져

할인특매의 실시기간에 대한 정부규제를 없애고 시장기능에 환원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유통업체가 종전 거래가격으로 환원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인특매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업자간의 품질·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소비자들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 당연히 기대된다. 그

러나 동시에 사업자들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세일기간 동안에 평상시 매출액의 2, 3배에 달하는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세일을 자주 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할인가격이 정상가격이 되는 소비자 기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인특매기간의 제한으로 백화점 등 유관사업자는 동시에 세일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제약하고 업체별 자유로운 가격경쟁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할인특매기간 제한 폐지로 개별사업자들이 자기의 의사결정에 따라 세일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백화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할인특매고시의 2차 개정(91년 1월)으로 확정된 할인특매 실시기간 연 40일과 그 때 적용되던 1회 실시기간 10일 이내의 제한규정을 내용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백화점협회의 공정경쟁자율규약을 제정(91년 12월)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특매고시의 3차 개정(93년 7월)으로 할인특매 실시기간을 연 60일과 1회 실시기간 15일 이내로 확대허용하였으나 백화점협회는 이런 흐름에 따라 그의 공정경쟁자율규약을 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하지도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렇게 판매 및 행정규제가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방향이 할인특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므로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경쟁을 제한하는 할인특매에 관한 자율규약을 규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금년 4월 할인특매 실시기간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기 이전에 백화점협회는 그의 자율규약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금년 4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정신에 의하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현행의 할인특매실시에 대한 규제가, 주로 백화점과 의류제조업의 경우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할인특매를 실시하는 것이 매출이 신장되는 등 이점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계절별로 운용되고 있어 기타 업종에 대하여는 그의 특성에 적합한 영업전략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다른 업종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영업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할인특매 실시기간의 철폐로 유통업체가 종전 거래가격으로 환원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인특매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업자간의 품질·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별사업자들이 자기의 의사결정에 따라 세일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충분한 시장정보 제공이 공정거래질서의 기본요건

개정되는 할인특매고시를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여유를 두는 것은, 고시의 적용대상사업자와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개정되는 내용의 홍보를 통하여 이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정고시의 실시에 따르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일기간이 폐지된 뒤 선진국 수준의 세일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사기세일이나 각종 변칙세일의 발생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류업체나 대형소매점 등 세일을 많이 실시하는 업체중심으로 홍보·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와 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과 함께 상설점검반을 구성하여 세일실시 전후 종전거래가격 유지상황 및 최저가격의 소비자기만 여부 등 각종 공정거래법 준수상황을 집중점검할 계획으로 있다. 이때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기타 공정거래질서를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사전예방을 도모하고 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나 고발 등 엄중한 조치로 사기세일의 확산을 방지할 예정으로 있다.

세일기간 규제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충분한 시장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여지면 훌륭한 세일문화가 이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종 시장정보의 지속적 제공도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소비자 전체에 대한 유관업체의 정보제공을 기대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대칭성은 공정거래질서 정착의 기본요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민**

추곡수매가와 경제논리

정영훈

중앙일보 기자/농림부

말

도 많고 탈도 많은 추곡수매가 논쟁이 매듭지어졌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추곡수매가 결정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비로소 농림부 출입기자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러나 '양곡유통위원회는 있어야 하나', '꼭 국회 도장을 받아야 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 없었던 것은 나혼자만일까.

지루하고 긴 산고 끝에 나온 양곡유통위의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기자들은 한결같이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어렵사리 결정되더라도 정부안 마련과 국회동의과정에서 달라지는 예를 과거에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의 국회동의과정은 누가 봐도 '소모전'이라는 인상밖에 안 든다. 추곡수매가 인상문제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한 적은 없었는지도 되짚어볼 일이다.

폐지됐던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가 부활한 것은 88년 총선으로 與小野大가 되면서부터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수매가 인상폭을 결정하다 보니 물가안정의 주타깃이 수매가였고 매년 인상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농민을 대변하는 농촌출신, 특히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국

회동의제를 들고 일어날 수밖에.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양곡유통위원회도 이즈음 생겼다는 것이다. 당시 농림부는 국회동의제 부활을 어떻게라도 막아보기 위해 서둘러 각계 인사로 구성된 양곡유통위 발족에 나섰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만 한단계 더 늘어난 결과를 낳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회동의제의 부작용은 즉시 나타났다. 정부는 대량·고액 수매를 계속해 쌀의 민간유통기능을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는 二重穀價制로 정부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겨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 차이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산지 쌀값보다 비싸게 주고 수매를 하는 악순환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추곡수매를 둘러싼 주변환경이 변해도 너무 변했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은 시중 쌀값이 시장기능에 맡겨져 있다. 소위 계절전폭제도 입으로 일정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허용되고 있다. 93년까지는 정부미 포대에 담아 정부가 정한 가격에 쌀을 방출했다. 그러다보니 시중 쌀값은 이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그 결과 품질에 관계없이 엇비슷하던 시중 쌀값이 품질에 따라 제값을 받게 되는 등 수평적 가격구조가 수직구조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이천쌀 등 경기미는 정부수매가보다 더 좋은 값을 받게 돼 구태여 정부를 쳐다볼 필요가 없게 되었다. 게다가 '다마금' 등 몇몇 특수미는 가마당 40만원이나 해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하기에 따라서는 농민들도 더 이상 정부수매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농림부가 올해부터 약정수매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도 알고보면 이처럼 다양한 가격대의 쌀이 생산되는 등 분위기가 성숙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정부도 산지 값보다 높은 값을 주고 쌀을 살 게 아니라 판매가 어려운 중품 이하의 쌀을 사줌으로써 최저가격지지 역할만을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정책에 국회동의제가 당장 걸림돌이다.

물론 무조건 국회동의제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정부도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합리적인 선에서 수매가가 결정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상적인 수매가는 역시 산지값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몫이다. [남재]

대형사업 시금석 될 경부고속철도

양기대

동아일보 기자/건설교통부

지 난해 하반기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경부고속철도 건설문제로 큰 홍역을 치렀다. 공사과정에서 설계결함 등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때문이다.

정부는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만을 땀질식 처방으로 대충 얼버무리려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면적인 사업계획 수정으로 선회했다.

한국고속철도공단의 한 간부는 97년 상반기중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10년 가까이 누적된 문제점들을 솔직히 털어놓으니까 속이 후련하다”며 “진작 잘못을 고백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했더라면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10조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이 이처럼 부실투성으로 전락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전에 별다른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 92년 6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경부고속철도 기공식은 줄속행정의 대표적인 예다. 기공식 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정부는 땅주인에게 사정하다시피 해서 땅을 임차해

서둘러 기공식을 가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그 이후에 진행된 설계와 시공도 자연스럽게 부실투성이었다. 시속 300km 이상을 달리는 고속철도 건설은 설계를 잘하느냐가 성공의 관건. 그런데 경험이 전혀 없는 국내회사에게 설계를 맡긴 것이 화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고속철도는 차종의 특성에 맞춰 설계를 해야 하는데 고속철도 차량기본규격에 따라 대강 설계부터 했다. 자연히 93년 차종이 선정된 뒤 설계를 다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설계부실이 드러나 땀질식 수정을 수시로 해야 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이 이처럼 내부적으로 꼬이터질 지경이었는데도 지난해 7월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진행돼 왔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간간이 폐광지역을 지나는 상리터널과 교량상판의 설계결함 등을 지적해도 정부는 보강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왜 그랬을까. 이는 무엇보다도 공사기간이 10년 이상 걸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을 때 문제점이 불거져서는 안된다는 역대 건설교통부나 공단 고위간부들의 보신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다 지난해 7월 하순 고속철도공단 김한중이사장이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을 독대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김대통령은 이 날 김이사장으로부터 각종 문제점을 보고받은 뒤 “공사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해 공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때서야 건교부나 공단 측은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사업계획 전면수정에 착수하는 등 법석을 떨었다. 김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런저런 술한 문제를 안은 채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마냥 앞만 보고 달렸을 것이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대형국책사업을 우리가 얼마나 잘해낼 수 있는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는 고속철도건설 경험이 전혀 없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단, 시공회사 등 공사주체의 사명 의식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김한중이사장의 말은 시사적이다.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면 후손들까지 욕을 먹는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행에 들어갔을 때 부실공사로 대형참사가 날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남원**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신연숙

서울신문 기자/과학기술처

지난 한해는 유난히 부처간 대립이 시끄럽게 드러났던 해로 기억된다.

우선 떠오르는 것으로 대기업의 채무보증 제한 등 재벌정책을 둘러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방이 있다. 장관급 기관으로 새출발한 공정위와 재경원의 업무영역 논쟁,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재계의 반발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한참 동안 잡음이 계속됐다. 또 통상문제를 둘러싼 재경원·외무부·통산부간 갈등은 OECD 대사가 임명되기까지 계속 애깃거리를 남겼고, 이 밖에도 부처간 대립 사례는 셀 수도 없을 정도이다.

서로 다른 견해란 일을 많이 벌이다 보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굵직굵직한 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문민정부 하에서라.

하지만 어떤 것은 부처간 밥그릇 싸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것도 있었고 사전협의 단계에서 勢 불리를 극복해 보고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버젓이 발표된 정책이 하루 아침에 폐기되기도 하고 용두사미격으로 꼬리를 내리는 일도 많아 정책 난맥이니 조정능력 부재니 하는 비판이 잇따랐고 급기야는 부처간 사

전 조율이 안된 사안을 선불리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국민의 공복이 밥그릇 싸움을 벌이거나 편법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일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표출되는 것이 과연 질타당해야만 할 일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권위주의 체제에는 잡음이란 게 없다. 힘 있는 곳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저 따를 수밖에 없다. 언론도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주도록 설득을 떠든 그만이다.

반대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권력은 분산돼 있으며 정치는 다양한 이익의 조정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는 물론 누구라도 의견을 가진 사람은 표현할 수 있으며 언론은 표출된 다양한 의견을 보도함으로써 공중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에 있어 언론을 통한 다양하고 선명한 논점의 부각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자유로우며 민주주의의 바탕이 굳건해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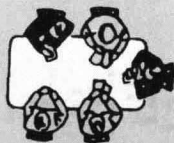
어쨌든 다양한 이견 표출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 과학기술계가 이 같은 조류에서 다소 뒤권에 몰려나 있었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원자력사업 구조조정 때나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과학기술혁신법」 제정작업 과정에서 과학기술처가 얼마나 제 목소리를 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많다. 대통령에게 현안문제와 장기과제를 자문할 위치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나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를 과학기술계가 부처이기주의를 떠나 국가 차원에서 일한 증거라고 좋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 여러 부처가 있고 각 부처가 여러 전문가 그룹을 거느리고 있는 것은 똑같은 목소리를 듣고자 한 것은 아닐 터이다. 환경부가 국가를 위한다고公害 규제완화에 무조건 박수를 친다면 환경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처와 자문회의, 청와대 과학기술 비서관들도 과학기술 발전을 최대 목표로 잡고 그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과학기술처는 올해로 출범 30주년을 맞는다. 이제는 청·장년기에 접어든 만큼 독립된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한다. **김동원**



기·업·정·보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양계 피해 분쟁

임종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정사례를 소개한다.

개발에는 이익과 손해가 공존한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비해 한정된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늘날 '경제'의 기본 과제이며, 복지국가의 건설은 자원의 적절한 배분에 있다 할 것이다.

국도의 개발은 그 자원배분의 한 방식이며 개발 과정에서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해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최적의 방안 도출은 풀기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이다.

2000년대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환경' 문제는 이제 국민생활에서 일반 교양과목과 같은 필수 분야가 되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만큼 그와 비례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증폭되고 있으며 예전이라면 참고 견디던 상황도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도로건설·지하철공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간접시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먼지 등 오염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환경오염 중에서도 소음·진동은 국민생활 공간과 밀접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를 감지하는 정도가 다른 오염원에 비해 더욱 민감하게 나타난다.

국도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공사현장과 주거지역이 인접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 주체의 보다 면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호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양계 피해 분쟁 재

◀사건의 개요▶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에 거주하는 신미호씨와 김채열씨는 일성종합건설(주)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양계장 인근에서 각종 중장비를 운행하고 성토작업을 시행하여 소음·진동, 먼지를 발생시킴으로써 신청인들의 양계장 닭들이 질병에 걸리고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총 1억8,083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중 신미호씨의 산란계 사육사실은 인정하나 그외의 양계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동절기(1~2월)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성토작업시 발생된 소음·진동은 그 정도가 낮으며, 물차로 살수하며 공사를 시행하여 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양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문헌, 전문가 의견, 관련자료와 양당사자 진술을 종합하여 배상을 결정, 양당사자가 이에 승복하여 분쟁이 해결되었다.

◀사실조사▶

신청인들의 양계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청인 신미호씨는 공사장으로부터 최단거리 13m 가량 떨어진 570평의 닭농사에서 95년 1월부터 5월까지 산란계(중추) 3만7,050수를 사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청인 김채열씨는 공사장으로부터 최단거리 123m 떨어진 689평의 계사에서 95년 2월부터 3월까지 육계 3만수를 사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신청인이 추진중인 공사는 안산-안중간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공사로서 재정신청 구간의 경우 94년 10월~95년 5월까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양계장과 인접하여 성토작업이 이루어졌고 불도저·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다수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신청인들의 양계장은 논·밭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공사가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계장과 인접하여 실시되어 소음·진동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성토작업 과정에서 흙을 실은 덤프트럭의 운행과 불도저와 그레이더로 포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다량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과관계 검토▶

우선 소음으로 인한 양계피해 여부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도 추정 결과 신청인 신미호씨 양계장에서의 합성소음도는 72~83dB(A)였으며, 닭의 경우 트럭 적재함 뒷문치는 소리, 경적소리 등 갑작스런 충격소음에 의해 압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할 때 먼지 등 기타 환경요인에 의해 내성이 약해진 닭이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 닭의 폐사와 소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 김채열씨 양계장에서 합성소음도는 62~64dB(A)로서 「소음·진동규제법」상 주간 건설소음규제기준인 75dB(A)에 미달하며 이 정도의 소음하에서는 양계폐사 피해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다만 트럭 적재함 뒷문치는 소리, 경적소리 등 갑작스런 충격소음에 의해 다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진동으로 인한 양계피해 여부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공사진동은 불도저·덤프트럭 등 중장비 운행진동과 기타 작업시 발생된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을 추정해본 결과, 신청인 신미호씨 양계장에서의 합성진동도는 52~65dB(V)로서 「소음·진동규제법」의 건설진동 규제기준인 75dB(V)에 미달하여 진동과 양계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 김채열씨 양계장에서 합성진동도는 27~34dB(V)로

경미하여 진동과 양계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공사장 먼지로 인한 피해 여부에 대해 위원회는 도로 성토작업시 흙을 포설하고 다지는 과정과 덤프트럭 운행시에 많은 먼지가 발생했을 것이며, 살수차에 의해 살수를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생리적으로 호흡기 질병에 약한 닭의 경우 호흡기 손상을 입었을 수 있고, 손상후 2차 감염에 의해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배상액 산정▶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신청인 양계장의 폐사두수는 '사육두수×평균 출하율×폐사원인 제공률'의 공식에 의해 산정하되 사육두수는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신미호씨의 경우 산란계(중추) 3만7,050수, 김채열씨는 육계 3만수로 인정하고, 평균 출하율은 육계의 경우 35일령 기준으로 90~95% 수준, 산란계(중추)의 경우 70일령 기준으로 90~95%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의 도로공사로 인한 양계폐사 원인제공률은 양계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신미호씨의 경우 13%, 김채열씨의 경우는 5%로 인정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양계 폐사 피해에 대해 신미호씨에게 997만500원, 김채열씨에게 375만8,400원 등 총 1,372만8,9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법원**

최 근 국내외에서 환경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30여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생활여건의 개선과 함께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받으려는 국민의 요구는 集團行動化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오염은 사회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 우리의 수출지향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여 온 원재료, 노동 및 에너지 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이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이 수입개방화와 더불어 국내외

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및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환경적으로 청정산업의 육성을 의미한다. 즉,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지구온난화·산성비·오존층 파괴 등으로 인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됨에 따라, 地球環境 問題가 인류의 최우선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를 전후하여 체결된 환경관련 국제협약과 의정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WTO에서 보다 광범위한 貿易規制를 위하여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그린라운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사회의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대외무역 마찰의 사전대비를 통한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이루려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오염물질이 생산공정을 거쳐 배출된 이후 사후처리하는 것보다 생산공정에서부터 오염물질이 많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



정진승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정기술 개발과 환경산업을 육성하여 예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추구하여 경제와 환경의 갈등관계를 상호보완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에 도움을 주는 환경정책과 환경에 도움을 주는 경제정책 수립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개발의 성과를 국민환경복지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환경규제 체계를 개혁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기·수질·폐기물 등 개별매체별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환경오염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화와 통합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위천공단 개발을 둘러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갈등, 용담댐을 둘러싼 충남과 전북의 갈등, 속리산 용화온천 개발을 둘러싼 충북과 경북의 갈등 같은 문제도 原因者·受惠者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책임까지 지도록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하고, 환경자원의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대가를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통한 수요관리를 위하여 경제적인 誘引裝置를 강화해야 한다. 원가의 40% 수준에 불과한 쓰레기 처리요금, 50~60%에 불과한 상하수도 사용료 등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각종 부담금 및 요율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보 공개 강화 및 합리적인 환경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경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주민과 기업을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홍원**

누구나 ‘머피의 法則’ (Murphy’s Law) 을 한번쯤은 경험해 보거나 들어 보았을 것이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는 순간 전화벨이 울린다는가, 세차를 했더니 비가 내린다는가 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잘못된다 (If anything can go wrong, it will.)”는 ‘머피의 法則’ 을 떠올리게 된다.

본래 ‘머피의 法則’ 은 주로 엔지니어들 사이에 자주 인용되곤 하지만 요즘은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經濟政策을 다루는 이코노미스트에게도 적용되지 않나 하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필자만의 우려는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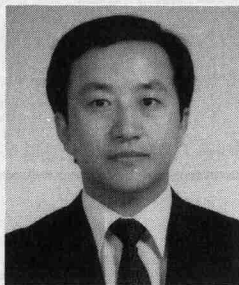
그러면 왜 경제에서도 ‘머피의 법칙’ 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유능한 의사를 찾듯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선 경제전문가의 처방에 기대를 거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들이 자주 좌절감에 빠지는 것은 그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현상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경제정책의 최종 결정은 민주주의의 사회에서는 결국 정치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정치와 경제의 갈등을 경험해 오고 있다. 흔히 이코노미스트들은 정책결정이 보다 광범위한 일반적 이익보다는 협소한 특정이익에 좌우되고, 말 없는 다수의 장기적인 편익보다는 아우성치는 소수의 단기적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코노미스트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돌이켜보면 문민정부 이전의 경제정책은 정

경제의 ‘머피 法則’



현오석

재정경제원 행정·방위예산심의관

책의 수립이 중요하지 집행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정책의 집행은 수립된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공무원의 자질도 소위 ‘테크노크라트’로 충분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제는 정책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정책의 전략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이코노미스트에게는 ‘테크노크라트’라기보다 ‘교섭자(negotiator)’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 하겠다. 교섭의 의미는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언론 활용과 對국민 설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이 될 것이다.

경제정책에서 ‘머피의 法則’ 을 깨뜨리려면 우선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인과 이코노미스트 간에 신뢰는 물론이고 경제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경제주체간에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著名한 경제사회학자인 후쿠야마 교수가 ‘신뢰’ 를 노동·자본 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경제요소로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다음으로 ‘머피의 法則’ 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이코노미스트의 倍前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대로 이코노미스트의 기능은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현상에 대한 인식도 장기적인 시각을 지니고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걸치는 學際的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머피의 법칙’ 을 깨뜨리겠다는 자신감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머피의 법칙’ 이 증명하는 많은 경우를 당하더라도 그래도 다시 시도해 보고 있지 않은가! ‘머피’ 도 낙관주의자였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홍정**



미국에서의 過消費에 대한 課稅論議

권영선

재정경제원 사무관/시라큐스대학 유학중

이 곳에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도 외제 차 붐이 일어 TV 드라마에 외제 차가 등장하고 부유층 사이에서는 외제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또다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과소비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과 소비가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학기 미시경제학을 배우던 중 기존의 보편적인 경제학적 이해에 기반을 둔 조세제도와 다른 '누진적 소비세제(Progressive Consumption Tax)'의 도입을 주장한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Robert Frank: 코넬 대학)가 있어 그의 논점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재정학에서 경제학자들 사이에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본적 원칙 중의 하나는 세율체계는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모든 재화와 서

비스에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획일적인 세율이 부과될 때, 과세 이후 재화들 간의 상대가격이 과세 이전과 동일하게 되어 소비자의 구매행태가 세금부과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때 소비자는 과세로 인해 비싸진 재화는 소비를 덜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다른 재화를 더 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과세에 의한 소비의 왜곡으로 인하여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 이후의 소비자의 소비와 그에 따른 생산을 이상적인 소비와 생산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소비자의 이러한 과세 이전의 소비와 과세 이후의 소비 간의 사회 전체적인 견지에서의 경제적 효용(소비자가 느끼는 만족 등)의 차이를 경제학자들은 조세의 '경제적 손실(dead-weight loss)'이라 부른다. 그러나 단일세율을 부과하면 재화간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게 되어 소비자는 '무엇을 얼마만큼 살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 행태를 바꾸지 않게 될 것이고, 따라서 조세부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적 배경하에 80년대 이후 미국정부는 조세개혁의 주안점을 소득세율체계의 단순화와 높은 누진세율의 완화에 두어 왔다. 누진세율의 완화 조치는 높은 누진세율은 개인의 일과 여가 간의 선택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납세자의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조치였다.

코넬대학의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는 두 가지 경제학 이론에 근거하여 누진적 소비세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첫째는, 경제학의 '개인주의(individualism)'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고 둘째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우선, 첫번째 프랭크의 논의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프랭크는 경제학의 기축을 이루는 개인주의를 부정하기보다는, 개인주의만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소비행

태를 보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개인주의는 근대 주류 경제학의 이론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원리의 하나이다. 즉, 개인주의는 경제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개인이 자유롭게 그의 선호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자발적 소비는 소비자의 만족을 높여주는 것(good)이지 소비자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것(bad)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개인의 선호는 안정적(stable)이어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학에 있어서 개인은 그의 선호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그의 소득을 고려하여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므로 개인의 선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중요한 경제적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프랭크는 개인의 소비행태는 그의 선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비행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오래된 이론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개인의 선호에 근거한 소비는 자신의 선호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비(보다 원천적으로는 타인의 선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타인의 소비행태가 변하면 자신의 소비행태도 변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와 같이 상대적으

로 소비와 가치가 결정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영국의 경제학자 허쉬(Hirsh)가 부른 것과 같이 '품위유지財貨'(positional goods)라고 부른다. 이러한 품위유지재의 전형적인 예로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치재를 들 수 있다. 품위유지재의 전형적인 특징은 재화의 가치가 그 자체의 용도보다 타인이 구매한 것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품위유지재의 소비행태는 군비경쟁에 비유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품위유지재의 예로는 결혼예물, 과외, 학군의 선택, 비싼 외제차 구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화군에서는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소비자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가격 자체가 소비자 선택의 기준이 된다. 얼마전 일부 부유층의 과소비를 다루는 기사에서 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소비행태를 매우 잘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勝者 全取社會(Winner-Take-All Society)'를 프랭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한 특징으로 본다.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많은 직업영역에 있어서 소수 일등을 한 자는 엄청난 돈을 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소수 프로 스포츠 선수들, 소수 법률가·경영자·연예인 등을 들 수 있다.

승자 전취사회라는 용어는 프랭크와 쿡(듀크대학 경제학자)에 의하여 주창된 것으로서, 승자 전취사회는 자원을 낭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

해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한다.

우선 승자 전취사회에서는 쓸모없는 투자가 발생한다. 지나치게 많은 경쟁자들이 스타가 되기 위하여 소수 직업군에 몰리게 됨으로써 낭비적 투자가 발생하고, 경쟁자들이 서로가 선두에 서기 위하여 비생산적인 소비와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인력이 고시준비에 수년을 소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견지에서 인력낭비의 좋은 예이다.

승자 전취사회에서는 또한 경쟁자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낭비적이고 아울러 많은 경우에 건강에 해로운 소비와 투자까지를 하게 됨으로써 자원낭비를 초래한다고 한다. 단거리 육상선수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몸에 해로운 약을 복용하게 되고, 보다 예빠지기 위해 일부 연예인 지망생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일류 대학으로의 진학이 향후 소득과 직결될 경우 재수학원이 번창하는 것 등이 전형적인 예일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경쟁을 설명하는 데 있어 外部效果란 개념을 이용한다. 한 경쟁자가 앞서면 전에 앞서 있던 사람은 반드시 뒤처지게 된다. 이러한 경쟁과정에서는 한사람의 추월은 이전 선두주자의 뒤처짐을 의미하므로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경쟁과정의 결과를 '경쟁의 외부효과(positional externalities)'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경쟁에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프랭크는 이러한 승자 전취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진적

소비세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일세제의 도입은 최고 소득자의 한계세율을 반 이상 낮추어 부유층의 낭비적인 과소비를 부추기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승자 전취사회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프랭크가 들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결혼할 때 대개 약혼녀에게 6천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는 관습이 있는 나라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정부가 500%의 세금을 다이아몬드에 부과하면 1천달러 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가격이 6천달러가 되므로 대다수의 약혼녀들은 가격은 전과 같은 6천달러이나 세금부과 전에 받을 수 있던 것보다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약혼녀들의 만족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사하는 신랑이나 작은 반지를 받는 신부 모두 세금 부과로 인하여 잃는 것이 없다. 그런데 정부에 세입으로 거두어진 5천달러는 사회 전체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득이다.

프랭크는 누진적 소비세는 고소득층의 납세 후 소득을 낮추어 그러한 직업군에서 발생하는 과잉경쟁을 완화시킬 것이며, 유능한 인재들이 골고루 다양한 직업군에 분포하게 유도함으로써 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부의 보다 균등한 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예를 들면, 누진적 소비세를 통하여 부유층이 300평 크기의 집 대신 150평 크기의 집을 구입하고

벤츠나 페라리 같은 값비싼 차보다 값싼 국산 차를 구입하게 될 경우 수천억원의 자원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프랭크가 생각하고 있는 누진적 소비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일까? 프랭크는 연간소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2만달러까지 공제함으로써 소비세제에 누진율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별소비세제가 있어 사실상 이미 누진적 소비세제를 갖고 있는 셈이다. 프랭크의 누진적 소비세제의 기본 원리를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휘발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의 문제에 적용해 보자.

휘발유세의 인상은 승용차 이용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원유수입을 줄여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휘발유세를 도로 확충에 투입하면 물류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휘발유세의 인상은 요즈음 문제가 되듯이 저소득층에게 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고 특히 교통체증을 겪지 않는 지방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카터 행정부 때 미국에서는 휘발유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휘발유세를 인상하면서 휘발유세 인상에 따른 소득 보상을 위하여 동시에 소득세를 낮추어 주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이 대안에 대한 주된 반대논거는 소득을 보상해 주면 휘발유세 인상의 효과가 상쇄되어 휘발유 소비가 줄지 않을 것이었고 실제 이 대안은 정책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휘발유가 여타 재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싸져 소득보상을 해주었더라도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휘발유세 인상의 주목적은 교통난 완화와 도로망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에 있다고 알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와 상응하여 소득세의 표준공제를 일정분 인상시켜 주면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휘발유 소비절약과 교통난 완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프랭크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순수 시장경제와 완전경쟁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누진적 소비세제 도입의 기본전제가 되고 있는 승자 전취사회에 대하여는 많은 규범적 논의를 수반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프랭크의 누진적 소비세제 논의는 선진국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좋은 예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예시하고 있다. **필자**

필자註: 프랭크의 누진적 소비세제와 승자 전취사회에 대한 논의를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아 보고자 하는 분은 다음 주소로 찾아가십시오.

<http://www.gsm.cornell.edu/newideas/pressreleases/Frankpr.html>.

<http://www.gsm.cornell.edu/newideas/pressreleases/winnerta.html>.

노동행정 부문의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과제

이기권/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WTO 출범과 함께 세계 각국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도 新정부 출범 이후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국가경쟁력의 요체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 추진은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을 철폐하여 시장기능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체제를 갖추으로써 생산성 있는 서비스 정부로의 역할 재정립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대하여 들인 정부의 열과 성에 비하면 기업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선 의 체감효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동행정 부문의 규제는 타부문과는 달리 경제적 규제의 성격과 사회보호적 규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규제완화 추진에 있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강하게 요구되는

어려운 작업이다.

이와 같이 노동행정 부문의 규제는 다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근로자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아울러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혁하고 제도를 개선

새로운 시대에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이 되는 참여·협력적 新노사관계의 제도화를 위한 96년 4월 24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 이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해 각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단체 및 기업들로부터 건의가 계속되어 온 핵심 정책과제인 노동 관련 제도개선의 결실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담아내게 되었다.

우선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규제적인 노동시장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화, 자유로워지고 기업도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인정, 시간제근로·신축적 근로시간제(자율출퇴근제) 및 재량근로제 등의 인정, 휴업수당제도의 보완, 퇴직금의 기업연금제 전환의 근거 마련 및 중간정산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사자율교섭 기반 마련과 책임·상호신뢰·협력에 기초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노사협력의 제도적 틀을 정비하였다. 그동안 근로자단체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온 복수노조 허용, 제3자개입 금지규정 삭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등을 실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조직선택권 부여 및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제한, 쟁의기간중 임금지급 규제, 최저 취업연령 조정 등 불합리한 제

도·관행의 개선과 조정전치제도 도입 및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제고 등 분쟁조정절차의 합리화와 노동행정의 신뢰성 강화도 아울러 추진하였다.

한편, 「근로자 파견법」 도입, 여성의 야간·휴일 근로제한 완화 등은 2차 개혁과제로서 '노사의 의식·관행 바로세우기 운동'과 함께 금년도에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총 216건의 개혁과제 중 161건을 개선 완료

지난 93년 이후 지금까지 노동부가 추진한 규제완화과제는 총 216건으로 이 가운데 161건이 개선 완료되고 55건은 추진중에 있다.

분야별 추진현황을 보면 고용·훈련 등 고용정책 분야가 69건, 산업안전 분야가 52건, 근로기준 분야가 33건, 노사정책 및 기타 분야가 7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법령별로 보면 법령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20건)이 총과제의 12.4%를 차지하며, 시행령 개정 사항(33건)이 20.5%, 규칙 및 고시 등 하부규정 개정사항(108건)이 67.1%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훈련 분야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각종 의무를 완화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그 방향을 맞추어 추진하였다. 직업훈련 의무비율을 계속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장비 기준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認定직업훈련인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다기능기술자 자격종목

신설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고용총괄 부문의 규제완화는 국·공립 직업안정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민간 부문의 인력수급 기능도 원활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요건 완화, 겸업금지 폐지, 허가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토록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産災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급여지급과 관련한 제도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뇌혈관 및 심장질환·요통·소음성 난청 등 7종의 재해인정기준을 보완하였다. 또한 義肢보조기 및 치과보철요금의 수가를 현실화하여 재해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건설업·농업·상수도업 등에 개별실적요율제도를 확대도입해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였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중복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부문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효과적인 보호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의 의무고용제를 완화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탁사무를 정비하여 이 분야에 대한 대폭적

인 규제완화 작업을 이루어냈다.

이에 따라 보일러·승강기 등에 대한 설계·완성·성능검사 및 정기검사와 제조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가 폐지되었으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에 대한 각종 교육이 폐지되었다. 또한 산업보건의에 대한 의무고용은 완전 폐지되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의무고용은 타법령에 의한 의무고용 인력의 상호인정, 공동채용, 외부대행 인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완화하였다.

규제개혁에 대한 일선공무원의 참여 유도

노동부 관련 규제완화 과제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17차례 개최를 통해 행정쇄신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등 규제완화기구나 노사단체로부터 건의과제를 접수·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제안기관에 송부하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사후 관리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 차원에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방노동관서에서 민원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민원행정 간소화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96년 3월부터 총 40건을 발굴 검토하여 이 중 장애인고용지원금 등에 대한 신청서류의 간소화, 고용보험료 분할납부기한 조정, 직업훈련

교사 면허발급 개선 등 총 26건의 과제를 수용하여 개선조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일선공무원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고객중심 및 현장성 있는 신규과제를 정기적(상·하반기)으로 건의토록 제도화하여 이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고객들이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공무원을 규제완화 작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규제완화 사례 및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게는 연말에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정책 분야 및 인·허가 분야 중심으로 규제완화 노력을 집중

지금까지 범정부 차원의 행정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민간의 체감효과가 미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인·허가 등의 핵심규제 분야의 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제사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규제사무 자체에 대한 투명성부터 제고하여 신고 등 단순절차업무를 중심으로 한 실적 위주의 규제완화는 지양하고 정책 분야의 핵심적 규제(덩어리 규제)와 부조리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인·허가 분야 중심으로 규제완화 노력을 집중시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규제완화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생성의

방지를 위한 규제사전심사제도의 활성화, 규제실명제 및 일몰제도의 도입, 규제영향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기법의 보급활용 등이 정착되어야 하며, 정부내 규제완화추진기구의 통합정비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정부규제의 완화가 지금은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정부규제의 완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지만 규제완화를 할 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완화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와 공평성 실현이라고 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비전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헌**

원 고 모 집

독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本誌는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잡지'가 되기 위하여 독자가 참여하는 紙面을 대폭 늘리고자 합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 本誌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의견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원고가 채택되어 '나라경제 광장'이나 '제언'에 게재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보내주시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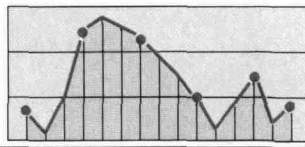
*원 고 매 수: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

*마 감 일: 수시로 접수

*보 내 실 곳: ☎ 135-2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국민경제교육연구소 『나라경제』 편집실

전화: (02)561-1400 (02)3452-8241 FAX: (02)569-9415



집권 2期 맞는 클린턴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93년초 취임한 클린턴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1,100만명의 고용창출, 9.5%의 GDP 성장, 물가안정 달성이라는 경제성적표를 96년 美 대통령선거에서 적극 활용하여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경제실적 달성에는 미국기업들의 경영혁신과 美 聯邦準備理事會(FRB)의 신축적인 통화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공적인 경제성적표가 클린턴 재집권의 요인

80년대에 미국기업들은 일본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갔다. 당시 일본의 전자제품은 경량화·소형화와 소비자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미국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하였고, 자동차산업은 물량 위주의 수출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로 미국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국기업들은 경쟁력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 방만한 조직을 정비하고 권한을 하부조직으로 이양하는 등의 경영합리화와 리엔지니어링·리스트럭처링·벤치마킹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갔다.

그러한 혁신의 결과가 클린턴대통령의 집권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컴퓨터, 정보통신 및 영화 등의 산업이 미국에서 각광받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기업의 경영혁신 노력과 더불어 앨런 그린스펀 美 聯準 의장이 경기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통화정책

도 미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준은 94년초까지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저금리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하여 정치권과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상승기에 고금리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95년에는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美 연준은 지난 95년 7월, 3년 만에 처음으로 聯邦基金금리를 6.0%에서 5.75%로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12월에도 5.50%로 다시 0.25%포인트 인하함으로써 96년 미국의 경기부양에 일조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도 부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였는데, 재정적자는 출범 초기 2,900억달러에서 96회계연도에는 1,073억달러로 줄어들었으며 95년 하반기 이후 무역수지 적자폭의 증가추세가 완화되고 있다.

96년의 미국경제는 고용·생산·물가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감량경영 추세 지속으로 인한 고용사정 악화요인도 있으나, 美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신규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5%대에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 호황 속에서 낮은 실업률은 임금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불러올 수 있으나 달러貨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의 하락으로 물가는 2%대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꾸준한 임금 상승과 더불어 기업의 수익도 높은 편이고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도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다. 95년 2월 23일 4천을 기록했던 다우존스 지수는 95년 11월 5천을 돌파하였고, 1년 뒤인 96년 11월 7일 장중 한때 지수 6천을 넘었고 이후 96년말까지 6,500선을 유지하였다.

이것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경기회복이 예상외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경제가 안정 속에 성장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투자자본이 미국증시로 몰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세적 통상정책’ 유지할 전망

주요 경제관련기관들은 97년도의 미국경제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기업설비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 2%대의 성장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연준의 금융긴축 기조가 유지되고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3.0% 이하의 낮은 물가 속에 96년과 마찬가지로 안정 속에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용측면에서는 美 행정부의 신규 고용창출에 따라 실업률은 5.4%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방노력과 주요국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수입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가 대폭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2기를 맞는 클린턴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기

〈표〉 97년 미국경제 전망

(단위: %)

	DRI	WEFA	OECD
실질GDP성장률	2.3	2.2	2.5
실업률	5.4	5.4	5.4
물가상승률	2.9	2.9	2.0

자료: DRI, *World Economic Outlook*, 1996 3th quarter
 WEFA, *World Economic Outlook*, Nov. 1996
 OECD, *OECD Economic Outlook 60*, Dec. 1996

집권 2기를 맞는 美 클린턴행 정부는 ‘공세적 통상정책’ 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시장 개방확대를 위한 통상미찰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달러약세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는 지난 4년간의 ‘공세적 통상정책’ 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집권기간중 물가안정 속에 2% 이상의 경제성장과 실업과 재정적자의 감소를 달성하였으며, 의회를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정책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지난해 12월에 인선된 집권 2기의 통상정책을 이끌 경제팀의 임명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미키 캔터 상무장관 후임에 빌 데일리,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살린 바세프스키, 국가경제협회의 회(NEC) 의장에 진 스프링을 지명하였다.

여기서 공세적 통상정책과 관련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세프스키 美 무역대표부 대표직무대행을 정식대표로 임명한 것으로, 클린턴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이 종래에 비해 공세적인 색채를 띠는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美 무역대표부의 대표로 임명된 바세프스키는 중국·일본·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지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데일리 상무장관도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설립을 강력히 지지한 점으로 미루어 자유무역을 실현시킨다는 명분으로 아시아국가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정이행감시기구의 신설로 위상이 강화된 美 무역대표부는 무역협정 이행에 불성실한 국가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임명된 무역대표부 대표는 통상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보여주기 위하여 공세적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과 동시에 아시아의 개별국가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불공정무역사례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1기하의 클린턴행정부 대외통상정책 기조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다자간규범 제정을 통해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균등한 경쟁여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일본·한국 등 동아시아의 거대부상시장(BEMs)에 대하여 기존의 무역협정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통상정책의 강화는 좀처럼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미국의 재정 및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성장잠재력이 큰 동아시아국가의 시장에서 찾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국시장 개방확대 요구 드세질 듯

兩者 차원에서는 기존의 무역협정 이행뿐 아니라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무역장벽제거를 요구하는 공세적 상호주의가 대외경제정책의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非WTO 회원국인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면서 WTO 가입조건의 일부로 시장개방 및 불공정무역 관행의 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對美 무역수지적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韓·美간 개별 현안을 중심으로 한국시장 개방확대 요구로 인한 통상마찰은 지속될 전망이다. 96년에 양국간 통상현안이었던 통신장비시장, 검사검역제도, 자동차 시장접근확대 및 수입양주세율인하문제 등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가 드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WTO 각료회의는 미국의 다자간규범제정을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방향을 뚜렷이 보여준 자리였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 방안 연구 및 노동기준의 규범화를 위한 연구그룹의 설치,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 제고방안 및 「情報技術協定」(ITA)의 체결 등에서 미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은 WTO 각료급 회담의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되는 부분인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등 정보기술제품(20개 품목)의 관세를 2000년까지 無關稅化하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다자간체제를 이용하여 국제교역자유화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린턴 집권 2기에는 이러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공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기술협정 참가국가의 확산과 조기 정착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집권 2

기에도 달러화 강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추측이 엇갈리고 있다. 달러강세 정책을 입안하고 유지하여온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유임되는 점으로 미루어 달러강세가 지속되리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달러가 110엔대를 넘어서면서 미국 수출업자의 경쟁력약화로 인한 수출감소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와 업계와 의회의 로비로 달러강세정책의 포기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나돌기도 한다. 이 문제는 국제수지적자 확대에 대한 美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 개선 위해 달러약세기조 유지할 전망

96년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상수지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미국경제가 불안한 조짐을 보였다. 96년 3/4분기 동안 수출신장률은 0.6%에 그쳐 2/4분기의 5.6%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수출증대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3/4분기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479억달러에 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동안 클린턴행 정부는 국제수지적자를 막는 데 대외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왔으나, 국제수지적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수출증가율의 감소와 국제수지적자 규모의 확대는 집권 2기의 클린턴행정부하의 미국경제정책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96년 하반기의 국제수지 악화는 미국 달러의 강세(엔低) 지속으로 인한 일본의 수출증가를 들 수 있다. 달러화는 96년 이후 줄곧 105엔대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9월 이후에는 110엔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對美수출 증가율 둔화를 보였던 일본은 96년 하반기 이후 달러강세를 타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對美수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美 클린턴행 정부는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금리를 하향안정시키는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통해 무역수지적자 축소에 힘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위해 달러약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기업의 수출증대 추진을 위한 의회나 업계의 로비 또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외국기업에 대한 덤핑제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남재**

재벌 정책의 문제(下)

지배의 집중과 관련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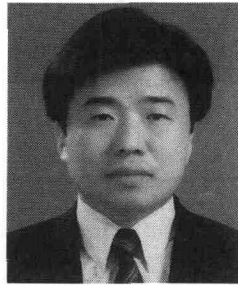
어떤 사람들은 경제력집중의 폐해로서 소유의 집중문제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유가 분산된다면 경제력집중은 문제가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우리 대기업 집단이 기아자동차와 같이 소유가 분산되어 있다면 경제력집중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이미 공정거래법에도 반영되어 소유분산우량회사 및 소유분산우량집단의 개념을 도입하

여 이들에게는 출자총액제한이나 채무보증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업집단 전체가 소유분산우량집단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지만 현재 13개의 소유분산우량회사가 지정되어 있다.¹⁾

그런데 30대 기업집단의 소유주 1인의 평균 지분은 5% 미만이며 1% 미만인 집단도 6개나 된다. 혈족을 포함하더라도 지분이 평균 10%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장 분산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소유의 집중이 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²⁾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지분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들은 계열사간의 출자 등을 이용하여 40% 이상의 내부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거의 도전받지 않는 경영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총수의 자리를 세습시킬 만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체 기업집단이 망하기까지는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으며, 때로는 견제받지 않는 경영권을 남용하여 기업집단을 私物化하기도 한다. 따라



이성구/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규제³⁾는 기업확장을 막는 수단으로서보다는 도전받지 않는 경영권을 창출하는 출자구조를 막는 수단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소유집중의 관점에서 경제력집중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소유집중과 함께 경영권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소유집중만을 문제삼는다면 재벌보다도 부동산이나 사채놀이로 치부한 알부자들을 더 문제삼아야 할 것이며, 그 방법도

재벌에 대한 규제보다는 재산세나 상속세 부담을 인상하고 철저히 부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

경영권의 집중을 비판하는 논거들은 대체로 거대기업 집단이 1인에 의해 지배되는 데서 오는 폐해와 소액지분만을 가진 경영권자가 회사를 사물화하는 데도 이를 감시하거나 책임을 묻는 장치가 무력화되어 있다는 소위 대리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소유집중 내지 경영권 집중이 해로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누구든 자기 것은 남이 감시하지 않더라도 아끼고 사랑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회사를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기업들이 거대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소유권에 의한 지배원칙에 따른다면 특정인에게 막대한 권력이 집중되고 세습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소유자 없이 전문경영인에 의해 지배되는 기

기업집단이 반드시 우월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물론 최고 경영자가 세습이 아닌 경쟁에 의해 선택된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소유하지 않는 전문경영인은 늘 경영권을 도전받을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경쟁상대가 될 유능한 경영인이 존재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영권의 집중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처럼 경영권의 집중으로 인해 소주주의 권리가 침해되고 감시장치가 무력화되어 비리의 위험이 높다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도리어 경영권이 불안정해 경영자들이 늘 주식시장에서 自社の 주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개발투자에는

소홀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어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 하는 것은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책임지지 않는 경영권도 부패하기 마련이다. 정주영 현대회장이 대선에 출마하여 현대그룹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한 것이나 최근 재벌그룹들의 비자금 사건은 대기업집단이 어떻게 사물화하여 부패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예이다. 비자금도 경영이 부패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비자금의 수요를 행정의 부패가 결정한다면 비자금의 공급은 경영의 부패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는 비단 우리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선진 제국들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 국민 경제의 상당부분이 소수의 기업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다, 그러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효과적으로 경영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에 별 관심이 없었다. 기업에 소유주가 있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소유주는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 지배구조는 소유주의 책임 아래 두면 되는 것이었다. 오히려 정부는 가급적 소유주들이 주식시장이나

소주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온 감이 있다.⁴⁾

그런 까닭에 우리의 제도 자체가 경영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예컨대, 경영권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기업에게 기업 공개의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공개기업의 안정 경영권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적대적인 M&A를 어렵게 만든 것 등은 경영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다.

그러나 기업이 하나의 상품이 되지 않고서는 상품을 만든 사람(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쉽지 않으며 기업집단에 의한 경영과 독립회사 경영 중 무엇이 효율적인 경영형태인가에 대한 선택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주식시

장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폐쇄적이어서 주주들이 기업을 평가할 지표가 없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에 의한 의결권 행사나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의 등락에 의한 경영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까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과 경영자를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주가 유지가 주된 목표였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정부의 재벌 정책 내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규명하고, 재벌문제에 대해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정책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무엇이 재벌정책의 목표인지가 명확해야 효과적인 수단의 선택도 가능해지고, 재벌 정책은 여론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벌을 규제한다고 해서 경제력집중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업종 다각화에 대한 정부의 규

제정책들은 성공한다 하더라도 재벌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결국 재벌에게 초과이익을 안겨주어 경제력집중을 조장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은 여신규제, 채무보증규제, 출자총액규제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문제들이다. 즉, 이들 규제는 재벌의 확장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재벌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정책으로는 재벌에 대한 규제보다는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들, 예컨대 모든 산업에서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지원하여 재벌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작정 재벌을 비난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그릇된 방향으로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예컨대 국민들이 정부가 재벌을 과

롭히기를 바라면 정부는 재벌들을 규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고 재벌들은 그러한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정경유착은 심화될 수도 있다. 더구나 단순히 재벌을 규제한다고 해서 경제력집중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규제를 이용하여 렌트를 챙길 기회를 주거나, 규제에 의한 경쟁 제한으로 재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재벌에 대한 규제강화보다는 재벌들에게 특혜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 더 시급하다.

그리고 향후의 재벌정책은 경제력집중 억제뿐만 아니라 재벌이라는 기업집단경영 시스템이 갖는 강점도 살리는 방향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재벌의 성장은 단순히 탐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경제적 효율성에도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재**

〈필자註〉

1) 소유분산우량회사는 삼성물산, 제일모직(삼성), 엘지상사, 엘지전선(엘지), 대우전자, 대우통신, 오리온전기(대우), 금호건설, 금호석유화학(금호), 대림산업(대림), 고합물산(고합), 인켈, 나우정밀(해태) 등 13개사이다.

2)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을 분포 (96.4.1. 현재)

		(同一人 + 特殊關係人) 지분율						해 당 집단수
		5% 미만	5~10%	10~20%	20~30%	30~50%	50% 이상	
내 부 지 분 율	10~20%	-*	-*	-	-	-	-	-
	20~30%	롯데	극동건설		기아	-	-	3
	30~40%	쌍용, 해태	엘지, 한화, 대림	삼미, 한일, 벽산	-	-	-	8
	40~50%	삼성, 금호	대우, 고합	선경, 한진, 두산 동아건설, 효성 진로, 코오롱, 동부	-	-	-	12
	50% 초과	-	동양, 한솔	현대, 동국제강	한라	뉴코아	한보	7
		5	8	13	2	1	1	30

註: * 소유분산 우량 기업집단 기준

3)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상호출자가 금지되며 타회사 출자시 자기의 순자산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되지만 주식소유의 분산과 적대적 기업인수의 규제에 경영권의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적으로 지배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출연은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며 경영권을 세습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4) 다만, 과거 정부는 각종 산업정책적 지원이 국민경제에 기여한 기업들에게 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간접적으로 감시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정부의 외부감사자로서의 역할은 산업정책적 개입의 축소에 따라 감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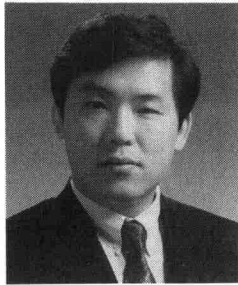
어음보험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이지만, 매달 약 1천개 가량의 중소기업이 부도로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94년에 1만 1,255개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났고, 95년은 1만3,992개, 96년에는 10월까지 9,284개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30개가 넘는 숫자이다.

우리 경제는 94년 이후 한동안 경기확장세가 지속되었으나, 경기양극화 현상에 따라 부도업체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96년 들어서는 부도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경쟁력이 약화된 한계기업들이 많이 도태되었고, 수출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설비투자나 생산확대를 피하고 감량경영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쟁의 심화와 경기둔화의 지속 등으로 부도율이 다시 높아지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대금회수 부진과 거래기업 도산이 중소기업 부도의 주원인

중소기업의 부도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데, 주로 판매부진 등의 실물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판매대금 회수부진과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연쇄도산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윤상호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총괄담당관실 사무관

한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도산 중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비중이 37%라고 한다. 그런데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인한 연쇄도산은 좋은 물건을 만들고 착실한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임이 아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

자금동원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은 거래상대방(여기서는 주로 물품구매자를 말한다)이 도산하여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신용도가 낮고(정확하게 말하면 신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를 받는) 담보도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한 건의 대규모 물품판매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에게 있어 자금이란 계속 순환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느 한 곳에서 들어와야 될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내보낼 자금을 못 내보내게 되고 그것이 곧 어음의 부도와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기업 하나가 쓰러지면 하청업체·재하청업체 등 그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연쇄도산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여건하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다른 기업의 문제로 인해 부도를 당하는 사례는 막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보험의 형태를

통한 지원이 타당할 것이다. '거래상대방의 부도'라는 위험을 담보해 주는 새로운 보험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프랑스·독일·영국 등 구미선진국들은 벌써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무수히 개발되어 온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에는 과연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도 있는 반면, 정작 필요한 지원제도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든다. 차라리 기존의 지원제도 중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보험제도는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공정경쟁질서상 문제점 야기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수의계약제도·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인력난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도입하여 배정해 주고 있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 등 구조개선을 위하여 96년에만 1조5천억원을 지원하였고, 원활한 자금유통을 위해 상업어음할인을 위한 전담채권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국산기계 구입을 위한 저금리의 외화대출자금도 지원하는 등 그 다양한 지원책을 보고 있으면 어지러울 지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 모두가 과연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된 후에 결정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정치적·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결정들도 있으리라 보며, 그러한 경우 대개는 응급처방에 그치고 진정한 지원기능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인다고 해서 각종 특별자금을 지원하면 당분간은 자금사정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곧 얼마 안 가서 그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지원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지원은 일부 소수의 중소기업에만 돌아가고 대다수의 중소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업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해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팔짱만 끼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공정한 자유경쟁을 위협할 정도로 개입해서도 안되지만 중소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 주어야 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의 가장 큰 원칙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여건하에서 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며 정부는 기업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깊숙이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도 안되고,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겨 경제활동여건 자체가 악화되도록 방치해서도 안된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어음보험제도는 방금 언급한 정부의 임무 중 후자에 해당된다. 착실하게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물품을 판매하고서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해서 도산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안정적인 경제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게도 책임이

정부는 연쇄도산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여건하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적어도 다른 기업의 문제로 인해 부도를
당하는 사례는 막아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보험의 형태를 통한
지원이 타당할 것이다.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이들 국가와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민간회사가 담당하기에는 무리이며, 또 그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면 이 제도에 대한 수요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민간회사가 이미 자발적으로 도입·시행했을 것이다.

어음보험제도는 성격상 수출보험제도와 유사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보증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이행보증보험이 있는데, 이는 물품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지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독과점품목과 같이 판매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경우 구매자에게 이행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어음보험제도와는 보험가입자도 다르고, 대기업 위주의 제도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취급하는 지급어음보증에 있는데, 이는 물품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한 어음(지급어음)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계약의 주체가 어음보험과 다르고, 중소기업간에는 거래관행상 지급어음에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즉, 구매자가 발행한 지급어음에 대하여 판매자가 보증을 요구하면 구매자는 구매처를 변경해 버릴 것이다.

끝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제도는 연쇄도산 방지, 상업어음 할인 등을 위해 상호부조정신에 입각하여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부하여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어음보험과 유사하지만 대상이 협동조합 가입업체로 제한되어 있고 필요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를 상환해야 하는 점에서 보험제도와 다르다.

결국 어음보험과 유사한 제도들은 있지만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며,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라는 어음보험제도의 기본적인 도입목적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실 어음보험은 그 대상과 내용은 다르지만 성격상 수출보험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수출보험은 수출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물품을 수출한 이후 수입자의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

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어음보험과 마찬가지로 판매대금의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며, 판매자가 보험 가입자가 되는 등 운영체제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수출보험에서는 보험운영에 있어 수입자는 물론 수출자의 신용조사 및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어음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그와 유사하게 물품구매자 및 판매자의 신용상태를 얼마나 정

확하게 파악하느냐가 보험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어음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어음발행부담금제도 등으로 보완 가능

한편 어음보험제도 도입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 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민간보험회사가 상업성에 입각하여 영업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하고, 신용보증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어음할인 확대에 따른 물가상승, 부도가 임박한 기업의 어음 과다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신용거래의 미정착으로 보험제도의 악용사례가 빈발할 수 있고, 보험수지가 만성적 적자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재정출연이 필요하며 국민의 부담증대를 초래할 수 있으나, 건실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라는 정책목표가 더 중요하고 시급

한 과제이고, 또 보험가입의 대상 및 附保率을 제한하고 신용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하는 등 보험수지의 적자를 최소화한다면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보험가입 대상업체·보험요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할 경우, 예를 들어 보험가입비율을 40%, 보험요율을 1%, 사고율을 1.5%로 적용하면, 추정되는 보험수지 적자가 1,137억원 정도가 되어 보험료수입을 약 325억원으로 잡을 경우 1천억원 정도의 정부출연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1천억원의 재정출연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해 97년에 6천억원을 출연하고, 수출보험기금에 1,800억원을 출연하는 것에 비하면 많은 수준은 아니며,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오히려 기존의 여타 제도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매년 1천억원 이상을 재정에서 출연한다는 것도 어려운 재정형편상 쉬운 일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를 턱없이 높일 수도 없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에게도 부담이 적으면서 정부의 부담을 덜어 줄 보완적인 재원확보방안이 있으면 제도의 도입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보완조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음발행부담금제도'이다. 이는 어음을 발행하는 자에게 발행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음결제시 부과하는 제도로 어음발행액의 0.005~0.01% 수준만 부과하더라도 연간 어음교환액이 약 5,800조원이므로 약 2,900~5,800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어음발행자는 어음발행을 통하여 대금지급을 일정기간 유예받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반면 어음결제기간 동안 거래관계의 불안정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 '불안정조성'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물품거래의 안정을 위한 어음보험기금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부담금의 도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어음제도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기업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결제방식을 어음에서 외상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음할인을 통한 현금화도 어려워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 때 최종적으로 선택되어야 하고, 시행되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부과되어야 하며, 어음보험제도가 활성화되고 정착되면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땅한 대안이 없을 때에는 제도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어음발행액의 0.002%만 부과하더라도, 즉 1억원의 어음을 발행할 때 2천원만 부과해도 연간 약 1,100억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금난 해결이 중소기업 희생의 열쇠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동안 꾸준히 지원해 왔다. 그러나 다양한 지원제도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금융시장구조의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기업들이 쉽게 쓰러지도록 되어 있어 금액상 얼마 안되는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나고, 한번 부도가 나면 회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선진국들의 금융체제는 우리와 달리 쉽게 부도가 나지 않는다. 즉,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에게는 각종 지원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기업을 회생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물론 이러한 대출은 정부의 정책자금이고 은행 스스로가 지원하는 것이다. 거래은행들은 기존의 거래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베푸는 것이며, 사실 기업이 회생해야 은행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부도가 나면 은행에게도 좋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관행은 그렇지 못하며, 또 그 관행은 전체 금융구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바뀌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의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 외에도 현 시스템 내에서 민간에게만 맡겨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그러나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부처들과 정당 간에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 중에 어음보험제도의 도입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논란 끝에 결정된 것이니만큼 성실한 시행을 기대해 본다. 



통계로 본 OECD 국가와 한국

신승우
통계청 국제통계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61년에 파리에 본부를 두고 창설된 선진국 중심의 국제경제기구이다. OECD는 강제력을 가진 국제기구가 아니라 경제정책, 저개발국원조, 무역관계 등 회원국간의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을 토의하고, 협조·조정하는 기구로서 OECD 사무국에는 약 2천여 명의 정규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OECD에 29번째로 갖 가입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미 가입해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본다.

포괄범위나 작성방법 달라 직접비교나 순위 부여 어려운 경우도

그런데 국제통계자료는 항목명칭이 동일하더라도 포괄범위나 작성방법 등이 국가간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 또한 작성

주기나 발표시점이 다른 점은 최근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동일 연도의 지표로 비교하지 못하는 경우를 만들기도 한다.

이에 국가간 비교에 있어서 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일부지표에 한정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국토면적과 인구 등 일반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고,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등을 차례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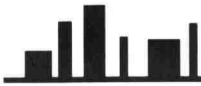
OECD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총 3,473만km²로서 전세계 면적의 25.9%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만9천km²로 OECD 29개국 중에서는 19번째로 큰 나라이며, OECD 국가가 점유한 면적의 0.3% 규모이다.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 규모, 즉 인구는 약 4,500만명으로 OECD 전체인구 규모인 10억9천만명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미국·일본·멕시코·독일·터키·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8개국에 이어 9번째에 해당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표 1) 국토면적, 인구, 인구밀도 비교

	면적 (94년, 천km ²)	인구 (95년, 천명)	인구증가율 (90~95년, %)	인구밀도 (94년, 명/km ²)
한 국	99.4	44,851	0.91	447.3
상위권	캐나다(9,976.1)	미국(263,250)	멕시코(2.06)	네덜란드(377.0)
	미국(9,372.6)	일본(125,095)	터키(1.98)	벨기에(331.7)
	호주(7,686.8)	멕시코(93,674)	호주(1.37)	일본(330.8)
	멕시코(1,972.5)	독일(81,591)	룩셈부르크(1.26)	영국(238.5)
	터키(780.6)	터키(61,945)	뉴질랜드(1.24)	독일(228.1)
하위권	덴마크(43.1)	노르웨이(4,337)	덴마크(0.16)	노르웨이(13.4)
	스위스(41.3)	뉴질랜드(3,575)	폴란드(0.14)	뉴질랜드(13.1)
	네덜란드(40.8)	아일랜드(3,553)	체코(-0.02)	캐나다(2.9)
	벨기에(30.5)	룩셈부르크(406)	포르투갈(-0.09)	아이슬란드(2.6)
	룩셈부르크(2.6)	아이슬란드(269)	헝가리(-0.49)	호주(2.3)



0.9% 정도로 OECD 내에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한편 단위면적당 인구수, 즉 인구밀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는 1km²당 447명이 살고 있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면적은 29개국 중 19번째 GDP 규모는 9위

경제활동의 종합지표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94년 현재 우리나라가 3,810억달러로 9번째로 나타났고, 특히 95년의 경제성장률은 9.0%로 OECD내에서는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다만 국내총생산 규모와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국민 1인당 GNP는 하위그룹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의 95년도 무역총액은 약 2,600억달러(수출은 본선인도 즉, F.O.B기준 1,251억달러, 수입은 운임보험료 부담조건 즉, C.I.F기준 1,351억달러)로서 29개국 중 10위 수준이다.

또한 주요 상품의 생산실적을 보면 조강 생산량은 4위, 선박수주 및 건조량은 각각 2위, 자동차 생산량은 5위에 이르는 등 경제규모면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상위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에 비해 경제여건은 상대적으로는 하지만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90년초에 9% 내외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95년도에는 4.5% 상승에 그쳤다. 95년중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터키·멕시코·그리스

등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높은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1~4% 수준을 보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아직도 높다고 볼 수 있다.

95년도 장기금리 수준은 13.79%를 보여 OECD내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지표는 우리나라 경제가 고비용구조 속에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94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48.7시간으로 OECD 국가들이 40시간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아직도 일을 많이 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사회·보건·교육 분야는 개선여지 많아

출생아의 성비는 통상 여아 100명당 남아인구수로 나타내는데 우리나라는 94년 현재 115.4명을 기록, 남아선호사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미국 104.6명(91년), 일본 106.0명(92년), 독일 105.5명(91년), 영국 105.2명(92년) 등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105명에 근접한 출생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일정 연령 이상(통상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70년 57.6%, 80년 59.0%, 90년 60.0%, 95년에는 62.0%를 나타내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66.1%, 94년), 일본(63.8%, 93년), 캐나다(65.3%, 94년) 등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소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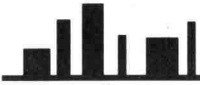
이를 성별로 볼 때 남자는 76.5%로서 선진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나 여자의 경우는 70년 39.3%, 90년 47.0%, 95년 48.3%를 나타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OECD국가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평균수명은 한 나라의 총체적 의료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93년 현재 72.8세를 기록하였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68.9세, 여자는 76.8세를 보여 남녀간의 평균수명 차이는 약 8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 국가 중 최고의 평균수명을 보여준 나라는 일본으로서 79.5세(남자 76.4세, 여자 82.5세)이며 OECD 국가 대부분의 평균수명은 75~78세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는 3~5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천명당 병상수는 84년 2.3개이던 것이 94년에 4.1개로 의료시설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천명당 의사수도 84년에 0.7명이던 것이 94년에는 1.2명을 기록,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수준은 OECD 국가들이 보여주는 지표(병상수는 최고 15.6개, 의사수는 2~3명 수준)와 비교할 때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사 1인이 책임지고 있는 학생수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96년 현재 32명으로 OECD 선진국가들이 보여주는 15~20명 수준에 비해 교육여건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인력지표를 비교할 때 96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4.270명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는 캐나다(6,980명, 93년), 미국(5,611명, 93년), 뉴질랜드(4,675명, 93년) 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 외의 OECD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는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아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 또 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경제규모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경쟁력도 높아야 할 텐데 경제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라는 점과,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이라고 위안을 삼지만 사회·보건·교육 분야의 환경, 즉 삶의 질을 말해주는 지표들은 우리가 아직은 선진국과 격차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었다. **▶▶▶**

〈표 2〉 OECD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

	GDP (94년, 10억달러)	경제성장률 (95년, %)	1인당 GNP ¹⁾ (95년, 달러)	무역(95년, 10억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95년, %)
				수출액(F.O.B)	수입액(C.I.F)	
한국	381	9.0	10,076	125.1	135.1	4.5
캐나다	547	2.4	18,542	192.5	164.4 ²⁾	2.2
멕시코	377	-6.0	3,583 ^{b)}	48.4	46.9	35.0
미국	6,931	3.3	27,516	584.8	743.4 ²⁾	2.8
일본	4,591	0.3	37,048 ^{d)}	441.5	335.4	-0.1
오스트레일리아	324	3.3	18,607	53.0	57.4 ²⁾	4.7
뉴질랜드	51	2.7	13,956 ^{d)}	13.8	14.0	3.7
오스트리아	198	2.3	24,445 ^{d)}	-	-	2.3
벨기에	230	2.1	21,108 ^{c)}	168.4	154.3	1.4
덴마크	146	3.3	32,259	49.2	43.8	2.0
핀란드	98	4.8	-	40.0	28.9	0.9
프랑스	1,331	2.7	22,788 ^{d)}	286.4	265.9 ²⁾	1.7
독일	2,046	2.1	22,294 ^{d)}	511.0	447.4	1.7
그리스	98	1.9	9,158 ^{d)}	-	-	9.3
아이슬란드	6	2.9	22,329 ^{d)}	1.8	1.8	1.6
아일랜드	52	6.5	15,137	43.9	32.5	2.5
이탈리아	1,018	3.1	19,869 ^{a)}	233.9	206.3	5.3
룩셈부르크	-	3.2	32,520 ^{a)}	-	-	2.0
네덜란드	334	3.0	25,625	195.4	175.9	2.0
노르웨이	123	4.5	23,226 ^{c)}	41.3	32.6	2.5
포르투갈	83	2.6	8,583 ^{b)}	22.8	32.5	4.0
스페인	482	3.2	12,090 ^{d)}	91.6	114.8	4.6
스웨덴	198	3.5	20,635 ^{c)}	79.1	64.3	2.5
스위스	257	1.2	45,358	81.5	80.2	1.8
터키	131	6.8	-	21.8	36.0	93.6
영국	1,021	2.7	17,736 ^{d)}	242.6	265.7	3.4
체코	36	-	-	21.6	26.4	9.1
헝가리	41	-	-	12.5	15.1	-
폴란드	93	-	-	-	21.4	-

註: 1) a=91년, b=92년, c=93년, d=94년 수치임.

2) F.O.B 기준임.

음주문화도 선진국 수준으로

김상원

보건복지부 공보관실 서기관

우리의 술문화에 '노털카'라는 말이 있다. 따라준 술잔을 놓지도 털지도 말며, '카' 소리를 내지 말고, 단숨에 들이켜야 한다는 酒法으로 여기면 별주가 따른다. 그 '노털카'에 다시 '짱떼오스'가 붙기도 한다. 짱그리지 말고, 입에서 떼지 말며, 오래 끌지 말고, 스마일(웃지) 말라는 뜻이다.

국세청이 집계한 바로는 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술은 모두 311만, 원가로만 4조4천억원어치나 된다. 한국사람이 마신 위스키 등의 양주는 해마다 늘어나 작년에는 9천 억원을 훨씬 넘었다고 하니 결국은 국제적으로 봉노릇을 한 꼴이 되었다.

또한 아까운 줄 모르고 마셔 버리는 음주문화로 파생되는 사회적 손실, 즉 과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40대 이후 장년층의 사망으로 인한 가정파탄, 자동차의 기계고장으로 인한 사고보다 훨씬 많은 음주운전 사고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아직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남성다움으로,

고급위스키를 마시는 것이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이제는 음주문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첫째, 교제상 또는 각종 모임의 경우에 분에 넘치는 술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특히 녹초가 되도록 술을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사고방식은 바꾸어야 한다.

둘째, 조직의 상사들이 아랫사람들을 모아놓고 호탕하게 술잔을 돌리면서 인화단결과 일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술은 절제해서 마셔야 한다. 한계주량은 자기 스스로 정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마시고 상대방의 음주량을 인정하는 습관을 길러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넷째, TV 등의 각종 프로에서 음주가 권장되는 장면들은 중단되어야 하며 술 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음주에는 몇가지 이점과 장점이 있다. 독일의 대철학자 칸트는 "적정량의 술은 입을 경쾌하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그 결과 술은 하

나의 도덕적 성질, 즉 마음의 솔직을 운반하는 물질이며 인간관계의 원활 유요, 사회생활의 활력요소, 우정의 촉진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불교의 法華經에서는 "폭음은 어떤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때로는 짐승으로 만들며, 심할 경우에는 악마로 만든다"고 하였다.

건강을 지키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방법으로 술은 마시더라도 성인이 된 뒤에 시작할 것, 1차에서 끝낼 것, 폭탄주를 삼가고 술잔을 돌리지 말 것, 상대방의 주량을 인정해 줄 것, 적절한 안주를 먹을 것 등의 수칙을 지키도록 학자들은 권장하고 있다.

어른들이 허영에 찬 술소비 행태로 흥청망청 술자리를 전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느끼고 배울 것인가?

지금 우리는 OECD 회원국으로서 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너무나 소비적이고 소모적일 뿐 아니라 야만적이기조차 한 우리의 음주문화부터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